



2019년 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발표자료 및 신규과제 신청요강

- 학문균형발전지원, 학문후속세대지원, 대학연구기반구축 -

2019. 1.

한국연구재단 이공학술지원팀

목 차

I . 2019년 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발표자료	00
II . 신규과제 신청요강	00
❶ 학문균형발전지원	00
1. 창의 · 도전 연구기반지원	
2. 보호연구	
3. 지역대학우수과학자	
❷ 대학연구기반구축	00
1. 대학중점연구소	
❸ 학문후속세대지원	00
1. 박사과정생연구장려금	
2. 박사후 국내연수	
3. 박사후 국외연수	

I

2019년
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발표자료



교육부 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소개

학문후속세대지원, 대학연구기반구축, 학문균형발전지원, 개인기초연구



2019. 1.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목 차

1. 사업개요	1
2. 사업별 신규과제 추진계획	9
1) 학문균형발전지원사업	10
2) 대학연구기반구축사업	14
3) 학문후속세대지원사업	21
3. 신청 시 유의사항	26
4. 신규과제 추진일정 및 문의처	31

01 사업개요

1

1. 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개요



“대학의 연구역량 강화, 균형있는 학문발전, 신진 연구인력 육성”

‘19년 5,099억원 지원

 369 억원	 662 억원	 1,145 억원	 2,922 억원
학문후속세대지원	대학연구기반구축	학문균형발전지원	이공학개인기초
박사과정생연구장려금지원(30억원) 박사과정생의 독립적 연구 지원	대학중점연구소지원(487억원) 대학 연구소의 특성화, 자립화 지원	창의·도전연구기반지원(534억원) 박사후 연구원의 독립적 연구 지원	기본연구(2,922억원) 이공학분야 개인기초연구를 폭 넓게 지원
박사후국내·외연수(270억원) 박사후 연구자의 국내외기관 연수기회 제공	기초과학연구역량강화(175억원) 대학내 단독 활용 장비의 집적화 지원	보호연구(61억원) 국가차원의 보호 육성이 필요한 분야 지원	
대통령Post-Doc. 펠로우십(69억원) 박사후 연구원이 선도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지역대학우수과학자(550억원) 지역대학 우수 연구자의 지속적 연구성과 창출 지원	

2

2. 2019년도 중점 추진 방향

학문의 균형발전 지원 강화

- 보호·소외 연구분야 지원 단가 상향(0.5억원 → 1억원) ※ 학생인건비로 3천만원 사용
- 국가적 차원의 중·장기적 지원이 필요한 연구분야 명확화 및 확대(10개 → 69개)
- 지역 대학 연구 여건 개선을 위해 박사후 연구원 채용 시 지원 단가 상향 (0.5억원 → 1억원)
- 대학 내 연구전담계층으로 고용된 박사후 연구원 및 비전임교원의 심도 있는 연구 지원을 위해 연구비 차등 지급
※ (1차년도) 0.5억원, (2,3차년도)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 1억원까지 증액 가능

대학의 연구 기반 구축 강화

- 대학중점연구소 지원단가 상향(5억원 → 7억원) * 간접비 별도
- 연구소장 책임하에 연구소 자체 운영을 통한 소규모 씨앗형 과제 시범 지원(4개)
- 단독 활용 장비 집적화를 통한 공동활용 및 노후 장비 교체, 전문 인력 양성 신규 지원(20개, 175억원)

연구 윤리 강화 및 연구비 부정사용 방지

- 미성년 자녀 또는 연구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연구 참여 시 연구비 지원 기관 사전 승인 필수
※ 협약서 명시, 위반 시 사업비 지급 중지 및 향후 학술지원대상자 선정 1년간 제외
- 학생 대상 성희롱, 성폭력 등 성비위 및 갑질로 징계가 확정된 교수 불이익 조치
※ 사업비 지급 중지 및 향후 학술지원대상자 선정에서 1년간 제외
- 학술진흥법 개정으로 연구부정행위 시 제재 강화 및 연구비 총액 상위 20개 대학 연구윤리실태 평가 실시
※ 연구부정행위 참여제한(최대 5년 → 최대 10년)

3

3. 사업별 예산 및 과제 수

(단위 : 개, 백만원)

사업구분		'18년 예산	'19년 예산	증감 (증감율)	신규		계속	
					과제 수	예산	과제 수	예산
학문균형 발전지원	창의·도전연구기반지원	-	53,422	53,422 (순증)	777	29,138	750	24,284
	보호연구	1,533	6,085	4,552 (296.9%)	64	4,800	36	1,285
	지역대학우수과학자	43,790	55,017	11,227 (25.6%)	231	16,830	983	38,187
학문후속 세대지원	박사과정생연구장려금	-	3,000	3,000 (순증)	150	3,000	-	-
	박사후국내·외연수	22,266	27,000	4,734 (21.3%)	500	22,500	100	4,500
	대통령포닥펠로우십	9,012	6,919	△2,093 (△23.2%)	-	-	67	35,579
	리서치 펠로우	34,579	-	△34,579 (순감)	-	-	-	-
대학연구 기반구축	대학중점연구소지원	38,123	48,679	10,556 (27.7%)	20	14,250	70	34,429
	기초과학연구역량강화	-	17,547	17,547 (순증)	20	17,547	-	-
이공학 개인기초	기본연구	303,168	292,231	△10,937 (3.6%)	-	-	6,712	292,231
합 계		452,471	509,900	57,429 (12.7%)	1,762	106,915	8,718	431,645

4

4. 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세부 내용(1/2)

사업구분		사업목적	지원대상	지원규모 (과제당/연)	지원 기간
학문 후속 세대 지원	박사과정생연구장려금	박사과정생(수료생 포함)의 논문 주제와 관련된 창의적·도전적 아이디어를 학생이 주도적·독립적으로 연구하도록 지원	이공계 박사과정생(석·박사통합과정 포함) 및 수료생	20백만원	2년 (1+1)
	박사후국내·외연수	이공분야 박사후 연구자에게 국내·외 대학 및 연구소에 연수 기회를 제공하여 연구 지속성 유지 및 독자적 연구역량 배양	국내·외 대학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인 자	45백만원	1~3년 (국외 연수 1년)
	대통령포다	연구역량이 우수한 박사후연구원이 선도연구자, 대학교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만 39세 이하 국내·외 대학 박사학위 취득자	130백만원	5년 (3+2)
대학 연구 기반 구축	대학중점연구소	대학(연구소)을 단위로 하는 연구공동체 형성 및 대학 및 지역의 특성화·자립화된 연구 거점으로 육성, 우수 연구인력 발굴·육성	이공분야 대학부설연구소	700백만원	9년 (3+3+3)
	기초과학연구역량강화	대학 내 단독 활용 중인 연구 장비를 학과(단과대) 또는 연구분야 단위로 집적하여 '공동 활용' 하도록 전환하고, 전문인력을 배치·역량 강화하여 R&D 성과 제고	이공분야 대학 연구시설	700백만원	6년 (3+3)

5

4. 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세부 내용(2/2)

사업구분		사업목적	지원대상	지원규모 (과제당/연)	지원 기간
학문 균형 발전 지원	창의·도전연구기반지원	박사후연구원이 대학 내 연구전담 계층으로 고용되는 경우 연구비를 지원하여 독립적·안정적 연구 지원	대학 내 연구전담계층으로 고용된(고용예정인) 박사후 연구원 및 비전임교원	50백만원	1~3년
	보호연구	기초학문의 다양성 및 균형성을 유지하고 해당 분야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국가 차원의 보호·육성이 필요한 분야 지원	학술진흥법 제2조 제5호에 의한 이공학분야 연구자	100백만원 이내	1~10년
	지역대학우수과학자	지역대학의 우수 연구자들이 지속적인 연구 성과를 창출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소속 학과 및 대학의 연구역량 강화	지역대학 전임·비전임교원(과기특성화대 제외)	50백만원 (포닥채용시 100백만원)	1~10년
이공학 개인기초	기본연구	이공학분야 풀뿌리 개인기초연구를 폭넓게 지원하여 국가연구 역량 제고	학술진흥법 제2조 제5호에 의한 이공학분야 연구자	10~50백만원	1~10년

6

5. 최근 3년간 신청/선정

사업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신청	선정	선정률	신청	선정	선정률	신청	선정	선정률
학문후속 세대지원	박사후국내연수	479개	95개	19.8%	872개	250개	28.7%	712개	344개	48.3%
	박사후국외연수	515개	96개	18.6%	503개	99개	19.7%	545개	110개	20.2%
	대통령포닥펠로우십	56개	11개	19.6%	103개	32개	31.1%	-	-	-
	리서치펠로우	619개	469개	75.8%	460개	339개	73.7%	320개	172개	53.8%
	박사과정생연구장려금	'19년 신규								
	소 계	1,669개	671개	40.2%	1,938개	720개	37.2%	1,577개	626개	39.7%
대학연구 기반구축	대학중점연구소지원	42개	12개	28.6%	53개	7개	13.2%	117개	32개	27.4%
	기초과학연구역량강화	'19년 신규								
	소 계	42개	12개	28.6%	53개	7개	13.2%	117개	32개	27.4%
이공학 개인기초/ 학문균형 발전지원	기본연구	4,531개	1,633개	36.0%	3,829개	2,436개	63.6%	3,312개	2,405개	72.6%
	SGER(상반기)	375개	151개	40.3%	276개	107개	38.8%	325개	98개	30.2%
	SGER(하반기)	-	-	-	-	-	-	796개	148개	18.6%
	보호연구	24개	15개	62.5%	18개	15개	83.3%	11개	7개	63.6%
	지역대학우수과학자	727개	271개	37.3%	585개	497개	85.0%	566개	238개	42.0%
	창의도전연구기반지원	'19년 신규								
	소 계	5,657개	2,070개	36.6%	4,708개	3,055개	64.9%	5,010개	2,896개	57.8%

7

6. 2019년도 신규과제 지원 규모

사업 구분			최초 신규	
			과제 수	지원예산
개인 연구	학문균형 발전지원	창의·도전연구기반지원	777개 내외	29,138백만원 내외
		보호연구	64개 내외	4,800백만원 내외
		지역대학우수과학자	204개 내외	15,300백만원 내외
	학문후속 세대지원	박사과정생연구장려금	150개 내외	3,000백만원 내외
		박사후국내·외연수	500개 내외	22,500백만원 내외
	개인 소계		1,695개 내외	74,738백만원 내외
집단 연구	대학연구 기반구축*	대학중점연구소지원	12개 내외	9,630백만원 내외
		기초과학연구역량강화	20개 내외	17,547백만원 내외
	집단 소계		32개 내외	27,177백만원 내외
합 계			1,727개 내외	101,915백만원 내외

* 기초과학연구역량강화사업 신규 내용 등은 별도 안내

8

02 사업별 신규과제 추진계획

9

1. 학문균형발전지원사업



1 사업목적

- ✓ (창의·도전연구기반지원) 대학 내 신진연구인력에게 연구기회 제공,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연구 지원
- ✓ (보호연구) 기초학문의 다양성·균형성 유지, 국가차원의 보호·육성이 필요한 분야 지원
- ✓ (지역대학우수과학자) 지역대학의 연구 역량 제고 및 우수 연구인력 양성 지원

2 지원내용

구분	창의·도전연구기반지원	보호연구	지역대학우수과학자
연구기간	1~3년	1~10년 이상	
연구비	1~5천만원/연 (간접비 포함)	1~10천만원/연 (간접비 포함) ※ 대학원생 의무 고용	1~5천만원/연 (간접비 포함) ※ 박사후연구원 고용시 최대 5천만원 추가지원
대상	대학 내 비전임교원 (고용예정자 포함)	학술진흥법 제2조제5호의 연구자	지역대학(5대 과학기술특성화대학 제외) 전임 및 비전임 교원
신규 과제 수	777개 내외	64개 내외	204개 내외
신규 지원 예산	29,138백만원	4,800백만원	16,830백만원
연구개시일	'19년 6월 1일		

※ 선정과제 수는 신청현황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정부 회계기간 일치 방침에 따라, 총 연구기간 2년 이상 과제의 경우 1차년도 연구기간 및 연구비는 9개월로 신청해야 함.

(예) 총 연구기간 2년 신청과제

- 1차년도는 2019.6.1.~2020.2.29.(연구기간 및 연구비는 9개월 기준)
- 2차년도는 2020.3.1.~2021.2.28.(연구기간 및 연구비는 12개월 기준)
- 3차년도는 2021.3.1.~2021.5.31.(연구기간 및 연구비는 3개월 기준) * 잔여 3개월 연구비

10

1. 학문균형발전지원사업

3 2019년도 신규과제 신청

☑ 지원자격

- 연구비 중앙관리가 가능한 **국내연구기관(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연구자**

창의·도전 연구기반지원	국내대학 내 연구전담 계층으로 고용된 비전임교원(박사후연구원) 또는 고용예정자 ※ 학술진흥법 제2조제5호의 대학과 고용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이공학 분야 비전임교원(박사후연구원 포함) ※ 연구 개시일(2019. 6. 1) 이전 고용 예정자 신청 가능(고용예정자는 해당 기관에서 「고용예정확약서」 제출 단, 연구개시일 이전에 고용이 완료되지 않은 자는 선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과제 지원 ※ 취업자는 신청은 가능하나 연구개시일 전에 퇴직을 하여야 함 ※ 대학전임교수·국공립 연구기관 및 민간연구소 연구원 신청 불가 ※ 외국인 및 외국 국적 소지자 신청 가능
보호연구	학술진흥법 제2조제5호의 연구자 ※ 이공학 분야 전임·비전임 교원 및 정부출연 연구소 연구원
지역대학우수 과학자	지역대학(5대 과학기술특성화대학 제외) 전임 및 비전임 교원 ※ 지역대학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소재하지 않은 대학이며, 5대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은 DGIST, GIST, KAIST, POSTECH, UNIST을 의미

- (보호연구)는 **참여인력**으로 **박사(또는 석사)과정생 1인 필수 포함**(학생인건비 3천만원 이상)

11

1. 학문균형발전지원사업

4 선정절차 및 평가

☑ 선정절차



※ 2019년부터 지역대학우수과학자 1~5년 과제도 임명평가를 실시하지 않음. (전체 과제 임명 미실시)

☑ 평가방법

사업 구분	총 연구기간	
	1~5년	6~10년
창의·도전연구기반지원, 지역대학우수과학자	온라인평가 → 패널심의	토론평가
보호연구	토론평가	

※ 창의도전 연구기반지원의 경우 1~3년이므로 온라인평가→패널심의 단계로 진행

※ 보호연구의 경우 신청 연구기간과 상관없이 토론평가 실시

☑ (창의도전) 평가항목

※ 연구자의 우수성, 연구 내용의 창의성 및 도전성, 향후 기대효과 등

☑ (보호/지역) 평가항목

※ 연구목표의 창의성 및 도전성, 연구자 역량, 연구내용 및 방법, 연구성과의 활용 및 기대효과, 연구비 및 연구기간의 적정성 등
(보호연구의 경우 연구목표의 창의성 및 도전성 대신 보호연구 분야의 적합성을 평가함)

12

1. 학문균형발전지원사업

참고 보호 연구 분야 목록(69개)

No	보호연구분야	No	보호연구분야	No	보호연구분야	No	보호연구분야	No	보호연구분야	No	보호연구분야
1	대수적 구조에 대한 조합적 성질 (Combinatorial enumeration of algebraic structures)	11	행성과학 기초분야	21	수산생물학	31	노화유체-부신축이상 질환의 제어 기술 고도화 연구	41	단수회물 인식 및 결함을 통한 세포막 수송체 연구	51	고해상도 소재의 구조
2	대역적 분기점학	12	카본스트 수리과학	22	세포미세구조	32	종양 미세환경 중암세포생성원	42	의식/행위/환경의 회복을 위한 뇌 자극 방법 개발	52	신호물반도체재료 및 공정
3	핵융합장기모델	13	생태학	23	노화생물학 연구분야	33	천연물장보화	43	한반도 생약자원 멀티오믹스 기반 유전체 및 활용 연구	53	삼국강화서약의 복합소재제조
4	극한조건 응집물질물리 연구	14	희유질환 연구분야	24	천연물소재 바이오합성	34	신규 항생물질 개발을 위한 오믹스 기반 유전체 연구	44	고효율 전기-연소 혼합 제어 엔진	54	금속-비금속 복합재 개발
5	임상검출기 제작	15	토양학	25	영양학	35	차세대 유전자정보의 평균치를 다중표지 유전자 분석을 통한 분자생물학 및 유전체학 연구	45	유동 해석 및 실험 연구	55	대사증후군 관련 질환 및 호르몬을 통한 신소재 바이오소재의 바이오소재 전환
6	중력파 및 다중신호 천체물리	16	식물생리	26	카복시에서 단백질 영역 할당 연구 분야 (신경회로)	36	구강조직 및 구강생물학의 미생물학 연구	46	응답형 피막 차폐된 구조체의 피로수명 평가	56	천연성유기산의 극세화 및 생분해성을 이용한 인체적합형 고기능성 섬유
7	통계물리학 분야	17	포유류 바이오발생 연구 분야	27	비교유전학	37	한약재의 분자생물학적 대체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	47	소재 접합을 위한 고정구조체 (solder) 체결 원리 기술	57	고분자 기반 코팅 및 가공 공정 연구
8	X-선 회절 결정학	18	효소학	28	전단 분자생물학 연구	38	한약재의 시스템적 분석을 통한 효능 및 부작용 예측 시스템	48	시멘트 복합체의 기능성 향상 연구	58	비특기 자원 활용 설계 방법
9	고분자 설계 및 중합-중합에 의한 분자구조미세조절	19	분자진화 연구분야	29	행동기반생물의 진화 연구	39	비단세포 및 세포질막 연구	49	토목구조물의 고전하인 구조해석 및 상태파악 연구	59	초연결 분산 네트워크
10	대역적 분기점학	20	진화유전학	30	인수공통감염병 역학 전 연구를 통한 예방 및 치료법 개발	40	다문화와 사회적인 다양성 간호 (Multicultural Society and Nursing Care)	50	원격탐사 및 영상자료 기반 공간 정보 추출	60	차세대 이동통신망 보안 성분 설계 기술 개발

13

2. 대학연구기반구축사업 - 대학중점연구소

1 사업목적

✓ 대학부설연구소 중심으로 학문분야 단위 또는 융합연구를 위한 대학 연구거점 구축, 우수 신진연구인력 발굴, 육성 지원

2 2019년도 신규과제 공모 개요

구분	세부내용
사업유형	집단(연구지원)
선정방식/지원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자유공모> 이공계 과학기술 분야 <지정공모> 4차 산업혁명 (시범) 자율운영대학중점연구소 기초과학분야
신규선정규모	14,250백만원 / 20개 내외(자유공모 7과제 내외, 지정공모 1과제, 시범 4개) * 8개 과제 후속지원
지원대상	(대학중점연구소) 이공분야 대학부설연구소 중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이력이 없는 연구소 (자율운영대학중점연구소) 기초과학에 기반한 연구소(대학중점연구소 지원 받은 연구소 신청 가능)
지원연구비	(대학중점연구소) 7억원 이내/연 (간접비 별도 : 직접비의 10% 적용 지급) (자율운영대학중점연구소) 11억원 이내/연 (간접비 별도 : 직접비의 10% 적용 지급)
지원기간	9년(3+3+3)
연구개시일	2019년 6월 1일

(예시) 신청 시 연구기간 및 연구비

구분	지원기간	연구비(백만원)				연구기간			
		'19년	'20년	'21년	...	'19년	'20년	'21년	...
중점연구소 (자유공모)	9년 (3+3+3)	525	700	700	700	'19.6.1~'20.2.29 (9개월)	'20.3.1~'21.2.28 (12개월)	'21.3.1~'22.2.28 (12개월)	...
중점연구소 (지정공모)									
자율운영대학중점연구소(시범)		825	1,100	1,100	1,100				

14

2. 대학연구기반구축사업 - 대학중점연구소

3 2019년도 신규과제 신청

✓ 신청 및 참여자격

| 대학부설연구소 |

- 이공분야 대학부설연구소로서 '신청요강'상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한국연구재단 KCI 홈페이지(www.kci.go.kr)에 '대학부설연구소'로 등록된 연구소이어야 함

| 연구과제 및 연구원 구성 |

- 연구과제 구성 : 연구소별 1개 총괄 과제로 신청(세부과제 구성은 자율)
- 연구진 자격요건 및 구성 기준

구 분		내 용	연구업적 및 자격
연구책임자		연구소장	-
공동연구원		연구소당 2명 이상	대학부설연구소 소속 대학 교원
전임연구인력	전임연구교수	전임연구교수 2명 이상 포함하여 총 5명 이상	박사학위 소지자, 연구업적 3편 이상
	전임연구원		박사학위 소지자
연구보조원		연구소당 10명 이상	학/석/박사 과정생

※ 자율운영중점연구소의 경우 연구책임자 요건만 충족하면 됨.(나머지 구성기준은 자율적으로 구성 가능)

15

2. 대학연구기반구축사업 - 대학중점연구소

4 2019년도 신규과제 신청

✓ 신청 및 참여제한 사항

| 대학부설연구소 |

- 기수혜 중점연구소(중단연구소 포함)는 신청 불가. 단, 자율운영중점연구소는 기수혜 유무와 무관하게 신청가능
- 대학별 총 3개 과제 신청가능 :
 - 대학중점연구소(자유공모) 및 (시범)자율운영중점연구소 분야 중 최대 2개 신청
 - 대학중점연구소(지정공모) 분야 중 1개 신청 가능
 - * 후속지원 연구소는 대학별 총 3개 과제 신청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 2018년도 정부재정지원 가능대학으로 지정된 대학 이외의 대학은 신청 및 선정은 가능하나, 사업비 지원을 제한

| 연구진 |

- 3책 5공 적용,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조치 기간 중 인 자는 신청 제한
- 2019년도 상반기에 공고된 집단연구사업(대학중점연구소, 선도연구센터, 기초연구실) 중에서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으로 1과제만 신청가능**
- 기존연구 수행자 신청 제한
 - 교육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집단연구사업(대학중점연구소, 선도연구센터, 기초연구실)을 수행 중인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은 집단연구 신규과제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으로 신청불가**
- 교육부 소관 집단연구지원사업 제재 등 참여제한을 받은 대학 소속의 부설연구소

16

2. 대학연구기반구축사업 - 대학중점연구소

5 2019년도 신규과제 신청

- ✓ 신청방법 :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e-R&D, <http://ernd.nrf.re.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 신청절차 : 사전절차* » 온라인 신청** » 주관연구기관 승인 » 최종접수완료

*사전절차 (연구책임자, 주관기관)	대학부설연구소 등록	✓ KCI 홈페이지에 대학부설연구소 등록 -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정보마당에서 대학부설연구소 등록 * 등록 문의 : 한국연구재단 연구상담센터 1544-6118
	대학과의 사전협의 및 확정	✓ 주관연구기관(소속대학)과의 사전협의 -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온라인으로 사전 추천을 받은 후에 신청 가능 - 지원 사항 가능 여부에 대한 협의(연구공간 및 운영인력 지원 등)
	KRI 등록정보 갱신	✓ 한국연구자정보(KRI, http://www.kri.go.kr)의 개인정보를 최신으로 갱신 - 기본정보 : 인적정보(연락처 등), 소속기관, 직급, 학과 등 - 학위정보 : 학위수여 대학, 세부전공, 지도교수 등 - 연구실적 : 논문, 특허 등
	제출서류 사전 준비	✓ 연구계획서 및 증빙서류 작성 : 양식에 따라 작성 ✓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작성 : 참여연구원 전체에 대하여 작성
**온라인 신청 (연구책임자)	온라인 입력 및 자료 업로드	✓ 온라인 화면상의 신청정보 입력 / 확인 ✓ 연구계획서 및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증빙자료 온라인 업로드 ※ 접수완료 시 수정이 불가하므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준수 요망

17

2. 대학연구기반구축사업 - 대학중점연구소

6 선정절차 및 평가

- ✓ 선정절차



- ✓ (대학중점연구소) 평가항목

구분	평가항목
연구소 기반구축	연구소 운영 실적 / 연구소 발전 계획 / 대학의 연구소 육성 계획 / 연구인력구성
연구/산학협력 수행 및 인력양성 계획	연구 수행계획 / 산학협력 수행계획 / 인력양성계획

- ✓ (자율운영대학중점연구소) 평가항목

구분	평가항목
연구소 발전계획 및 연구소장의 역량	연구소 비전 및 발전 계획 / 연구소장의 역량
연구소 기반구축 실적 및 기관의 육성 계획	연구소 운영 실적 / 대학의 연구소 육성 계획 / 연구소 자체 연구사업 운영계획

18

2. 대학연구기반구축사업 - 대학중점연구소

(시범) 자율운영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

1 사업목적

- ✓ 대학의 순수 기초과학 연구역량 강화 및 연구거점 구축을 위해 기초 과학분야 연구소(대학부설연구소)를 자율운영 대학중점연구소*로 지정·운영

* 한국연구재단 KCI홈페이지(www.kci.go.kr)에 자연과학으로 분류 및 수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지구과학 등 기초과학분야, 위의 해당 분야를 기반으로 한 융합연구분야도 가능

- (대학의 연구거점 기능 강화) 대학의 기초과학 연구역량 및 연구기획력 강화, 기초과학 연구거점 기능 확립
 - (신진 연구인력의 연구역량 강화) 대학내 기초과학분야 신진연구인력의 독립적 연구활동 지원, 우수 연구자로 육성
- ※ 일정 비율은 우수한 박사후연구원에게 세부과제책임자(PI) 부여

2 추진방향

- ✓ 연구사업 운영 가능한 연구소 선정 연구소장의 책임 하에 소규모 씨앗형 연구과제를 연구소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 4개 연구소, 연 11억 내외, 3년(3+3+3년)

- 원활한 운영을 위해 연구전담인력 인건비, 평가관리 등 지원이 가능 하도록 별도의 비특별 계상기준 적용

3 선정 및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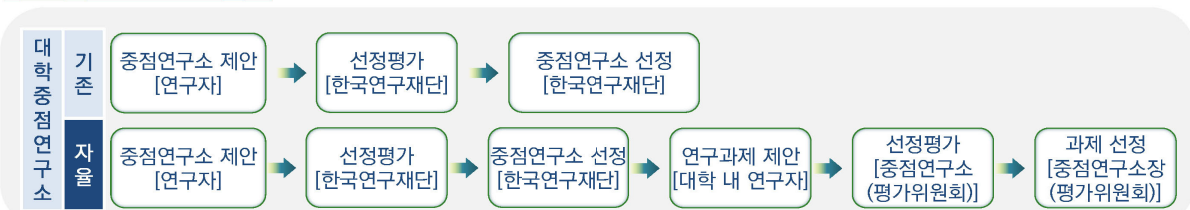
- ✓ 기초과학분야 연구소의 자율운영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평가 기준 등을 마련하여 선정
- ✓ 기존 대학중점연구소(연구소의 구성원만 과제 참여)와 달리 기초과학분야를 연구하는 교내 연구자는 모두 참여 가능
- ✓ 자율운영 대학중점연구소가 선정되면, 연구소장은 연구소의 중장기 발전방향, 비전, 목적 등에 부합하는 '연구지원사업'을 기획하고,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꾸려 연구과제를 평가, 선정

19

2. 대학연구기반구축사업 - 대학중점연구소

(시범) 자율운영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

4 대학중점연구소 vs 자율운영대학중점연구소



구 분		대학중점연구소	자율운영 대학중점연구소
연구원 구성	연구소장	대학부설연구소 소장 (전문기관에서 자격요건 등 평가단계에서 선정)	대학부설연구소 소장 (전문기관에서 자격요건 등 평가단계에서 선정)
	참여연구원	공동연구원 2명, 전임연구인력 5명, 연구보조원 10명 대학부설연구소 구성원으로 구성 (전문기관에서 자격요건 등 평가단계에서 선정)	부설연구소 소속과 상관없이 연구소장이 연구소의 발전계획, 자체 연구사업 추진방향에 부합하는 연구과제 선정
연구비		연 7억원 이내(간접비 별도)	연 11억원 이내(간접비 별도)
과제 구성		총괄/세부 (전문기관에서 선정평가 단계에서 확정)	연구소 내 과제평가위원회에서 평가, 선정 (과제당 5천만원 이내 지원)
세부과제 선정		전문기관	평가위원의 50% 이상은 한국연구재단이 추천한 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함
사업관리		전문기관 기준에 따라 관리	(전문기관과 사전 협의하되) 연구소 자체적으로 관리

20

3. 학문후속세대지원사업

1 사업목적

- ✓ 박사학위 과정 및 학위 취득 연구자에게 연구기관에서 **연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연구 활동의 지속성 유지 및 연구역량의 질적 향상 유도**

2 2019년도 신규과제 공모 개요

구분	박사 후 국내연수	박사 후 국외연수	박사과정생연구장려금
지원대상	국내·외 대학에서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인 자 (2012.9.1.이후 취득)	국내 대학에서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인 자 (2012.9.1.이후 취득)	국내 대학원 박사과정에 전업(Full-time) 학생으로 재학 중인 자(수료생 포함)
연수/연구기관	대학원이 설치되어 있는 국내 대학 또는 국/공립 연구기관 및 민간 연구소	해당 학문분야의 선진 지식이나 기술이 축적되어 있는 세계적 수준의 연구기관	대학원이 설치되어 있는 국내 대학교
지원기간	1년/2년(1+1)/3년(1+1+1)	1년	2년(1+1)
연구개시일	9.1.	9.1.	9.1
지원연구비	1인당 45백만원/연 ※ 연수활동비* 44백만원, 간접비 1백만원	1인당 45백만원/연 ※ 연수활동비* 44백만원, 간접비 1백만원	1인당 20백만원/연 ※ 간접비 없음
지원예산 및 과제수	161억원, 357과제 내외* *1년형: 179과제 내외, 2년형: 107과제 내외, 3년형 71과제 내외	64억원, 143과제 내외 ※ 특정 연수국가에 전체 과제수의 50% 이상을 배분하지 않음	30억, 150과제 내외 ※ 지역대학(DGIST, GIST, KAIST, POSTECH, UNIST 제외)에 전체 과제수의 30%이상 배분

(예시) 신청 시 연구기간 및 연구비

구분	지원기간	연구비(백만원)			연구기간		
		'19년	'20년	'21년	'19년	'20년	'21년
박사과정생연구장려금	2년	20	20	-	'19.9.1~'20.8.31(12개월)	'20.9.1~'21.8.31(12개월)	-
박사후 국내연수	3년	45	45	45	'19.9.1~'20.8.31(12개월)	'20.9.1~'21.8.31(12개월)	'21.9.1~'22.8.31(12개월)
박사후 국외연수	1년	45	-	-	'19.9.1~'20.8.31(12개월)	-	-

21

3. 학문후속세대지원사업

3 2019년도 신규과제 신청자격

✓ 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

박사과정생	1) (신청마감일 기준) 국내 대학원 박사과정에 전업(Full-time) 학생으로서 재학 중인 자 ※ (신청마감일 기준) 휴학생도 신청은 가능하나, 연수개시일부터 복학하여야 함. 2) (연수개시일 기준) 입학일로부터 최소 1년(2학기) 이상 경과한 자 3) 연수 개시 이후부터 최소 1년(2학기) 이상 재학 예정인 자
석·박사 통합과정생	1) (신청마감일 기준) 국내 대학원 석·박사통합과정에 전업(Full-time) 학생으로서 재학 중인 자* 2) (연수개시일 기준) 입학일로부터 최소 2년(4학기) 이상 경과한 자 3) 연수 개시 이후부터 최소 1년(2학기) 이상 재학 예정인 자
박사과정 수료생	1) 박사과정수료 후 수료후연구생 또는 박사수료생으로 연구등록되어 있는 자 (단, 수료후 4년 이내인자) 2) 개시일 기준 박사수료생 등록 예정인자

✓ 박사후 국내외 연수

- (국내연수) : **국내·외 대학**에서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인 자(2012.9.1 이후 학위 취득)
- (국외연수) : **국내 대학**에서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인 자(2012.9.1 이후 학위 취득)
- 박사학위 취득 후 **3년** 이내인 자는 우대(2016.9.1 이후 취득)
- 연수개시일 이전 박사학위 취득 예정자도 신청 가능
※ 연수개시일(2019.9.1) 이전에 박사 학위 취득 미완료 시 선정 제외 및 차순위 과제 지원
- 취업자도 신청은 가능하나, 연수 개시 전에 퇴직을 하는 등 연수 개시에 문제가 없어야 함
- 대학 전임교수, 국공립 연구기관 및 민간연구소 전임연구원은 **신청 불가**

22

3. 학문후속세대지원사업

4 2019년도 신규과제 연구/연수기관

연수기관 및 주관기관

구분	연수기관	주관기관
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	대학원이 설치되어 있는 국내 대학교 ※ 해외대학교 박사과정생 신청 불가	연구비 중앙관리가 가능한 국내기관
박사후 국내연수	대학원이 설치되어 있는 국내 대학교, 국·공립 연구기관 및 민간연구소(박사학위 취득기관과 동일하여도 무방함)	연수기관과 동일하며, 연구비 중앙관리가 가능한 국내기관
박사후 국외연수	해당 학문분야의 선진 지식이나 기술이 축적되어 있는 세계적 수준의 연구기관	연수자의 국내 박사학위 취득기관으로, 연구비 중앙관리가 가능한 국내기관

※ 연수자는 반드시 과제 신청 전 (각 기관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연수 종료일까지 과제 수행 및 연구비 중앙관리 가능 여부 등을 확정하여, 이후 과제 수행 및 연수비 수혜 전반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함

연수 지도교수

- ◆ 신청자의 연수지도교수는 연수기간 동안 지도교수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함.

※ 박사학위 지도교수와 동일하여도 무방함.

※ 전임/비전임 여부와 관계없이, 연수종료일까지 소속과 신분이 보장된 자이어야 함.

23

3. 학문후속세대지원사업

5 2019년도 신규과제 신청 및 참여제한 사항

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

(연수개시일 기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연구장학금*을 지급받는 경우 신청 제한

*글로벌박사양성사업, BK21사업 포함 국내/외 연구·학술활동비 또는 생활비 등을 지원하는 장학금(단, 등록금(학비)만을 지원받는 장학금은 예외)

4대 보험에 가입된 상태(휴직자 포함)인 자는 신청 제한

박사후 국내외연수

- ◆ (연수개시일 기준) 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책임자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자는 신청 제한

※ 신청 마감일 기준 타 사업의 연구책임자로 연구를 수행 중이더라도 신청은 가능하나, (신규과제 개시일로부터 10개월 이내 종료하는 경우와 관계없이) 연수개시일 전(2019.8.31.)까지 과제가 최종 종료하여야 함.

공통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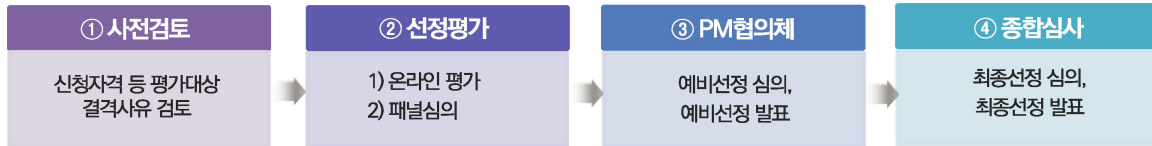
- ◆ 각 세부사업별 기 수혜자는 동일 세부사업 신청 불가
(예시) 2015년 박사후국내연수 수혜자는 2019년 국내연수 신규과제 신청 불가, 2019년 국외연수 신규 신청 가능
- ◆ 2019년도 박사후국내연수, 박사후국외연수(자유, 지정) 신규과제 내에서는 1과제만 신청 가능
- ◆ 외국인 및 외국 국적 소지자 신청 제한
-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의해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는 신청 제한
- ◆ 개인연구 중 상반기 1·3차 학문후속세대지원(박사과정생장려금, 박사후국내·외연수) 중 1과제 신청가능하며, 상반기 2차 학문균형발전지원(창의도전, 보호연구, 지역대학우수과학자) 및 과기부(기본연구) 사업 중 1개 신청 가능하되, 1개 과제만 선정
※ 단, 상반기 1차 신청과제에서 선정 시 2차 신청 불가(2차 접수마감 이후 1차 선정 시 2차 평가에서 자동 제외)

24

3. 학문후속세대지원사업

6 선정절차 및 평가

✓ 선정절차



✓ 평가항목

박사후 국내외연수		박사과정생연구장려금지원	
평가 항목	평가 지표	평가 항목	평가 지표
연구자의 우수성	연구경력 및 실적의 우수성	신청자 역량	주도적·독립적 연구수행 능력
	연구과제와의 부합성		연구목표 수행 능력
	연구목표의 달성 가능성	학업·연구목표의 창의성·도전성	학업·연구목표의 창의성
연구내용의 우수성 및 타당성	연구과제의 우수성		학업·연구목표의 도전성
	연구과제의 적절성 및 타당성	학업·연구계획의 적합성	학업·연구계획의 적절성 및 타당성
향후 기대효과	상호협력 및 발전가능성	기대효과	신청자의 발전 가능성
연구기관 및 지원의 적정성	연구기관의 적합성	신청자 역량	주도적·독립적 연구수행 능력

25

03 신청 시 유의사항

26

1. 신청 및 선정 과제 수

✓ 2019년도 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신청 및 선정 과제 수

사업명		신청시기			선정	비고
		1차 (2월 중)	2차 (3월 초)	3차 (6월 중)		
학문후속 세대지원	박사과정생연구장려금	-	-	1과제 신청	1과제 선정	-
	박사후국내연수	-	-			-
	박사후국외연수	1과제 신청	-	-		-
학문균형 발전지원	창의도전	-	1과제 신청	-		과기부 기본연구 포함 1과제만 신청 가능
	보호연구					
	지역대학우수과학자					
대학연구 기반구축	대학중점연구소	1과제 신청	-	-	1과제 선정	과기부 집단과제 (선도연구센터, 기초 연구실) 포함 1개 과제만 신청 가능

※ 사업 추진 상황 및 예산에 따라 신청 시기 변동 가능

27

2. 신청 및 수행제한

✓ 기존연구 수행자 신청제한

- ✓ **개인연구**를 수행 중인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은 **개인연구 신규과제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으로 **신청 불가**

* 2015년까지 선정된 공동연구원은 제외

- ✓ **집단연구**를 수행 중인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은 **집단연구 신규과제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으로 **신청 불가**

※ 개인연구 : 학문균형발전지원, 학문후속세대지원, 리더연구, 중견연구(舊전략과제 포함), 신진연구, 생애 첫 연구

※ 집단연구 : 대학중점연구소, 선도연구센터, 기초연구실(舊글로벌연구실 포함)

예외

- ▶ 수행 중인 과제가 신규과제 개시일로부터 10개월 이내 종료하는 경우(단, 학문후속세대양성사업은 별도 기준 적용)
- ▶ X-프로젝트 연구과제를 수행 중인 연구자

28

2. 신청 및 수행제한

✓ 1인 1과제로 수행 제한

- 개인연구사업 내에서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으로 1개 과제만 수행

* 2015년까지 선정된 과제의 공동연구원은 제외

- 집단연구사업 내에서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으로 1개 과제만 수행

예외

- 수행 중인 과제가 신규과제 개시일로부터 10개월 이내 종료하는 경우 (단, 학문후속세대지원사업은 별도 기준 적용)
- X-프로젝트 연구과제를 수행 중인 연구자
- 기초연구사업 세부사업별 참여율 및 사업별 제한사항은 별첨 세부사업 안내문을 확인

✓ 정부 R&D 공통사항

- (3책5공)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3개 이내

예외

- 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 종료되는 과제, '15년 이전 선정 신진연구자지원사업('16~'18년 후속연구로 선정되는 연구과제 포함), 이공학개인가초연구지원(舊 일반연구자지원사업)
- '16년 이후 선정과제 중 연간 평균연구비가 5,000만원 이하인 과제

- (참여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 조치를 받은 연구자는 제재기간이 연구계획서 신청마감일 전일까지 종료되는 경우에만 신규과제 신청 및 참여 가능

29

3. 연구자 신청 마감시간 엄수

신청 마감시간 관련 주의사항

- ✓ 연구책임자는 연구자 신청 마감시각(18:00:00) 전까지 반드시 “신청완료” 처리하여야 함
- 연구책임자 접수 마감(18:00:00) 이후 신규과제 생성 및 신청 처리 불가

- ✓ 주관연구기관 승인 기간 내에 “주관 기관 승인”까지 모두 완료되어야 최종접수과제 인정
- 연구책임자는 주관기관 승인 여부를 최종 확인(주관연구기관에 문의)

※ 신청 완료 시 신청 및 참여제한, 항목별 입력요류 등으로 즉시 완료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신청하시기를 바라며, 입력 중간(특히 파일 업로드 전)에 신청완료를 클릭해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신청방법 :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e-R&D, <http://emd.nrf.re.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 신청절차 : KRI(연구자 정보) 갱신 » 연구자 신청완료 » 주관연구기관 승인 » 최종접수완료

구분	1차	2차	3차
	박사후국외연수, 대학중점연구소	창의도전, 보호연구, 지역대학우수과학자	박사과정생연구장려금, 박사후국내연수
연구책임자 신청 및 접수	2019.2.11.(월) 09:00 ~ 2019.2.18.(월) 18:00	2019.2.21.(목) 09:00 ~ 2019.3.6.(수) 18:00	2019.6.10.(월) 09:00 ~ 2019.6.17.(월) 18:00
주관연구 기관 승인	2019.2.11.(월) 09:00 ~ 2019.2.20.(수) 18:00	2019.2.21.(목) 09:00 ~ 2019.3.8.(금) 18:00	2019.6.10.(월) 09:00 ~ 2019.6.19.(수) 18:00

30

04 신규과제 추진일정 및 문의처

31

1. 신규과제 추진 일정



사업 구분		'18.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학문균형 발전지원	창의·도전연구기반지원	공고		접수		선정 평가	최종 선정	연구 개시			
	보호연구										
	지역대학우수과학자										
학문후속 세대지원	박사과정생연구장려금							접수	선정 평가	최종 선정	연구(수) 개시
	박사후국내연수										
	박사후국외연수										
대학연구 기반구축	대학중점연구소지원			접수	선정평가		최종 선정	연구 개시			
	기초연구역량강화	공고*			접수		선정				

* 기초연구역량강화사업의 경우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에서 별도 안내 예정

32

✓ **사업신청 관련 문의** : 한국한국연구재단 이공학술지원팀
(☎ 042-869-6063, 6066, 6069, 6388)

✓ **제도·정책 관련 문의** : 교 육 부 학 술 진 흥 과
(☎ 044-203-6871, 6876)

Any Questions or Comments ?

감사합니다.

전 학문분야 연구를 지원하는 한국연구재단은
미래 지식 창조와 인재양성 지원을 통해
지식강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갑니다.



II

2019년
신규과제 신청요강



1. 학문균형발전지원

- 창의도전
- 보호연구
- 지역대학우수과학자

2019 이공분야 학문균형발전지원사업

[창의도전, 보호연구, 지역대학우수과학자] 신규과제 신청요강

2018. 12.

교육부 학술진흥과
한국연구재단 이공학술지원팀

문의절차 및 문의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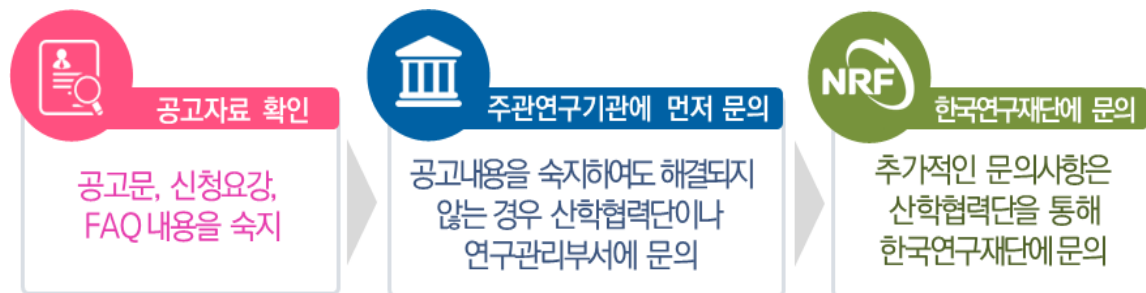
□ 문의 절차

“문의전화 폭주로 전화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공고자료(공고문* · 신청요강 · FAQ)** 확인 후
주관연구기관을 통하여 질의 요망”

* 재단 홈페이지 참조(사업안내>이공분야 기초연구사업>이공학개인지초연구지원사업>공지사항 No418)

문의 전 확인 공고문, 신청요강, FAQ를 반드시 읽어보세요.

문의순서 (1차) 연구자 → 주관연구기관에 문의
(2차) 주관연구기관 → 한국연구재단에 문의



□ 한국연구재단 문의처

- 사업 관련 : 사업내용 · 지원조건 등
 - 한국연구재단 이공학술지원팀 ☎ (042) 869-6063, 6388, 6069, 6066
-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ernd) 업로드 및 오류 관련: 한국연구재단 연구상담센터 ☎ 1544-6118
- 평가 관련 : 선정평가 절차 · 방법 등
 -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본부 학문단 ☎ (042) 869-내선번호 4자리

구분	자연 과학단	생명 과학단	의 약 학 단	공 학 단	ICT·융합연구 단
창의도전	6552	6535	6053	6546	6565
보호/지역	6522	6531	6053	6546	6574, 6573

신규과제 신청 시 필수 확인 사항

- ① 2019년 학문균형발전지원사업(창의·도전연구기반지원, 보호연구, 지역대학 우수과학자) 신규과제 신청 기간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한 내에 신청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내 용
연구자 신청 기간	2019. 2. 21.(목) 09:00 ~ 2019. 3. 6.(수) 18:00:00
주관연구기관 확인	2019. 2. 21.(목) 09:00 ~ 2019. 3. 8.(금) 18:00:00
신청 절차	연구자 접수 ▷ 주관연구기관 승인 ▷ 신청 완료

※ 신청마감일에는 온라인 접속이 폭주하므로 마감일 1~2일간 전까지 온라인신청 완료 권장

- ② ‘온라인신청매뉴얼’은 신청 1주일 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될 예정 이므로,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③ 신규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은 반드시 연구계획서 작성 전에 한국연구자정보시스템(KRI)에 필수입력사항을 모두 기입하여 주시고, 기 입력된 정보는 최신정보로 수정(업데이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비 시 연구계획서 신청이 완료되지 않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한국연구자정보(KRI, <http://www.kri.go.kr>) 필수항목 입력 안내

※ 세부 내용은 추후 ‘온라인 신청 매뉴얼’ 참조 (KRI 정보등록 관련 문의처 ☎ 1544-6118)

○ 온라인신청 전 KRI에 필수항목 입력여부 확인 및 본인의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함

○ 신청자 소속대학이 연구재단과 정보공유 협정체결을 맺은 기관인 경우, KRI에서 본인의 업적 직접수정이 불가함. 이 경우 소속대학의 관련 부서로 연락

☞ 협정체결기관보기 : KRI 홈 > 사업소개 > 협정체결기관



CONTENTS

I. 사업 개요

- 1. 사업목적 및 개요 29
- 2. 신규 선정과제 공모개요 29
- 3. 추진일정 31

II. 신규과제 신청

- 1. 지원자격 및 제한사항 31
- 2. 신청기간 32
- 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33

III. 선정절차 및 평가

- 1. 선정절차 34
- 2. 평가방법 및 항목 34
- 3. 중복성 검토 36
- 4. 가점제도 운영 36

IV. 연구비 지급·관리

- 1. 연구비 지급 37
- 2. 연구비 사용 및 관리 38
- 3. 간접비 지급 38

V. 향후 관리사항

- 1. 중간평가 및 장기과제 관리방안 39
- 2. 계속과제·종료과제 의무사항 39
- 3. 과제중단·후속지원 40
- 4. 과제 연구기간 연장 40

VI. 기타사항 41

[별첨 1] 보호연구 사업 세부설명 44

[별첨 2] FAQ (자주 묻는 질문) 48

I 사업 개요

1 사업목적 및 개요

□ 사업목적

- 기초연구 성장기반 구축 및 학술연구기반 강화, 학문 균형발전을 위해 창의·도전연구 및 지역·보호분야 등 연구지원
-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창의적 연구를 활성화하고 변혁적 연구기반을 확대하여 국가 연구역량 제고

세부사업	사업목적
창의·도전 연구기반 지원	대학 내 연구전담계층으로 고용되는 이공분야 비전임교원에게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기회를 제공하여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연구지원 및 연구능력의 질적 향상 유도
보호연구	기초학문의 다양성·균형성을 유지하고 해당분야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국가차원의 보호·육성이 필요한 분야 지원
지역대학 우수과학자	지역의 과학기술 연구역량 제고 및 우수 연구인력 양성 지원

* 창의·도전연구기반 지원: 기존 학문후속세대양성사업 내 ‘리서치펠로우’를 학문균형발전지원사업 내 ‘창의·도전연구기반지원’ 사업으로 개편

□ 지원개요

- 사업유형 및 선정방식 : 개인연구, 자유공모
- 지원분야 : 이공계 과학기술 전분야
 - ※ 단, 보호연구 분야는 지정된 학문분야만 신청 가능(별첨 1 참고)

2 신규 선정과제 공모개요

□ 연구개시일 : '19. 6. 1. 개시

□ **예상 선정과제 수 : 1,045개** 내외

구분	창의·도전연구기반지원	보호연구	지역대학우수과학자
연구기간	1~3년	1~10년 이상	
연구비	1~5천만원/연 (간접비 포함)	1~10천만원/연 (간접비 포함) ※ 대학원생 의무 고용	1~5천만원/연 (간접비 포함) ※ 박사후연구원 고용 시 최대 5천만원 추가 지원
대상	대학 내 비전임교원* (고용예정자 포함)	학술진흥법 제2조제5호의 연구자**	지역대학 (5대 과학기술특성화대학 제외)*** 전임 및 비전임 교원
선정 과제수	777개 내외	64개 내외	204개 내외

* 학술진흥법 제2조제5호의 대학과 고용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않은 이공학 분야 비전임교원(박사후연구원 포함)

** 연구비 중앙관리가 가능한 국내기관에 소속되어 있으며,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않은 이공학 분야 전임·비전임 교원 및 공공·민간 연구소 연구원

*** 지역대학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소재하지 않은 대학이며, 5대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은 DGIST, GIST, KAIST, POSTECH, UNIST을 의미

※ 창의·도전연구기반지원은 2~3차년도에는 별도 신청 및 전문가 검토를 거쳐 연구비 1억원까지 증액 가능

※ 선정과제 수는 신청현황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정부 회계기간 일치 방침에 따라, 총 연구기간 2년 이상 과제의 경우 1차년도 연구기간 및 연구비는 9개월로 신청해야 함.(잔여 3개월 연구비는 추후 지원)

□ **신청유형 : 총 연구기간별 구분**

총 연구기간	보호연구, 지역대학우수과학자
1~5년	▶ [1~5년] 총 연구기간이 1년, 2년, 3년, 4년, 5년인 경우
6~9년	▶ [6~9년] 총 연구기간이 6년, 7년, 8년, 9년인 경우
10년	▶ [유형] 최초(3년) + 추가(3년) + 추가(4년)

※ 10년 과제의 경우 최초 신청연구연도 종료 후 중간평가를 실시하여 계속지원 여부 결정

3 추진일정

일 정	추진내용
'18. 12월 말	■ 2019년 신규과제 신청 공고
'19. 2월 말 ~ 3월 초	■ 신규과제 접수
'19. 3월~5월	■ 신규과제 선정평가
'19. 5월 말	■ 신규과제 선정평가 결과 발표 ■ 협약체결 및 연구비 지급
'19. 6월	■ 연구 개시('19.6.1)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향후 변동될 수 있음

II 신규과제 신청

1 지원자격 및 제한사항

□ 지원자격

○ 연구비 중앙관리가 가능한 국내연구기관(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연구자

창의·도전 연구기반지원	국내대학 내 연구전담 계층으로 고용된 비전임교원(박사후 연구원) 또는 고용예정자 ※ 학술진흥법 제2조제5호의 대학과 고용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이공학 분야 비전임교원(박사후연구원 포함) ※ 연구 개시일(2019. 6. 1) 이전 고용 예정자 신청 가능(고용예정자는 해당 기관에서 「고용예정확약서」 제출) 단, 연구개시일 이전에 고용이 완료되지 않은 자는 선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과제 지원 ※ 취업자는 신청은 가능하나 연구개시일 전에 퇴직을 하여야 함 ※ 대학전임교수·국공립 연구기관 및 민간연구소 연구원 신청 불가 ※ 외국인 및 외국 국적 소지자 신청 가능
보호연구	학술진흥법 제2조제5호의 연구자 ※ 이공학 분야 전임·비전임 교원 및 정부출연 연구소 연구원
지역대학우수 과학자	지역대학(5대 과학기술특성화대학 제외) 전임 및 비전임 교원 ※ 지역대학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소재하지 않은 대학이며, 5대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은 DGIST, GIST, KAIST, POSTECH, UNIST을 의미

□ 신청 및 수행 제한사항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 조치를 받은 연구자는 제재기간이 연구자 연구계획서 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종료되는 경우에만 신청 및 참여 가능
- **(3책5공 적용)** 학문균형발전지원사업(보호연구, 지역대학우수과학자)은 연구수행전년(3책5공) 적용. 단, 5천만원 이하 과제는 제외
※ 창의·도전연구기반지원은 3책5공 적용 제외
- **(교육부·과기정통부 이공분야 개인연구 1인1과제 수행제한)** 교육부·과기정통부 이공분야 개인연구 과제를 수행 중인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은 신청 및 수행 불가

☞ 교육부·과기정통부 이공분야 개인연구사업

- 리더연구, 중견연구, 신진연구(신진/생애첫연구), 전략과제, 기본연구(이상 과기부), 학문후속세대지원(박사과정생연구장려금지원금, 박사후국내외연수/대통령Post-Doc./리서치펠로우), 학문균형발전지원(창의도전연구지원/보호연구/지역대학우수과학자), 개인기초연구(기본연구, 한국형SGER)

☞ 1인1과제 수행제한 예외조건

- 수행중인 과제가 신청하는 신규과제 연구개시일('19.6.1)로부터 10개월 이내 종료하는 경우(~'20.3.31) 신청 가능
※ 단, 신진연구(생애첫연구 포함), 중견연구 선정과제는 과제 평가대상에서 제외
- '15년까지 선정된 공동연구원인 경우 신청 가능
- X-프로젝트는 추가로 신청 및 수행 가능

- **(이공학개인지초 사업 內 1과제 신청제한)** 학문균형발전지원(창의·도전연구기반지원, 보호연구, 지역대학우수과학자), 과기부 기본연구 내에서는 동시에 1과제만 신청 가능

2 신청기간 : 2019. 2. 21(목) 09:00 ~ 2019. 3. 6(수) 18:00:00

<신청 관련 주의사항>

- ▶ 연구책임자는 ① 연구자 신청 마감시각 전까지 반드시 “신청 완료”처리 하여야 함.
- ▶ ② 주관기관 승인 기간 내에 “주관기관 승인”까지 모두 완료되어야 최종 접수과제로 인정함.
- 따라서, 신청자는 주관기관 승인 여부를 최종 확인 바람. (주관기관 문의)
- ▶ 신청자와 주관연구기관은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예상되는 신청 폭주를 감안하여 사전에 신청 및 승인절차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람.
- 해당 기간 내에 신청 및 승인 완료되지 않을 경우, 별도 구제절차는 진행되지 않을 예정임.

<제출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

- ▶ 반드시 제공된 양식을 활용하여 작성하며, 각 제출서류별 제시된 조건을 준수하여 작성함.
- ▶ 등록 완료된 연구계획서는 수정이 불가하므로, 작성 제출 시 작성 요령 및 유의사항 준수 요망

□ 연구자 신청 : 2019. 2. 21.(목) 09:00 ~ 2019. 3. 6.(수) 18:00:00

□ 주관연구기관 검토·승인 : 2019. 2. 21.(목) 09:00 ~ 2019. 3. 8.(금) 18:00:00

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e-R&D, <http://ernd.nrf.re.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별도 오프라인 제출 서류 없음)

□ 신청절차 : KRI 갱신 ➡ 연구자 신청 ➡ 주관연구기관 승인 ➡ 신청완료

사전절차	한국연구자정보(KRI) 정보 업데이트
신청	온라인 신청정보 입력, 제출서류 업로드(e-R&D)
승인	주관연구기관 검토·승인(e-R&D) ➡ 연구과제 신청 완료

※ 신청 완료 후에는 수정이 불가하므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준수 요망

□ 제출서류

○ (창의도전) 4개

- 연구계획서 : 연구내용 등 (작성분량은 5페이지 이내)

※ “작성분량은 5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여야 하며, 위반할 경우 연구계획서 평가 시 초과 분량에 대한 평가 미실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표지 및 참고문헌은 작성분량에서 제외)

- 대표연구실적 요약문 및 증빙자료 : 대표연구실적 및 증빙(사본)(5건 이내)

※ 대표연구실적 요약문·사본 파일은 온라인 신청정보 입력시 선택하는 대표연구실적에 대한 내용이어야 하며, 해당 연구실적은 KRI에 입력된 내용이 자동으로 연동됨.

- 고용(예정)확약서 or 고용계약서 [붙임3 공통양식 참조]

- 개인정보 및 과제정보의 제공·활용동의서

※ 작성 후 스캔하여 온라인 제출

○ (보호연구, 지역대학*) 4개

- 연구계획서**, 대표연구실적 요약문, 대표연구실적 사본, 개인정보 및 과제 정보의 제공·활용동의서

* 지역대학우수과학자의 경우 연구계획서 내에 박사후연구원(포닥) 활용 및 양성계획 작성

** 연구계획서 작성분량: 5P 이내를 권장, 최대 10P 이내 (제시된 작성분량을 위반할 경우 연구계획서 평가 시 초과분량(10P 초과)에 대한 평가 미실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Ⅲ 선정절차 및 평가

1 선정절차



※ '19년부터 지역대학우수과학자 1~5년과제도 암맹평가를 실시하지 않음(전체 과제 암맹 미 실시)

2 평가방법 및 항목

사 업	총 연구기간	
	1~5년	6~10년
창의·도전 연구기반지원 지역대학우수과학자	온라인평가 ➡ 패널심의	토론평가
보호연구	토론평가	

※ 창의·도전 연구기반지원의 경우 1~3년이므로 온라인평가→패널심의 단계로 진행

※ 보호연구의 경우 신청 연구기간과 상관없이 토론평가 실시

□ 창의도전

○ 연구자의 우수성, 연구내용의 창의성 및 도전성, 향후 기대효과

평가 항목	평가 지표	평가 내용	배점
연구자의 우수성	연구 경력 및 실적의 우수성	○ 연구자의 연구 경력 및 연구 실적은 우수한가?	40
	연구 과제와의 부합성	○ 연구자의 전공, 경력이 해당 연구과제를 수행하는데 적합한가?	
	연구 목표의 달성 가능성	○ 연구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연구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연구 내용의 창의성 및 도전성	연구과제의 창의성	○ 연구주제가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인가? ○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가? ○ 새로운 자료 수집 방법 및 분석 기법으로 연구 방법이 독창적인가?	50
	연구과제의 적절성 및 도전성	○ 연구과제의 내용과 연구 목적이 적절한가? ○ 연구과제 내용 및 범위가 구체적인가? ○ 전반적으로 연구 수행 계획이 타당한가? ○ 연구내용이 타 연구자가 수행한 연구내용과 차별적이고 도전적인가?	
향후 기대효과	연구의 기대효과	○ 연구수행으로 얻은 연구성과의 학술적(또는 경제적/산업적) 영향 및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가?	10
합 계			100

※ 세부 평가항목/배점 및 세부 절차 등은 별도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보호연구, 지역대학우수과학자

- 연구목표의 창의성 및 도전성, 연구자 역량, 연구내용 및 방법, 연구성과의 활용 및 기대효과, 연구비 및 연구기간의 적정성 등

<지역대학우수과학자>

평가항목	평가내용
연구목표의 창의성 ·도전성	■ 추구하는 연구목표가 현안해결, 기존 지식 개선, 기존 원리의 새로운 규명, 새로운 원리에 기반한 차세대 지식, 완전히 새로운 발견/발명 등을 중심으로 창의적이고, 도전성을 지향하고 있는가?
연구자 역량	■ 연구책임자는 교육 및 연구경력면에서 적당하게 훈련된 연구자로서, 제안한 과제를 실현시킬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 연구책임자가 사전에 수행한 연구과제의 수준은 제안한 과제를 실현시킬 수 있기에 충분한가? ■ 연구책임자가 최근 수행했던 연구과제의 연구업적은 우수한가?
연구내용 및 방법	■ 연구방법이 타당하고, 연구추진 체계(전략)가 적합한가? ■ 제안분야의 선행연구동향을 잘 파악하고 있고 선행연구와 비교해서 진보되고 차별화된 연구계획을 제안하고 있는가? ■ (융합연구과제에 한함) 제안한 연구주제(내용)가 융합연구로서 필요성이 높고, 융합성, 적합성 등이 우수한가?
활용 및 기대효과	■ 연구목적이 달성될 경우 해당분야 또는 관련분야의 과학적 지식을 증진시키는데 얼마나 중요한가?
연구비 및 연구기간	■ 연구내용에 맞는 적정연구비 및 연구기간을 설정하였는가? ※ 평가결과에 따라 연구비 및 연구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 지역대학우수과학자의 경우, 박사후연구원(포닥) 활용 및 양성계획 등에 대한 검토는 실시
하나 별도의 배점화 하지는 않음

※ 세부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은 별도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며 변동 가능

<보호연구>

평가항목	평가내용
보호연구 분야의 적합성	■ 제안된 연구과제가 보호연구의 목적 및 지정분야와 잘 부합하는가? ■ 학문의 다양성·균형성을 유지하고 해당분야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국가차원의 보호·육성이 필요한가?
연구자 역량	■ 연구책임자는 교육 및 연구경력면에서 적당하게 훈련된 연구자로서, 제안한 과제를 실현시킬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 연구책임자가 사전에 수행한 연구과제의 수준은 제안한 과제를 실현시킬 수 있기에 충분한가? ■ 연구책임자가 최근 수행했던 연구과제의 연구업적은 우수한가?
연구내용 및 방법	■ 연구방법이 타당하고, 연구추진 체계(전략)가 적합한가? ■ 제안분야의 선행연구동향을 잘 파악하고 있고 선행연구와 비교해서 진보되고 차별화된 연구계획을 제안하고 있는가? ■ (융합연구과제에 한함) 제안한 연구주제(내용)가 융합연구로서 필요성이 높고, 융합성, 적합성 등이 우수한가?
활용 및 기대효과	■ 연구목적이 달성될 경우 해당분야 또는 관련분야의 과학적 지식을 증진시키는데 얼마나 중요한가?
연구비 및 연구기간	■ 연구내용에 맞는 적정연구비 및 연구기간을 설정하였는가? ※ 평가결과에 따라 연구비 및 연구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 세부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은 별도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며 변동 가능

3 중복성 검토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www.ntis.go.kr) 및 전문가 의뢰를 통해 신청과제에 대한 중복성 검토

※ 관련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3항 제3호 및 제7조 제11항

4 가점 제도 운영

- 교육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선정(한국연구재단 포함)한 대표 우수연구 성과자가 과제신청시 선정평가 점수의 3%를 가점으로 부여

※ 우수성과 선정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며, 해당 성과로 인한 가점신청은 1회만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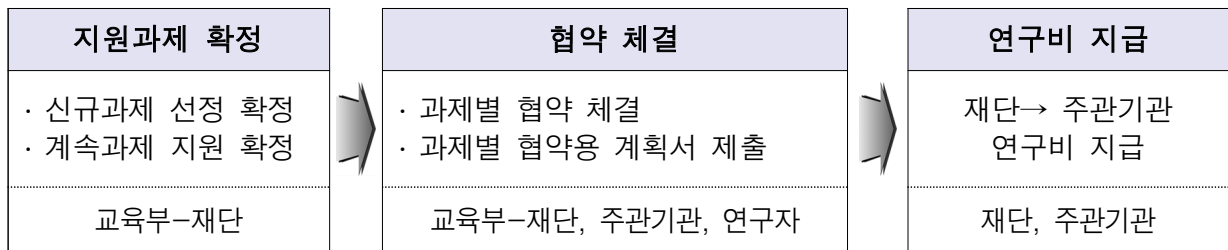
IV 연구비 지급 · 관리

1 연구비 지급

□ 사업 기간의 회계연도 일치

- 정부 정책(회계연도 일치)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에 실제 소요되는 연구 기간 및 협약시기 등을 고려하여 예산 편성 및 집행 (9개월분 지원)

□ 지급절차 및 방법



-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하 재단), 재단과 주관연구기관(소속기관)간 협약에 의거 재단이 **주관연구기관에 연구비를 지급**

※ ezbaro 유형1(특약계좌)에 해당하는 경우, 특약계좌 등록 · 승인 완료 후 지급가능

- 신규과제인 경우 지원과제 확정 후 개별협약 체결과 협약용 연구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 최종선정 통보 이후, 결정된 총연구비(직접비+간접비)에 대해 조정 · 수정내역 등을 반영한 협약용 연구계획서 제출

- 계속과제인 경우 차년도 지원여부 확정 후 개별협약 체결 및 협약용 연구계획서를 제출하며, 다년도 과제(2년 이상)인 경우 매년 개별과제 협약체결 및 협약용계획서(차년도 연구비 집행계획 포함) 제출해야 함.

□ 연구비 구성항목 : 직접비 + 간접비

- 총 연구비 신청액에 따라 직접비 상한액이 달라지며, 간접비는 직접비에 고시된 기관별 간접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 이내에서 지원
- 간접비율은 신규과제 선정 시 주관연구기관(소속기관)의 당해연도 고시 비율을 적용

2 연구비 사용 및 관리

- 연구비는 연구비카드를 발급 받아 협약용 연구계획서(수정 연구계획서)에 의거 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해 사용해야 함.

※ '16년 협약과제부터 기존 연구비카드관리시스템(Rndcard)이 이지바로시스템(Ezbaro)으로 대체됨.

- 주관연구기관(소속기관)의 장은 **연구비 집행 및 회계관리(증빙 등)**를 철저히 하여야 함.

- 연구비 집행과 관리 시 연구책임자와 주관연구기관(소속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등 제반 관련 규정**에 의한 연구비 비목별 계상 기준과 협약용 연구계획서 사항 등을 준수해야 함.

- 연구비 유용 등 **연구책임자가 연구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황** 발생 시 주관연구기관(소속기관)의 장은 **즉시 재단에 보고**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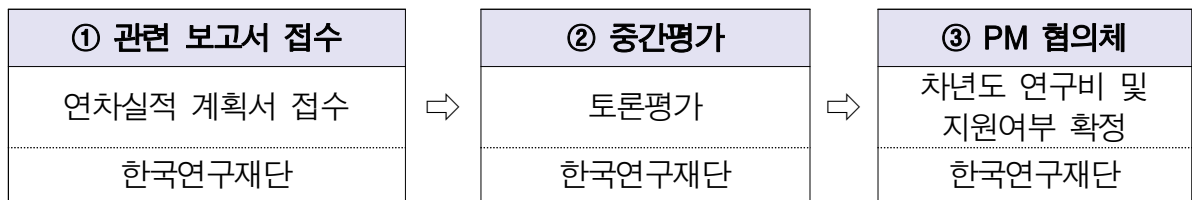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주관연구책임자 포함)의 부적절한 연구비 관리·사용으로 인해 외부기관으로부터 조사, 감사, 자료요구 등의 사안이 발생한 경우 한국연구재단에 즉시 보고 요망(관련: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4조 제5항)

3 간접비 지급

- 직접비에 고시된 기관별 간접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 이내에서 지원
- 간접비율은 신규과제 선정 시 주관연구기관(소속기관)의 최근 고시비율을 적용
- 간접비 중 연구실 안전관리비는 인건비 총액의 1~2% 의무 반영

1 중간평가 및 장기과제 관리방안

- (대상 과제) 6년 이상 지원과제 (2016년 신규과제부터 적용)
- (평가 방식) 당초 설정된 연구계획 대비 기수행 연구기간 실적(연구성과·업적 등) 및 향후 연구계획 점검을 위하여 토론평가 실시



- (평가 시기) 6년 이상 과제의 경우 매 3년 단위로 중간평가 실시
※ 단, 10년의 경우 최초 신청연구연도 종료 후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계속지원 여부 결정
- (결과 활용) 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과정, 중간 결과 등에 대한 개선의견 제시 및 미흡한 과제의 경우 연구기간·연구비 조정 가능

2 계속과제·종료과제 의무사항

- 연차실적계획서 제출 : 2년 이상 다년도 과제의 경우
 - 연차별로 연차실적·계획서*를 연구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제출
* 연차실적·계획서 : 당해 연도 연구과제의 수행실적 및 차년도 연구과제의 수행계획
 - 연차실적·계획서 제출 시, 차년도 연구기간에 대한 과제별 협약체결 완료 및 협약용 계획서(연구비 집행계획 포함)을 제출
- 결과보고서 제출 및 성과등록 : 과제 종료 후
 - (결과보고서 제출 의무) 결과평가는 실시하지 않고, 연구종료 1개월 이내에 5쪽 이내의 간략한 결과보고서를 제출
※ 결과보고서 제출 시 연구성과 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연구성과 소개서(간략한 성과개요 및 논문실적 등의 주요 성과) 의무 제출
 - (연구성과 등록 의무) 연구수행 기간 및 연구종료 후 5년 이내 연구성과 의무 등록
※ 관련근거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1항 제8호
※ 협약 시, 5년 이내 성과등록 의무화 조항 포함 ('15년 이후 협약과제부터 적용)

□ 신규과제 선정평가에 연계

- 연구수행으로 산출된 논문 등 연구성과는 차기사업 과제 신청 시 활용가능
- 종료과제를 대상으로 연구성과 소개서, 연구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교육부 연구개발 우수성과 선정

3 과제중단·후속지원

□ 창의도전 및 지역대학우수과학자의 경우, 지원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도 정부연구과제 수행이 가능한 연구자에게는 잔여기간을 지원

- * 창의도전 과제 연구책임자가 대학교원(전임)으로 이직하는 경우에 한함
- * 지역대학우수과학자 과제 연구자가 수도권 대학(공공·민간연구소 포함)으로 이직하는 경우에 한함.
 - 단, 잔여연구기간이 3분의 2 이상 남은 경우 협약 해약

□ 정당한 사유 없이 정부연구과제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연구자의 책무성 제고를 위해 기 지급된 연구비 일부* 환수 및 참여제한 가능

- * 연구수당 및 연구개발능률성과급 등
- ※ 연구과제 중도 포기에 대해서는 연구비 환수를 협약에 명시

□ 연구윤리를 저해하였다고 판단되거나 기타 연구윤리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해당 연구책임자에 대하여 연구비 조정·집행중지, 협약 해약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후속연구지원 제도

- 후속연구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연구기간 동안의 연구성과물 및 연구잠재력 등을 평가하여 지원여부 결정
- ※ 후속연구지원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수립·시행

4 과제 연구기간 연장

□ 임신·육아휴직 시 연구기간 연장으로 연구중단 및 우수연구자 경력단절방지

- 임신 및 육아 휴직에 의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과제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연구기간 연장 허용 (2년 이내)

1 유의사항

□ 신청 시 KRI 연구자등록번호 사용

- 신규과제 신청자는 하나의 KRI 연구자등록번호만 사용하여야 함.
- 여러 개의 KRI 연구자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다중 신청할 경우, 신청과제 전체를 무효처리할 예정임.

□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조치에 대한 안내

- 신규과제 신청 및 선정/협약이 완료된 이후라도 다음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 조치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관련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협약의 해약)

- 신청 시 부정확한 내용이나 허위 사실을 입력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신청자 (또는 선정자)가 연수 개시 전 전임 임용 또는 박사학위 취득 미완료 등으로 인해 지원 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타 사업 연구과제의 참여제한이 확정(연구비 용도와 사용)되어 기초연구사업 연구과제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
- 타 연구과제와의 표절, 중복 지원 여부 등이 확인되는 경우
- 기타 과제를 수행할 수 없는 제한 조건 또는 적용 법령에 따른 협약 해약 사유 등이 확인될 경우

□ 사이버연구윤리교육 이수 의무화

- 연구책임자는 협약서 상 연구 개시 3개월 이내에 사이버연구윤리교육을 의무 이수해야 함.
- 미 이수 시, 보고서 제출이 불가하며 이는 협약 위반사항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재 조치 가능

※ 이수 교육: “연구책임자를 위한 연구윤리”

※ 문의처: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KIRD, www.kird.re.kr, 1588-5834)

□ 국내·외 파견연구 및 해외 체류 시 사전 승인

- 연구책임자가 6개월 이상 국내·외 파견연구 및 해외 체류를 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최소 1개월 전 주관연구기관을 통한 별도의 협약변경 신청 필요

2 확인사항

□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의무화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 수행 연구자는 연구계획서 제출 후 협약 체결 이전까지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받아야 함.

* 인간대상연구란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정보로써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연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조)

- 각 소속기관(대학 등)에서 IRB에 관련 사항 확인하고, IRB 심의결과 제출·관리 등은 연구자와 주관연구기관(IRB 포함)에서 담당
 - ※ 전문기관은 필요 시 주관연구기관을 통해 IRB 심의여부 결과(심의결과서 및 심의면제확인서 등) 관리 현황 등을 제출 받아 확인
- 소속기관 IRB 이용이 곤란할 경우,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의 공용 IRB에 확인
 - ※ 문의처: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https://www.nibp.kr>)

□ 질병관리본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인체유래물 이용 안내

- 질병관리본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으로부터 인체유래물*을 분양받아 연구에 이용하려는 연구자는 반드시 담당 부서(질병관리본부 생물자원은행과(분양대표전화 1661-9070))에 사전 확인 후 자원 활용이 가능한 과제에 한해 신청하기 바람

* 인체유래물 : 혈청, 혈장, 소변, 혈액유래 DNA, LCL, LCL유래 DNA 등

□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연구시설 및 수입 신고

- 유전자변형생물체(LMO)를 이용하는 연구자는 「유전자 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시설 설치·운영 신고 확인서 및 시험·연구용 LMO 수입신고 확인서를 갖추어야 함
 - ※ 미신고 시설 운영 및 수입의 경우 벌칙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 시험·연구용 LMO정보시스템(<https://www.lmosafety.or.kr/mps>) 확인

□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된 화합물 기탁 안내

- 연구개발과제로부터 도출된 논문, 특허, 연구시설·장비 등 연구성과 분야별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유통하기 위하여 장관이 별도로 지정한 기관에 등록하거나 기탁하여야 함

※ 화합물의 경우,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지정 고시에 따라 한국화학연구원(한국화학연구원 부설 화합물은행, 042-860-7190)에 기탁하여야 함.

3 논문 사사표기 안내

- 연구성과의 학술지 논문 게재 시, 해당 논문에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음과 과제번호를 다음과 같이 명시

<Acknowledgement 표기방법 :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 참고>

- 국문 : “이 논문은 0000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임(No. 한국연구재단에서 부여한 과제번호 : 연구사업통합시스템에서 확인)”
- 영문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Basic Science Research Program through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 fund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grant number)”

4 적용 법령

- 동 사업은 『학술진흥법』,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 규정』 등을 적용함.

별첨1

보호연구 지원사업 세부설명

□ 사업 목적 및 필요성

- 과학기술 전문분야에 걸쳐 학문의 다양성·균형성을 유지하고 해당분야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국가차원의 보호·육성이 필요한 분야를 지정하여 해당 연구분야 보호

□ 보호연구 학문분야의 정의

구 분	정 의
소외분야	✓ 학문의 균형성 유지를 위한 것으로 학문분야 중 실용학문 위주의 선호로 인해 소외되는 분야 또는 연구기반 붕괴가 예상되는 분야로 민간부문에서 투자가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보호연구 지원사업으로 보호되어야 할 학문분야
연구기반 취약분야	✓ 학문의 다양성 유지를 위한 것으로 학문분야 중 전문인력이 부족하거나 기존 학문분류에 포함되지 않아 기존의 과제 평가 방식에서는 지원받기 어려운 분야 등으로 민간부문의 지원으로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보호연구 지원사업으로 보호되어야 할 학문분야

□ 보호연구 학문분야 지정

- 국가 차원의 보호·육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안정적 지원과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보호연구 학문분야 공고

['19년 보호연구분야 10개 목록]

No	보호연구분야	연구주제(예시)	전문(접수)분야 [코드번호]
1	대수적 구조에 대한 조합적 셈 (Combinatorial enumeration of algebraic structures)	• 대수적 구조에 대한 조합적 셈 연구 • 대수적 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칭함수 및 구조상수의 이해에 대한 계수적 조합수학의 기법 연구	대수학/이산수학/정보수학 [BA10100]
2	대역적 미분기하학	• 다양체상의 기하학적 발전방정식 • 다양체상의 리치 흐름(Ricci flow)과 리치 솔리톤(Ricci soliton)의 연구 • 다양체상의 미분연산자의 스펙트럼 연구	위상수학/기하학 [BA10300]
3	확률방정식모델	• 전염병 전이확산 확률 수리모델 연구 • 생체내 반응과 확산 등에서 나타나는 무작위성을 반영하는 이산확률방정식 모델 연구 • 확률방정식 기반 자원평가 및 예측 모델연구 • 맞춤형 암발병 확률 예측 모델 연구	응용수학 [BA10400]
4	극한조건 응집물질물리 연구	• 위상 초전도 탐색 • 마요나라 페르미온(Majorana fermion) 탐색	응집물질물리3 [BA20700]
5	입자 검출기 제작	• 대면적 고효율 광자검출기 개발 • 내방사성 실리콘 입자검출기 연구	입자/장물리/천체물리 [BA20100]
6	중력파 및 다중신호 천체물리	• 중력파 이론·파워·관측·데이터분석·해석 연구 • 차세대 중력파 검출기 연구 • 강한 중력영역의 일반상대론 검증 연구 • 중력파 천문학 연구	입자/장물리/천체물리 [BA20100]
7	통계열역학 분야	• 세포 환경 하에서 화학 평형 혹은 비평형 정상 상태에서의 화학 반응 속도에 관한 통계 열역학적 연구 • 전기장이 전해질의 삼투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통계 열역학적 연구 • 복잡 용액 내 반응 분자 수송 동력학과 이에 연동된 반응 동력학에 관한 비평형 통계열역학적 연구 • 기계학습을 이용한 생성분자 도수 통계와 반응 네트워크 구조 및 동력학 간의 상관관계 연구	물리화학 [BA40300]
8	X-선 회절 결정학	• X-선 회절 분석 방법론 개발 및 교육 플랫폼 구축 • 복합계 결정 구조의 원자 배열 무질서도와 유사대칭성 고찰 • 고유전율 복합 화합물의 온도 의존성 상전이 연구	나노화학 [BA40500]
9	고분자 설계 및 중합 - 중합법에 의한 분자구조 미세조성	• 정밀구조제어 합성에 의한 선택 기능성 고분자 중합 기술 연구 • 배향성 제어에 의한 정밀 중합 설계 및 고분자 합성 연구 • 가변성 공유결합 기반 네트워크 고분자 중합기술 연구 • 응답 기능 배향성 고분자 소재 기술 연구	고분자화학 [BA40600]

No	보호연구분야	연구주제(예시)	전문(접수)분야 [코드번호]
10	대기역학 (대기파동)	• 로스비파와 중력파를 포함하는 대기파동의 관측 및 이론 재조명 • 대기파동과 대류권/성층권/중간권 대규모 순환의 상호작용 연구 • 장기간에 걸친 대기파동의 에너지원 변화 및 전파 특성 변화 연구	대기과학 [BA30200]
11	행성과학 기초 분야	• 행성으로서의 지구 연구 • 태양계 행성 특성 연구 • 달과 행성간 자기장 연구	천문/우주과학 [BA30400]
12	카르스트 수리지질학	• 카르스트 지역의 수리지질학적 특성화 및 지하수유동 네트워크 분석 • 카르스트 지역의 하천수-지하수 상호작용 및 물수지 분석 • 카르스트 지역의 하천수 및 지하수의 생지구화학 분석	지구/지질과학 [BA30100]
13	생태학	• 기후 변화에 따른 생태 변화연구 • 비무장 지대 생태 연구 • 환경오염의 생태계 교란연구	식물학/분류학/환경생물학/ 미생물학[BH10500]/ [BH10700]/[BH10600]
14	희귀질환 연구분야	• 희귀질환의 병리기전을 신호전달을 중심으로 최신의 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연구 • 조로 성 질환의 병리 기전 및 지연 기작 연구	분자생물학 [BH20100]
15	토양학	• 국내 토양의 물리화학적 특성 규명 연구 • 국내 토양의 오염도 현황 분석 • 국내 토양의 화학적 특성 연구	응용생물화학 [BH30200]
16	식물병리	• 국내 발생 식물병원균 동정 및 예찰 • 국내 발생 작물 해충 동정 및 예찰	응용생물화학 [BH30200]
17	포유류 배아발생 연구분야	• 포유류 배아발생 동안에 치사를 동반하는 유전자의 기능 연구 및 시스템 구축 • 척추동물 배아 발생 동안의 세포분비 단백질 기능 연구	발생생물학 [BH20300]
18	효소학	• 효소의 구조 및 기능연구 • 생체 단백질 분리 및 기능연구	생화학 [BH10300]
19	분자진화 연구분야	• 무질서 단백질(IDP)의 분포, 기능 규명 및 진화적 역할 조명 • 세포대사 조절 유전자의 발생 및 진화적 역할 연구	발생생물학 [BH20300]
20	진화유전학	• NGS 데이터를 이용한 진화 기전 연구 • 메타데이터를 이용한 진화 기전 연구	유전학 [BH10200]
21	수산생물학	• 저서생물 및 유영생물 분류학 • 연안어업자원에 대한 과학적 어업자원조사 체계 및 빅데이터 구축	수산학 [BH30600]
22	세포미세구조	• 세포 소기관 및 미세구조 기능연구 • 세포 미세구조 이미지 분석연구	세포생물학/생리학 [BH10600]/[BH10400]
23	노화성질환 연구분야	• 미토콘드리아 기능 기반 퇴행성질환 예방 및 지연 연구 • 노인성 감염 예방 및 개선 연구	노화/암생물학 [BH20800]
24	친환경소재 바이오합성	• 생활밀착형 화학제품 대체 친환경 소재의 바이오 합성 기반 구축 • 화학소재에 대한 케모포비아 대응 바이오소재 생산을 위한 원천기술 개발 • 카로틴노이드 생산 미생물의 유전체/전사체 데이터베이스 구축	생물공학 [BH30900]
25	영양학	• 영양소 섭취 기준 설정 연구 • 수산식품의 위생 및 안전관리 • 영양-유전체-질병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영양요인 확인 및 식생활 평가도구 개발	영양학 [BH30800]
26	커넥톰에서 단일신경 역할 규명 연구분야 (신경회로)	• 행동 결정을 위한 커넥톰 활성 조절 생 분자 역할 이해 • 단일 신경의 커넥톰 조절에 미치는 면역세포 기능 연구	신경생물학 [BH20200]
27	비교유전학	• 남·북한 생명체의 유전 및 세포 생리적 차이 조사 • 메타 데이터 기반의 미생물 계통/분류 연구	유전학/생리학/세포 생물학[BH10200]/ [BH10400]/[BH10100]
28	젠더기반 만성질환 연구	• 젠더기반 대사질환 연구 • 젠더기반 암 질환 연구 • 젠더기반 퇴행성질환 연구	생리학/영양학/노화 암생물학[BH10400]/ [BH30800]/[BH20800]
29	행동 가소성의 진화 연구	• 사회적 환경(배우자 혹은 새끼의 행동)에서 가소적 행동의 공동진화에 대한 연구	신경의학 [BM10800]
30	인수공통감염 억제기전 연구를 통한 예방 및 치료타겟 발굴	• 인수공통기생원충에 대한 내인성인자의 발굴, 면역 방어기전 및 천연물 및 소분자 화합물들의 스크리닝 • 차세대 백신 제조를 위한 핵심 전략 도출 • 환자샘플 이용 타겟 유전자의 병태/생리연관성 임상 연구	감염의학(질환중심) [BM10200]
31	노화수체-부신 축 이상 질환의 제어 기술 고도화 연구	• 노화수체/부신 질환의 신규 치료표적 및 바이오마커 발굴	대사/내분비의학 [BM20300]
32	종양미세환경, 종양신생항원	• 종양 신생항원 발굴 및 예측 • 신생 항원특이적 종양 침윤 림프구 및 백신 개발	병리/진단의학 [BM20500]
33	천연물정보학	• 천연물신약개발 최적화를 위한 화합물 빅데이터 분석 S/W 구축(코딩, 알고리즘) • 천연물의 RASAR 연구 및 관련 S/W 개발 • 생리활성성분 독성발현경로 및 독성종말점 연구	약품화학 및 천연물 [BM50300]

No	보호연구분야	연구주제(예시)	전문(접수)분야 [코드번호]
34	신규 항생물질 개발을 위한 약품 미생물 기초 연구	- 신규 바이오항생제 플랫폼 연구 및 감염모델 개발 - 감염세균의 병원성 및 생존 네트워크 연구 - 다중 감염 및 군집 감염 병원균 연구	기초생명약학 [BM50100]
35	치아와 두개안면부의 평균치를 도출하기 위한 육안해부학, 방사 선학 및 유전학적 연구	- 한국인 유치(영구치) 크기에 관여 유전자 규명 - 한국인 두개골 및 악골 크기에 관여하는 유전자 규명	두개안면 형태/병태/재생학 [BM30200]
36	구강조직 및 구강(줄기)세포의 미세역학 연구	- 치주 인대의 백악질, 상아질 분화 및 조골/파골세포 거동의 미세역학적 연구 - 생체 재료의 미세 역학 제어를 통한 구강줄기세포 거동 연구	예방/재료/임상 [BM30300]
37	한약과 장내미생물 대사체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	한약재에 포함된 천연물의 장내대사 경로/흡수 연구 및 장내대 사 산물의 질환에 대한 효능 연구	기초한의약 [BM40100]
38	한약 효과의 시스템적 분석을 통한 효능 및 부작용 예측 시스템	- 중요 한약재 및 기성 한약제제의 화합물, 제노믹스, 프로테오 믹스, 메타볼로믹스 프로파일 DB 구축 - 오믹스 DB의 분석을 통하여 한약재의 효능 및 부작용 예측 시 스템 개발(In vivo 및 동물실험)	기초한의약 [BM40100]
39	비암성말기 및 희귀질환자간호	- 말기 심부전환자/가족의 전환간호 프로토콜 개발 - 만성 폐쇄성 호흡기 질환 환자의 질병trajectory와 삶의 질 패턴	기초간호 및 임상간호중재 [BM60100]
40	다문화와 사회적 다양성 간호 (Multi-cultural Society and Nursing Care)	- 결혼 이주민 여성의 건강증진, 적응 및 대처 기전 - 다문화청소년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건강관리 및 예방간호중재 [BM60200]
41	탄수화물 인식 및 결합을 통한 세포막 수용체 연구	- 질화성 세포 특이 탄수화물 결합 수용체 단백질 및 당쇄 인식 /결합 단백질 연구 - 선천성 면역 기능 보강을 위한 탄수화물 결합 수용체 단백질 의 발굴 및 관련 질환 예방치료 기초 연구	분자세포의학 [BM10100]
42	의식저하 환자의 회복을 위한 뇌자극 치료기법 개발	- 장기 의식 저하 상태 관련 뇌 전기생리적 기초 연구 - 동물모델에서 뇌간 망상체 자극에 용이한 침습적 및 비침습적 전기 및 자기 자극 기법연구	근골격계 및 재활의학 [BM21200]
43	한반도 생약자원 멀티오믹스 기반구축 및 활용 연구	GPS 정보기반 한반도 생약자원 유전체/대사체 정보 구축 및 멀티오믹스 통합 DB 구축/활용 연구	약품화학 및 천연물 [BM50300]
44	고효율 전기-연소 혼합 제어 엔진	- 전기-연소 혼합엔진의 작동제어 개발 - 자동차/항공기용 혼합 엔진의 작동 사이클 연구 - 전기-연소 혼합엔진의 효율 최적화 도출	열공학 [BD10200]
45	유동 해석 및 실험 연구	- 고속 복합 유동 분석을 위한 3차원 실시간 유동 가시화 기법 개발 - 전기장 및 자기장을 포함한 다중물리 유동장의 계산법 개발 - 기계학습법을 이용하여 다양한 대용량 변수를 활용할 수 있는 유동장 계산법 도출	유체공학 [BD10300]
46	융복합 피막 처리된 구조재의 피로수명 평가	- 이종 재료로 피막처리된 복합재 구조물의 피로수명 평가 - 극한환경에서의 구조재 피로수명 개선을 위한 피막처리 기법 개발 - 화학적 유해환경 하에서의 구조물 피로수명 개선 기술 개발	응용역학 [BD10400]
47	소재 접합을 위한 고정구(fastener) 체결 원천기술	- 고정구 성능/수명예측을 위한 다물리 모델연구 - 고정구 계면 마찰기저 및 Wedging 이론연구 - 이종금속 고정구 접합의 멀티스케일 전산모사	기계가공 [BD10600]
48	시멘트 복합체의 기능성 향상 연구	-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저장 후 이를 막는 용도의 특수 콘크리트의 개발 - 탄소나노튜브(Carbon Nanotubes)를 이용한 시멘트 복 합체의 기능성 향상	건축시공재료 [BD20900]
49	토목구조물의 고전적인 구조해석 및 상태파악 연구	- 거대 트러스 및 프레임의 직접강성도법에 의한 효율적인 반응 분석 - 트러스 및 프레임의 비선형해석 - 트러스 및 프레임의 실시간 상태 파악	토목구조/시공/재료공학 [BD20800]
50	원격탐사 및 영상자료 기반 공간정보 추출	- 영상자료를 이용한 딥러닝 기반 주제도 생성 - 딥러닝 기반 특정 개체 탐지 기술 개발	교통/측량 [BD20700]
51	고합금 소재의 주조	- 고합금강의 주조 시 액상 특성 및 응고거동의 실험적/이론적 연구 - 고합금 소재 주조 시 결함 기구 및 최적 공정조건 연구	금속재료 [BD30100]
52	산화물 반도체 재료 및 공정	3차원 반도체소자, 3차원 반도체 칩 적층 및 다중 이종소자 3차원 패키징 기술 개발 - 산화물 반도체 패터닝 기술 개발	반도체/전자재료 [BD30200]
53	섬유 강화 세라믹 복합소재 제조	- 섬유강화 세라믹 복합소재의 액상공정 및 결합 연구 - 섬유강화 세라믹 복합소재의 열기동성 연구	세라믹재료 [BD30300]
54	금속-비금속 복합재 개발	- 금속-고분자 복합재의 제조공정 및 제조결함 연구 - 금속-세라믹-고분자 복합재의 제조공정 및 특성 평가	나노융복합소재 [BD30500]
55	대사경로 재설계 및 효소개량을 통한 식물계 바이오매스의 바이오케미컬 전환	- 셀룰로오스 기반 고효율 효소복합체 개발 - 코리네박테리움 헴 대사경로조절 기술개발 - 광역학소재 바이오케미컬 생산 - 핵심 바이오마커 활용 분해효소발굴	생물공정 [BD40300]
56	천연섬유소재의 극세화 및 재생기술을 이용한 인체적합형 고기능성 섬유	- 천연소재를 활용한 나노섬유 및 미세섬유화 연구 - 천연섬유소재의 재생 및 재활용 기술 연구 - 인체친화형 천연섬유 및 바이오응용기술연구	섬유공학 [BD40400]

No	보호연구분야	연구주제(예시)	전문(접수)분야 [코드번호]
57	고분자 기반 코팅 및 가공공정 연구	- 고분자 용액의 점탄성 및 항복력을 반영한 코터 및 가공 공정 장치 설계 연구 - 고분자 용액의 가공 물성 및 가공 조건에 따른 가공품의 정량적인 미세구조 변화 연구	고분자공학 [BD40500]
58	비동기 저전력 회로 설계 기법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를 위해 낮은 동작전압에서 동작하는 비동기 회로 설계 기술 연구	집적회로 [BE10300]
59	초연결 분산 스토리지 네트워크	높은 신뢰성과 보안성 및 빠른 정보 접근이 가능한 초연결 분산 스토리지 네트워크 연구	컴퓨터네트워크 [BE20400]
60	차세대 이동통신망 보안성 분석 기술 개발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5G, 재난망 등)의 표준 및 상용망의 설계와 구현상에 존재하는 성능 및 보안 문제점들을 자동으로 탐지하고 분석하여 다양한 문제점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보안 핵심 연구	컴퓨터네트워크 [BE20400]
61	AI처리 기반 기술 (AI Infrastructure)	많은 neural network들을 효율적으로 동작시키기 위한 자원 자동 provisioning, 네트워크 시스템 기술 연구	인공지능[BE40400], 컴퓨터시스템/처리[BE40200]
62	환경 모니터링을 위한 수공양용 Drone	프로펠러 추진의 방수구조, 수중 위치인식 및 통신 기술, 외란에 강인한 제어알고리즘 연구	시스템융합 [BE90200]
63	다중센서 기능을 갖춘 인공피부	센싱 메카니즘의 집적화 기술, 접촉한 물체의 인식을 위한 인공지능, 복합적 데이터 마이닝 기술 연구	최적화 및 데이터융합 [BE90300]
64	환경변화에 따른 생태계 변화 예측 모델링	Drone 등을 활용한 효율적 생태 Big data 수집 방안, 재선충 등의 확산모델 정립, 확산 제어 기법 연구	시스템융합 [BE90200]
65	자극감응성 고분자	- 온도, pH, 빛, 생체분자 등 환경 변화에 응답하여 형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고분자 물질에 대한 연구 - 팽창/수축 제어, 표면제어 등을 이용하여 감응형으로 의약전달, 세포분화, 촉매, 액추에이터 등에 응용이 가능한 융합기술 연구	재료 [BE50500]
66	삼투에너지 기반으로 오수의 유용 영양염류 재생산 기술	- 하천 및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부영양화 물질을 회수하는 기술 연구 - 환경문제 해결 및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지향적 지속가능 기술 개발 연구	수질 및 대기질관리 [BE60200]
67	산성광산배수 처리 및 자원화 기술	분리막 기반의 수처리 시스템 개발을 통한 고효율 광산배수 처리 및 광물 자원 회수 시스템 개발	수질 및 대기질관리 [BE60200]
68	비선형 최적화기법 개발	- 특정 응용분야를 고려치 않은 일반적인 비선형 최적화 문제에서의 글로벌 최적화에 근접한 알고리즘 개발 - 비선형 최적화 기법을 위한 분석적 이론 개발 연구	산업공학 [BE80100]
69	품질관리기술 방법론 개발	품질 모니터링, 품질 예측, 공정최적화 등 품질 관리를 위한 데이터기반의 혁신적인 방법론 개발	산업공학 [BE80100]

※ 보호연구의 필요성이 추가로 제시될 경우 추후 추가될 수 있음

▶ **기본사항** (신청자격, 연구계획서 작성 등)

1. 학문균형발전(창의도전·보호·지역)는 3책5공의 적용을 받습니까?

- ➡ 3책5공이란,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 ·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3책 5공)임을 뜻합니다. 이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8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전념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5천만원 이하 소규모 과제의 경우 3책5공 예외가 됩니다.
- ➡ 따라서, 창의도전 및 보호·지역대학우수과학자 중 5천만원 이하 신청과제는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2. 1인1과제 수행제한이 무슨 뜻입니까? 현재 개인연구를 수행하고 있는데 학문균형발전(창의도전·보호·지역)에 신청이 가능합니까?

- ➡ 1인1과제 수행제한이란, 연구책임자 1명이 교육부 · 과기정통부 소관 개인연구과제를 1개만 진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교육부 · 과기정통부 소관 개인연구 사업을 수행중인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은 신규과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집단연구 수행여부는 무관합니다.

- ▶ **교육부 소관 개인연구:** 학문후속세대지원(박사과정생연구장려금지원, 박사후국내외연수/대통령 Post-Doc./리서치펠로우), 학문균형발전지원(창의도전연구지원/보호연구/지역대학우수과학자), 개인기초연구(기본연구, 한국형SGER)
- ▶ **과기부 소관 개인연구:** 리더연구, 중견연구, 신진연구(신진/생애첫연구), 기본연구, 전력과제

- ➡ 단, 예외조항으로 수행 중인 과제의 연구기간이 신청하고자 하는 신규과제인 이공학 개인기초(기본·보호·지역)의 연구개시일('19.6.1.) 기준으로 10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경우(~'20.3.31.)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과기정통부 X-프로젝트는 1인1과제 수행제한에서 예외이며, '15년까지 선정된 과제의 공동연구원도 예외입니다.

3. 학문균형발전지원(창의도전연구지원/보호연구/지역대학우수과학자) 및 과기부(기본연구)에 동시 신청이 가능합니까?

- ➡ 교육부 학문균형발전지원(창의도전연구지원/보호연구/지역대학우수과학자) 및 과기부 기본연구는 같은 연구과제로 1개의 과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외국인 연구자의 신청이 가능합니까?

- ➡ 외국인 연구자의 경우 국내 소속기관의 연구자로 등록 및 고용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면 연구책임자로서 신청 및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외국 소재 기관에 소속된 연구자의 경우에는 신청 및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5. 창의·도전연구기반지원사업은 취업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 ➡ **취업자와 미취업자 모두 신청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취업자(소속이 있는 자)는 연수 개시(2019.6.1.)와 동시에 원 소속기관에서의 고용관계를 정리하여 주관기관(대학)에서의 연구 개시에 제반 문제가 없어야 하는 조건입니다.
- ➡ **대학전임교수·국공립 연구기관 및 민간연구소 연구원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6. 전문연구요원(병역특례)의 경우 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 ➡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기간을 종료하고 연구개시일(2019.6.1.)에 연구를 시작할 수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전문연구요원 복무기간과 연구기간이 중복되는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7.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신청 할 수 있나요?

-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의해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연구자는 해당 참여제한 조치가 **신청마감일 전날까지 종료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8. 접수기간(연구자 신청·주관연구기관 승인)을 놓쳤을 경우 구제방법은 없습니까?

- ➡ 신청기간과 신청절차는 모든 연구자와 주관연구기관에게 공통적인 사항인 만큼, 해당 기한 내에 완료가 되지 않는 경우 **구제방법은 없습니다.** 주관연구기관 미승인과제의 경우, 승인기간 이후에 공문으로 추가 승인을 요청해도 접수될 수 없음을 유의하십시오.

9. (보호연구, 지역대학우수과학자) 연구비와 연구기간은 어떻게 선택해야 합니까?

- ➡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계획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연구비와 연구기간을 연구책임자가 자율적으로 신청합니다.** 연구기간은 1~10년까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연구비는 (보호연구) 연간 간접비 포함 1~10천만원까지 (지역대학우수과학자) 연간 간접비 포함 1~5천만원, 포닥 추가 채용시 최대 5천만원 추가 지급이 가능합니다. 주관연구기관(소속기관)의 간접비 비율에 따라 연구자가 신청 가능한 직접비의 규모가 달라지므로, 사전에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어 간접비 비율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 ➡ 정부 회계기간 일치 방침에 따라, **다년도 과제**(=연구기간 2년 이상 과제)의 경우 **1차년도(2019) 연구기간 및 연구비는 9개월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2차년도(2020) 이후의 연구기간 및 연구비는 12개월**으로 신청합니다. (잔여 3개월 연구비는 마지막년도에 추후 지원)

(예시1) 보호연구 1년(단년도) 신청과제

연구기간	연구비 (천원)
1차년도 (2019년)	1차년도(2018년) (직접입력)
'19.6.1.~'20.5.31. (12개월)	10,000 ~ 100,000 (12개월 기준)

(예시2) 보호연구 2년이상 (다년도) 신청과제

연구기간			연구비 (천원)		
1차년도(2019년)	2차년도 이후(2020년~)	마지막년도 (잔여기간 지원)	1차년도(2018년) (직접입력)	2차년도 이후(2019년~) (직접입력)	마지막년도 (자동계산)
'19.6.1.~'20.2.29. (9개월)	'20.3.1.~'21.2.28. (12개월)	마지막년 3.1~5.31. (3개월)	7,500 ~ 75,000 (9개월 기준)	10,000 ~ 100,000 (12개월 기준)	2,500 ~ 25,000 (3개월 기준)

(예시3) 지역대학우수과학자 1년(단년도) 신청과제

연구기간	연구비 (천원)	
1차년도 (2019년)	1차년도(2018년) (직접입력)	
'19.6.1.~'20.5.31. (12개월)	연구비	10,000 ~ 50,000 (12개월 기준) * 간접비 포함
	포닥 추가 인건비	~ 50,000 (12개월 기준) * 포닥 추가인건비는 간접비 미지급
	총 연구비	10,000 ~ 100,000 (12개월 기준)

※ 포닥 미 채용시 연구비만 신청하면 됨

(예시4) 지역대학우수과학자 2년이상 (다년도) 신청과제

연구기간			연구비 (천원)		
1차년도(2019년)	2차년도 이후(2020년~)	마지막년도 (잔여기간 지원)	1차년도(2018년) (직접입력)	2차년도 이후(2019년~) (직접입력)	마지막년도 (자동계산)
'19.6.1.~'20.2.29. (9개월)	'20.3.1.~'21.2.28. (12개월)	마지막년 3.1~5.31. (3개월)	7,500 ~ 37,500 (9개월 기준)	10,000 ~ 50,000 (12개월 기준)	2,500 ~ 12,500 (3개월 기준)
			~ 37,500 (9개월 기준)	~ 50,000 (12개월 기준)	~ 12,500 (3개월 기준)
			7,500 ~ 75,000 (9개월 기준)	10,000 ~ 100,000 (12개월 기준)	2,500 ~ 25,000 (3개월 기준)

※ 포닥 미 채용시 연구비만 신청하면 됨

10. 연구개시일 이전에 이직 예정입니다. 현재의 소속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해도 됩니까?

- ➡ 아니요, 신청하는 과제의 연구개시일 기준으로 소속된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청 시점에 KRI상의 정보수정 등 과제신청 및 주관연구기관의 승인에 문제가 없는지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의 세부 사항은 주관연구기관의 내부지침에 따르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이직 예정인 기관에서의 신청이 불가할 경우, 현 기관 소속으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① 과제선정 후 협약체결·연구비 지급까지 선정(신청)기관으로 진행이 되며, 이후 협약 변경을 통해 주관기관 이전 절차를 진행한다는 점과 ② 기관별 간접비율이 다르다는 점을 유의하시어 주관연구기관에 확인 후 진행하십시오.

11. 기존에 수행한 연구주제로 신규 신청이 가능합니까? 타 과제와의 중복성 검토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 ➡ 기존에 수행한 연구와 100% 동일한 연구주제 및 내용으로 신청은 불가합니다. 신청 과제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를 통하여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와의 중복성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중복성이 있다고 판단된 과제는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중복성이 우려될 경우, 연구자가 사전에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를 통하여 검토를 해볼 수 있습니다. (※ NTIS 콜센터 ☎042-869-1115)

과제 유사도가 60%가 넘는 경우 ‘유사과제건수> 기수행과제’ 부분에 결과가 조회되며, 그렇지 않으면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 과제 유사도가 높아 결과가 조회된다면, 해당 과제는 평가 학문단에서 전문가 검토를 통해 중복과제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12. 창의·도전연구기반지원사업 신청 전에 주관연구기관(대학)이 정해져 있어야 하나요?

- ➡ 신청 시 주관연구기관(대학)이 사전에 정해져 고용(예정)확약서 or 고용계약서를 발급받아야 신청가능 합니다. 또한 연구를 수행할 주관연구기관(대학)의 연구비 중앙관리부서(산학협력단 등)와 연구비중앙관리 및 4대보험 가입가능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13. 창의·도전연구기반지원사업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할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 ➡ 신청 시의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서류	구 분
■ 연구계획서	eRND 온라인 업로드
■ 대표 연구실적 요약문 및 증빙자료	eRND 온라인 업로드
■ 고용(예정)확약서 or 고용계약서	eRND 온라인 업로드
■ 개인정보 및 과제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서	eRND 온라인 업로드

14. 교육부 창의·도전연구와 과기부 기본연구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 대학의 전임/비전임이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이 구분되어 있으므로 (창의도전(비전임), 기본연구(전임)) 전임/비전임 구분을 명확히 하여 신청하셔야 하며, 관련하여 대학 산학협력단(연구관리부서)에 먼저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대학 전임/비전임 등 지원대상 별 지원부처 >

구분			지원사업		비 고
			교육부	과기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전임교원(교수, 부교수, 조교수)			○	비정년트랙 전임교육 포함
	비전임교원(명예교수, 연구교수, 겸임교수, 시간강사 등)		○		대학의 전임교원 이외의 연구자
	기타(박사후연구원, 리서치펠로우, 부설연구소 연구원 등)		○		
과기특성화 대학	전임교원(교수, 부교수, 조교수)			○	비정년트랙 전임교육 포함
	비전임교원(명예교수, 연구교수, 겸임교수, 시간강사 등)		○		대학의 전임교원 이외의 교원
	기타	박사후연구원	○		교육부 시행계획 지원대상에 박사후연구원 포함
		박사후연구원 이외 대학소속 연구원 등		○	과기특성화 대학은 정부출연 연구소 기능 겸함
대학 병원				○	

▶ 과제수행

15. 학문균형발전지원(보호·지역)에 동료 전임교수의 외부연구원 참여가 가능합니까?

참여연구원의 자격요건이 정해져있습니까?

- ➡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학문균형발전지원사업의 참여연구원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여연구원 자격요건
▶ 동료교수 및 연구원(전임교원 및 전임연구원)은 참여연구원으로 참여 불가
▶ Post-Doc./박사급 연구원/이공계 박사과정생 · 석사과정생 · 학사과정생 참여 가능 (※ 과정생이 아닌 경우도 일부 인정하나, 반드시 고용계약이 체결되어야 함)

16. 지역대학우수과학자사업의 지원 대상기관이 아닌 곳(예 : 지역대학 → 공공·민간연구소 또는 수도권 대학)으로 연구책임자가 이직 시, 연구의 계속 진행이 가능합니까?

- ➡ 해당 이직기관이 연구비 중앙관리가 가능한 경우에 한해 연구수행을 허용하지만 잔여 연구기간이 3분의 2이상 남은 경우에는 불가하며 협약을 해약합니다.
- ➡ 신규과제 신청 후 연구개시일 전에 지역대학우수과학자 지원 대상기관이 아닌 곳으로 이직 시에는 선정이 취소됩니다.

▶ 연구비 계상

17. 내부인건비 관련, 학문균형발전지원(창의도전·보호·지역) 사업 특성상 반영하여야 할 유의사항이 있습니까?

- ➡ 네, 내부인건비 계상 시 지급인건비는 20~50%범위 내로 권장합니다. (미지급인건비는 30%범위 이내로 계상 필수) 단, 권장사항이기에 해당 범위 미만·초과의 경우에는 과제선정 후 협약 시에 적합한 사유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기타 세부 계상기준·집행에 관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을 참고하시어 소속기관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기타 인건비의 편성 비율 및 사업 특성상 반영 유의사항은 없습니다.

18. 연구비 계상과 관련하여서는 어떤 자료를 참고합니까?

- ➡ 다음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공동관리규정에 따른 기본적인 사항이므로 참고하십시오. 기타 세부 계상/집행에 관한사항은 함께 공지되는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 및 주관연구기관에 비치된 『연구비 관리매뉴얼』을 참고하십시오.
- ➡ 관련 문의는 1차적으로 소속된 주관연구기관에 하시고, 기타 세부적인 연구비 계상/집행기준에 관한 문의는 연구상담센터(1544-6118)로 하십시오.

구 분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
인건비	내부인건비 (연구책임자)	· 주관연구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 · 연구책임자의 인건비를 미지급/지급으로 구분하여 계상하며, 미지급 인건비는 30%내로 상한
	외부인건비 (참여연구원)	· 타 기관 소속 연구원 혹은 연구책임자의 소속이 아닌 타 대학 학생
	학생인건비 (참여연구원)	· 연구책임자의 소속 대학 학업 과정생
연구수당		· 인건비(지급+미지급)의 20% 범위 내에서 계상 가능 · 당초 연구비집행계획에 계상된 연구수당보다 초과집행 · 증액 불가

※ 기타 사업특성상 반영하여야 하는 비목별 편성비율 등에 대한 기준사항은 없음.

- ➡ 『연구비 관리매뉴얼』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학술지원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등에 따른 연구비의 세부 집행·관리 및 정산 가이드라인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자 한국연구재단 정산 소관부서에서 제작된 자료입니다. 『연구비 관리매뉴얼』은 각 주관연구기관으로 기 배포되었습니다.

19. 내·외부 인건비 계상 시 작성해야 하는 참여율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급인건비>

- ➡ 내·외부 인건비 계상 시 참여율은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의 연봉 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과제에서 지급될 인건비 비율로 계상합니다. 참여율은 총 연봉의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해당연도 연구기간 중 다른 참여 연구사업의 종료 등을 고려하여 기간별로 차등계상이 가능합니다.
- ➡ 단,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이미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 가능합니다.

(※ KAIST, GIST, DGIST, UNIST는 100%를 넘어 계상된 미지급30%에 대해서는 연구수당 계상 시 제외)

<미지급인건비>

- ➡ 인건비가 기 확보되어 과제에서 별도의 내부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연동비목 계산을 위하여 과제당 30% 이내에서 미지급참여율 계상이 가능합니다.

20. 학생인건비 풀링제란 무엇입니까?

-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계상된 학생인건비를 대학 내 연구관리부서(대학의 연구처 또는 산학협력단)에서 연구책임자 단위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학생연구원은 연구책임자가 소속된 대학에서 학사, 석사 및 박사과정(박사후연수과정을 포함) 중에 있는 연구원을 의미합니다. 관련된 상세 내용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대학 학생인건비 관리지침(교육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소속기관의 학생인건비 풀링제 시행 여부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속된 주관연구기관(연구비 관리부서)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은 연구자들이 자주 질문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되었으며, 2019년 접수과제에서 자주 질문이 들어오는 항목을 계속 업데이트 할 예정이므로 수시로 들어와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 대학연구기반구축

- 대학중점연구소

2019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 신규과제 신청요강

2018. 12.

교육부 학술진흥과
한국연구재단 이공학술지원팀

문의절차 및 문의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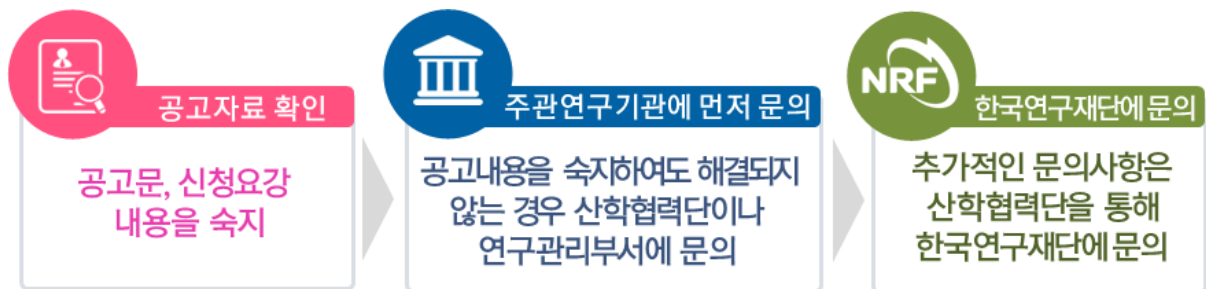
□ 문의 절차

“문의전화 쪽주로 전화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공고자료(공고문* · 신청요강) 확인 후**
주관연구기관을 통하여 질의 요망”

* 재단 홈페이지 참조(사업안내>이공분야 기초연구사업>중점연구소지원사업>공지사항 No133)

 **문의 전 확인** 공고문, 신청요강을 반드시 읽어보세요.

 **문의순서** (1차) 연구자 ➡ 주관연구기관에 문의
(2차) 주관연구기관 ➡ 한국연구재단에 문의



□ 한국연구재단 문의처

- 사업 관련: 사업내용 · 지원조건 등
 - 한국연구재단 이공학술지원팀 ☎ (042) 869-6063, 6069, 6388, 6066
-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ernd) 업로드 및 오류 관련: 한국연구재단 연구상담센터 ☎ 1544-6118
- 평가 관련: 선정평가 절차 · 방법 등
 -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본부 학문단 ☎ (042) 869-내선번호 4자리

자연 과학단	생명 과학단	의 약 학 단	공 학 단	ICT·융 합 연구 단
6523	6532	6053	6546	6574

신규과제 신청 시 필수 확인 사항

- ① 2019년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 신규과제 신청 기간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한 내에 신청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9년 하반기 신규과제 신청 없음)

구 분	내 용
연구자 신청 기간	2019. 2. 11.(월) 09:00 ~ 2019. 2. 18.(월) 18:00
주관연구기관 승인	2019. 2. 11.(월) 09:00 ~ 2019. 2. 20.(수) 18:00
신청 절차	연구자 접수 ▷ 주관연구기관 승인 ▷ 신청 완료

※ 연구자 신청 및 주관기관 승인 마감시간은 18:00:00까지이며 당 기한 내에 신청 완료가 되지 않는 경우, 별도의 구제절차는 진행되지 않으니 기한 내에 완료 요망

※ 신청마감일에는 온라인 접속이 폭주하므로 마감일 1~2일간 전까지 온라인신청 완료 권장

- ② ‘온라인신청매뉴얼’은 신청 1주일 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될 예정이므로,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③ 중점연구소의 경우 대학별 신청 과제수 제한이 있으므로 사전에 주관 연구기관(산학협력단 또는 연구관리부서)에 문의하시고 사전 추천을 받은 연구소만 신청가능
※ 대학부설연구소는 KCI(<http://www.kci.go.kr>) 홈페이지에 대학부설연구소 등록해야 함

- ④ 신규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은 반드시 연구계획서 작성 전에 한국연구자정보시스템(KRI)에 필수입력사항을 모두 기입하여 주시고, 기 입력된 정보는 최신정보로 수정(업데이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비 시 연구계획서 신청이 완료되지 않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한국연구자정보(KRI, <http://www.kri.go.kr>) 필수항목 입력 안내

※ 세부 내용은 추후 ‘온라인 신청 매뉴얼’ 참조 (KRI 정보등록 관련 문의처 ☎ 1544-6118)

○ 온라인신청 전 KRI에 필수항목 입력여부 확인 및 본인의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함

○ 신청자 소속대학이 연구재단과 정보공유 협정체결을 맺은 기관인 경우, KRI에서 본인의 업적 직접수정이 불가함. 이 경우 소속대학의 관련 부서로 연락

☞ 협정체결기관보기 : KRI 홈 > 사업소개 > 협정체결기관

처음으로

회원가입

KRI협정체결기관현황



KOREAN RESEARCHER INFORMATION

한국연구자정보

게시판

CONTENTS

I. 사업 개요

1. 사업 목적	61
2. 지원 내용	61
3. 2019년 추진 일정	62
4. 2019년 중점 추진방향	62

II. 신규과제 신청

1. 신청 및 참여 자격	64
2. 신청 및 참여 제한사항	66
3. 신청 방법 및 절차	69
4. 신청 기간	70
5. 제출 서류	70

III. 신규과제 선정평가

1. 평가 절차 및 방법	71
2. 평가 항목 및 내용	71
3. 중복성 검토	72

IV. 연구비 지급 · 관리

1. 연구비 지급	73
2. 연구비 사용 및 관리	74

V. 향후 관리사항

1. 계속과제 관리	75
2. 지원 중단과제 관리 강화	76
3. 종료과제 결과 보고 및 성과 관리	76

VI. 기타 사항

붙임 자율운영 대학중점연구소 세부 추진계획	81
별첨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 선정 현황	82

I 사업 개요

1 사업 목적

- 이공분야 대학부설연구소의 인프라 지원을 통해 대학의 연구거점을 구축하고, 대학연구소의 특성화·전문화 유도
- 중점연구소가 우수 신진연구인력을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

2 지원 내용

구 분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				
사업 유형	집단(연구지원)				
지원연구비 선정과제수	중점연구소	자유공모	이공계 과학기술 소분야	7과제 내외	7억원 이내/연 (간접비는 직접비의 10% 이내 별도 지급)
		지정공모	4차 산업혁명	1과제	
	(시범) 자율운영중점연구소		기초과학분야	4과제	11억원 이내/연 (간접비는 직접비의 10% 이내 별도 지급)
지원 대상	(대학중점연구소) 이공분야 대학부설연구소 중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이력이 없는 연구소 (자율운영대학중점연구소) 한국연구재단 KCI홈페이지(www.kci.go.kr)에 자연과학으로 분류된 연구소로 수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지구과학 등 기초과학에 기반한 연구소 기존 중점연구소와 달리 앞서 지원받은 연구소도 신청 가능 ※ 대학별 중점연구소 자유공모 및 자율운영중점연구소 중 분야 최대 2개, 중점연구소 지정공모 분야 중 1개 신청, 총 최대 3개 과제 신청가능				
지원기간	9년(3+3+3)				
연구개시일	2019. 6월				

(예시) 연간 최대치 신청할 경우 연구비(간접비 제외된 금액임) 및 연구기간

구분		지원기간	연구비(백만원)				연구기간			
			‘19년	‘20년	‘21년	...	‘19년	‘20년	‘21년	...
중점 연구소	(자유공모)	9년 (3+3+3)	525	700	700	700	‘19.6.1~ ‘20.2.29 (9개월)	‘20.3.1~ ‘21.2.28 (12개월)	‘21.3.1~ ‘22.2.28 (12개월)	...
	(지정공모)									
(시범) 자율운영중점연구소				825	1,100	1,100	1,100			

3 2019년 추진 일정

구 분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
‘18. 12월	‘19년도 신규과제 공모
‘19. 1월	온라인신청매뉴얼 안내
‘19. 2월	신규과제 신청/접수
‘19. 3월~5월	선정평가 및 협약
‘19. 6월	연구개시(2019. 6. 1.)

* 2019년 하반기 신규과제 신청 없음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향후 변동될 수 있음

4 2019년 중점 추진방향

- 연구현장 수요 충족 및 대학연구소를 기반으로 한 안정된 연구환경 구축을 위해 지원 효율화 추진
 - ※ 연구비 규모 확대: (‘18) 5억원 이내 → (‘19) 7억원 이내
- (대학별 신청요건 완화) 대학별 자유공모 및 시범사업 분야 최대 2개, 지정공모 분야 중 1개 신청, 총 최대 3개 과제 신청가능
 - ※ 중점연구소(자유공모) + (시범) 자율운영중점연구소 : 대학별 최대 2개
 - ※ 중점연구소(지정공모) : 대학별 최대 1개
- (연구자 행정부담 완화) 집단연구과제 신규과제 보고서 분량 간소화 **35페이지 이내** 및 계속과제 보고서 분량 간소화 추진
 - ※ 증빙자료: 별도 별쇄본 제출 →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e-R&D) 업로드

○ 대학 중점연구소 지원 효율화

구 분	중점연구소		(시범) 자율운영중점연구소
	자유공모	지정공모	
분야	이공계 과학기술 쏠분야	4차 산업혁명	기초과학분야*
지원과제	15개 내외 (최초 7개 내외, 후속 8개)	1개 연구소	4개 연구소

* 한국연구재단 KCI홈페이지(www.kci.go.kr)에 자연과학으로 분류 및 수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지구과학 등 기초과학 분야

※ 정부정책에 따라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선도할 1개 과제 추진

○ (자율운영중점연구소사업 트랙 시범 추진) 연구사업 운영 가능한 연구소 선정 연구소장의 책임 하에 소규모 씨앗형 연구과제를 연구소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 4개 연구소, 연 11억 내외, 3+3+3년간

- 원활한 운영을 위해 연구전담인력 인건비, 평가관리비 등 지원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비목별 계상기준 적용
- 기초과학분야 연구소의 자율운영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평가기준 등을 마련하여 선정

※ 자율운영중점연구소가 세부과제 선정 시, 연구재단에 RB 및 평가의원 풀 등 요청할 시 협조

○ 회계기간 일치에 따른 연구개시 일정 조정 및 연구비 지급 조정

- 정부 정책(회계연도 일치)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에 실제 소요되는 연구기간 및 협약시기 등을 고려한 예산 편성 및 집행을 위해 연구개시 일정 및 연구기간 조정(잔여기간은 지원 안함)

※ 1차년도는 9개월(2019.6.1.-2020.2.29.), 2~9차년도는 12개월(202X.3.1.-202X.2.28.)

Ⅱ 신규과제 신청

1 신청 및 참여 자격

- ★ 신청과제는 대학부설연구소에 관한 조건 및 연구원 구성 등에 관한 자격조건을 모두 만족해야함
- ★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및 참여연구원의 신청제한 및 참여제한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요건검토 및 최종선정 이후에라도 과제 탈락 처리함

< 대학부설연구소 >

- 이공분야 대학부설연구소로서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① 대학의 총(학)장 추천을 받은 연구소
- ② 대학당국의 연구소 육성·지원이 확고하고 구체적인 육성·지원 계획이 수립된 연구소
- ③ 연구소장 책임 하에 타 연구소와 차별화되는 전문화·특성화 발전이 가능한 연구소로써, 전문화·특성화하고자 하는 분야가 해당 대학 소재 지역의 산업과 연계되어야 함
- ④ 기존 연구소 기반을 토대로 연구인프라(인력·시설 등)확장, 학제적 연구, 학술적 성과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연구소

- 한국연구재단 KCI홈페이지(www.kci.go.kr)에 ‘대학부설연구소’로 등록된 연구소이어야 함

< 연구과제 및 연구원 구성 >

- 연구과제 구성 : 연구소별 1개 총괄과제로 신청(세부과제 구성은 자율)
- 연구진 자격요건 및 구성 기준(대학중점연구소에 한함)
 - ※ 단, 자율운영대학중점연구소의 경우 연구소의 자율적인 운영을 위해
 - 주관연구책임자(연구소장)은 필수
 - 그밖에 연구원 구성요건은 연구소 자율적으로 구성(해당 안됨)

구 분		내 용	연구업적 및 자격
주관연구책임자		연구소장	
공동연구원		연구소당 2명 이상	- 대학부설연구소 소속 대학 교원
전임연구인력	전임연구교수	전임연구교수 2명 이상	- 박사학위 소지자, 연구업적 3편 이상
	전임연구원	포함하여 총 5명 이상	- 박사학위 소지자
연구보조원		연구소당 10명 이상	- 학/석/박사 과정생

① 연구책임자(연구소장)

- 국내 대학부설연구소의 **연구소장이 주관연구책임자로 신청**
 - ※ 신청 마감일 기준 연구책임자의 참여 여부는 확정된 상태이어야 함
 - * 단, 연구소장으로 취임 (또는 발령)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어도 신청은 가능하나 연구소가 선정되면 연구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장으로 취임하여야 함
- 주관연구책임자로서 연구소 기반 조성 및 특성화 발전, 인력 양성 및 과제 진행을 관리하며, 단계 기간 중 불가피한 사유(사망, 질병, 퇴직 등) 없이 변경 불가
 - ※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주관연구책임자 변경 요청 시에는 평가를 실시하며 주관연구책임자를 대신할 수 없다고 평가된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 ※ 연구소장 변경으로 인한 지원중단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중도포기 할 경우, 해당 대학은 3년간 동 사업 신청을 제한함*
 -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6장 제27조(참여제한기간 및 사업비 환수기준)

② 공동연구원

- 연구소당 최소 2명 이상 구성
 - ※ 신청 마감일 기준 공동연구원의 참여 여부는 확정된 상태이어야 함
- 대학부설연구소 소속 대학교원이어야 하며, 타 대학 소속 교원은 참여 불가함

③ 전임연구인력

- 전임연구교수는 최소 2명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전임연구교수를 포함하여 전임연구인력 최소 5명 이상을 확보하여야 함
 - ※ 신청 마감일 기준 전임연구인력의 참여 여부가 미확정 상태인 경우도 신청은 가능하나, 연구소가 선정되면 연구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종 확보하여야 함
 - ※ 전임연구교수로만 최소 5명을 확보하는 것은 가능하나, 전임연구교수와 전임연구원을 균등하게 활용하는 권장함. 단, 전임연구원만으로 5명을 구성하는 것은 불가능함.
- 연구소에 상근하며, 연구에 전념할 것을 조건으로 채용된 연구자에 한함
- 전임연구인력(전임연구교수, 전임연구원)은 박사학위 소지자이어야 하며, 전임연구인력 전체 인원 중 타 대학 박사학위 출신자가 25% 이상이어야 함
- 전임연구교수는 최근 5년간 연구업적 기준* 3편 이상을 만족하여야 함

* 연구업적 기준

2014년 1월 1일부터 온라인 신청마감일 현재까지 **게재 완료된** 재단 등재(후보)학술지, 국제학술지 게재논문 (SCI·SCIE급 등), **등록 완료된** 국제특허 또는 전문 학술저서(학술적 가치가 있는 역서 포함) 등의 연구 실적

※ 논문 : 주저자, 교신저자 또는 공동저자로서 참여하여 게재(publish)가 최종 완료된 실적만 인정하며,

게재가 확정된 상태(accepted, in press)의 실적은 불인정함

특허 : 등록이 최종 완료된 건이어야 하며, 출원 건은 인정하지 않음

저/역서 : 단독 저서 및 역서는 연구실적 2편으로, 공동 저서 및 역서는 연구실적 1편으로 산정

※ 상기 학술지에 게재하기 어려운 특수한 분야는 평가 시 참고할 만한 소명서를 온라인 신청 시 입력

- 소속이 없는 박사학위 소지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중점연구소에 발령을 내야 함
- 전임연구인력의 중점연구소 과제 연구참여율은 6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함
- 인건비는 전임연구교수는 연 36백만원 이상, 전임연구원은 연 30백만원 이상 지급해야 함
- 전임연구인력은 신청대학 이외에 다른 대학에 출강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하되, 연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구소장의 허가를 득할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 가능

2 신청 및 참여 제한 사항

< 대학부설연구소 >

- 대학중점연구소 신규과제는 기수혜 연구소(중단 연구소 포함)는 신청 불가. 단, 시범추진 중인 자율운영대학중점연구소는 기수혜 연구소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
 - ※ (중복 신청 불가) 기초과학분야연구소(자율운영중점연구소) 이면서 후속과제 지원 가능한 연구소는 2과제 중 1과제만 신청 가능
 - ※ 세부내용 불임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 선정 현황” 참조
- 대학별 자유공모 및 시범사업 분야 최대 2개, 지정공모 분야 중 1개 신청, 총 최대 3개 과제 신청가능
 - ※ 본교와 분교는 동일한 대학으로 간주함
-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결과를 반영한 정부 재정지원제한조치에 따라 대학중점연구소 및 기초과학연구역량강화 참여 제한

※ 해당 대학이 신청하여 선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재정지원 제한 기간(2019.1.1.~2019.12.31.)동안 재정지원이 불가하며, 대학 자체 재원으로 사업 수행

< 유형별 재정지원 제한 >								
	대학 구분	대학 수			정원 감축 권고	재정지원		
		일반 대학 (187교)	전문 대학 (136교)	합계 (323교)		일반재정 지원	특수목적사업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자율개선	120교	87교	207교 (64%)	제외	지원* (전체)	신청 가능	지원
	역량강화	30교	36교	66교 (20%)	감축 권고 실시	지원* (일부)		
	진단제외	27교	3교	30교 (9%)				지원**
	재정지원 제한	I 4교	5교	9교 (3%)		제한	제한	일부 제한
		II 6교	5교	11교 (3%)				전면 제한

* 자율개선대학 대상 일반재정 지원 : 대학혁신지원사업 I 유형
 ** 일부 역량강화대학 대상 일반재정 지원 : 대학혁신지원사업 II 유형

- 교육부 소관 집단연구지원사업 제재 등 참여제한을 받은 대학 소속의 부설연구소 참여 제한

< 연구원 >

□ 정부R&D 공통사항 적용

- (3책 5공)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3과제 이내로 한정함

※ 참고 : 3책 5공 적용 예외조건

-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에 해당되는 과제
- ② 「2019년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기초연구사업 기본계획」에 따른 3책 5공 적용 예외조건
 - 신청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15년 이전 선정 신진연구자지원사업
 - * '16 ~ '19년 후속연구로 선정되는 연구과제 포함. 단, 우수신진 및 모험연구 제외
 - 이공학개입기초연구지원사업(舊 일반연구자지원사업)
 - '16년 이후 선정과제 중 연간 평균연구비가 5천만원 이하인 과제
- ③ 이 외의 과제(타 부처 사업 등)에 대한 예외조항 적용 여부는 해당 타 과제를 관리하는 전문 기관 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사후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 무효 처리

- **(참여 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조치를 받은 연구자는 제재기간이 연구계획서 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종료되는 경우에만 신규 과제 신청 및 참여 가능

※ 참여제한 사유가 있으나 아직 참여제한 조치를 실제로 받지 않은 연구자는 과제 신청이 가능하나, 과제 선정 및 연구개시 후 참여제한 조치가 발생하는 경우 과제 선정 당면 취소

□ 2019년 기초연구사업 공통사항 적용

○ 신규 신청 및 선정과제수 제한

- ‘19년 상반기에 공고된 집단연구사업(대학중점연구소, 선도연구센터, 기초연구실) 중에서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으로 1과제만 신청 가능

○ 기존연구 수행자 신청 제한

- 교육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기초연구사업 중 집단연구사업(대학중점연구소, 선도연구센터, 기초연구실)을 수행 중인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은 집단연구 신규과제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으로 신청 불가

※ 예외 : 수행 중인 과제가 신규과제 개시일로부터 10개월 이내 종료하는 경우

□ 유의사항

- 동 사업 내에서는 1인 1과제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는 집단과제로써, 1과제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1인만 대표로 신청함

3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방법

-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 연구계획서(신청서) 및 증빙서류 온라인 제출(등록) 및 주관기관 승인 완료

□ 신청 절차

구 분	신청 절차	세부내용
사전절차 (연구책임자, 주관기관)	대학부설 연구소 등록	▶ KCI(http://www.kci.go.kr) 홈페이지에 대학부설연구소 등록 -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정보마당에서 대학부설연구소 등록
	대학과의 사전협의 및 확정	▶ 주관연구기관(소속대학)과의 사전 협의 -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온라인으로 사전 추천을 받은 후에 신청 가능 - 지원 사항 가능 여부에 대한 협의(연구공간 및 운영인력 지원 등)
	KRI 등록정보 갱신	▶ 한국연구자정보(KRI, http://www.kri.go.kr)의 개인정보를 최신으로 갱신 - 기본정보 : 인적정보(연락처 등), 소속기관, 직급, 학과 등 - 학위정보 : 학위수여 대학, 세부전공, 지도교수 등 - 연구실적 : 논문, 특허 등
	제출 서류 사전 준비	▶ 연구계획서 및 증빙서류 작성 : 양식에 따라 작성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작성 : 참여연구원 전체에 대하여 작성
신청 (연구책임자)	온라인 신청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 업로드 (e-R&D)	
	-	▶ 온라인 화면 상의 신청 정보 입력/확인 ▶ 연구계획서 및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증빙자료 온라인 업로드 ※ 접수완료 시 수정이 불가하므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준수 요망
승인 (주관연구기관)	검토·승인 (eRND)	▶ 과제 신청 가능 여부(신청자격 등) 확인 - 자격조건 만족여부, 타 사업 참여, 참여제한, 기타 연구윤리 위반 등 ▶ 온라인 신청정보 입력사항·연구비 확인 ▶ 업로드 파일 확인 : 신청양식 준수 여부, 파일 이상여부 등 확인 ▶ 주관기관 승인 처리
연구과제 신청 완료		
※ 온라인 신청방법에 대한 신청매뉴얼은 접수 시작 전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www.nrf.re.kr)에 별도 안내하며, 입력사항은 변동 가능		

※ 연구계획서 등 관련 증빙이 정상적으로 업로드가 되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이 깨지거나 안 열리는 경우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4 신청 기간

구 분	기 간
① 연구자 신청/접수 기간 (신청 마감일)	2019. 2. 11.(월) 09:00 ~ 2019. 2. 18.(월) 18:00:00
② 주관기관 검토/승인 기간	2019. 2. 11.(월) 09:00 ~ 2019. 2. 20.(수) 18:00:00

※ 연구책임자는 상기 신청마감일 까지 등록신청을 필히 완료해야 하며, 연구책임자의 신청사항에 대해 주관연구기관(소속기관)장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 접수가 최종 완료되는 것임.

– 연구책임자와 주관연구기관은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예상되는 접속 및 신청 폭주를 충분히 감안하여 사전에 신청 및 승인절차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기한 내에 신청 완료가 되지 않는 경우, 별도 구제절차는 진행되지 않을 예정임.

5 제출 서류

□ 제출 서류 목록

-	항 목	작성 시 유의사항
1	연구계획서	- 분량은 35페이지 이내에서 작성함 ※ 제시된 작성분량을 위반할 경우 연구계획서 평가 시 초과분량에 대한 평가 미 실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2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 모든 참여연구원에 대하여 작성
3	증빙자료	- 연구계획서 내용과 일치하여 관련 증빙작성

※ 반드시 제공된 양식을 활용하여 작성하며, 각 제출서류별 제시된 조건을 준수하여 작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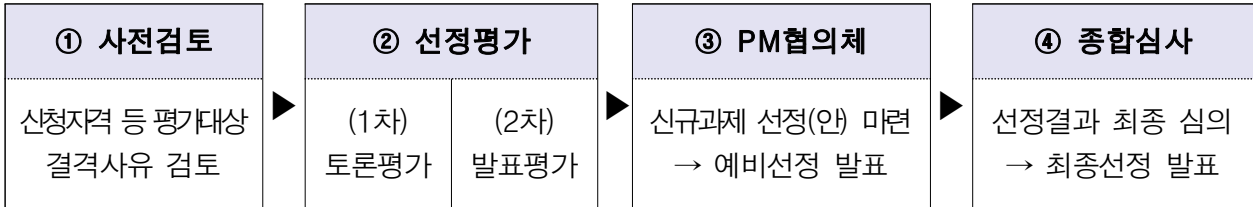
※ 모든 제출 서류는 국문 작성을 원칙으로 함

– 불가피할 경우 영문 작성이 가능하나, 이로 인해 접수 또는 평가 시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재단에서 책임지지 않음

※ 자율운영대학중점연구소의 경우 양식이 수정될 수 있으므로, 추후 별도확인 요망

Ⅲ 신규과제 선정평가

1 평가 절차 및 방법



※ 세부평가계획에 의해 변경 가능

2 평가 항목 및 내용

○ 중점연구소(지정 및 자유공모)

구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연구소 기반구축	연구소 운영 실적	- 연구소 특성화·전문화 추진 실적 - 연구소 시설 및 연구장비·문헌 보유 현황
	연구소 발전 계획	- 연구소 특성화·전문화 발전 계획(대학의 특성화 발전 방향과 부합도 포함) - 지역 거점연구소로 발전방안(연구소 자생력 확보 방안 포함) - 외부기관과의 협력계획(학·연·산 협력 포함) - 학술대회·세미나 개최 등 성과 공유 계획
	대학의 연구소 육성 계획	- 중장기 연구소 육성계획 - 대학의 인력 확충·지원 계획(전임연구인력 지원, 행정인력 등) - 대학의 재정투자 및 시설 확충 계획
	연구인력구성	- 연구인력 구성의 적정성 - 연구소장의 행정적·학문적 능력 - 참여연구인력의 연구능력 및 연구실적
연구/ 산학협력 수행 및 인력양성 계획	연구 수행계획	- 연구주제의 창의성·구체성 - 연구내용, 방법의 적합성 및 체계성 - 성과목표(논문·특허·저서)의 적정성 - 결과활용 및 기대성과
	산학협력 수행계획	- 학·연·산 협력계획의 타당성 - 대학의 지역사회 기여도
	인력양성계획	- 교육과 연구의 연계 계획 - 전임 연구원 양성 및 활용계획의 합리성

※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 방법 등은 별도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자율운영중점연구소

구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연구소 발전 계획 및 연구소장의 역량	연구소 비전 및 발전 계획	○ 중장기 중점연구소 발전 및 육성계획의 우수성 - 중점연구소를 자율적 운영계획 제시 (사업관리 및 세부과제 선정 방법 등) - 연구소의 중장기 발전계획 제시 ○ 중점연구소 목표의 및 사업추진계획의 구체성 - 인력, 시설, 운영전략, 재정투자 계획 등의 적절성 - 연구인력 구성 계획의 적정성
	연구소장의 역량	○ R&D 연구개발 경험 및 연구업적의 우수성 ○ 연구소장으로서의 행정적·학문적 능력의 우수성 ○ 사업관리, 조직관리 경험 및 내·외부 네트워크 역량 - 학회 및 협회 등 외부 활동 경력
연구소 기반구축 실적 및 기관의 육성 계획	연구소 운영 실적	○ 연구소 시설 및 연구장비·문헌 보유 등 기반구축 현황 ○ 연구소 연구개발 추진 실적 - R&D 수주현황 및 연구인력 확보 현황 등
	대학의 연구소 육성 계획	○ 중장기 연구소 발전 및 육성계획 ○ 대학의 인력 확충·지원 계획(전임연구인력 지원, 행정인력 등) ○ 대학의 재정투자 및 시설 확충 계획

※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 방법 등은 별도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자율운영중점연구소가 세부과제 선정 시 별도의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선정

[참고] 소속대학 지원 사항 예시

※ 소속대학의 지원 사항은 평가항목 중 ‘대학의 연구소 육성 계획’ 과 관련하여 선정평가 시 고려대상임.

1. **인력 확충** : 중점연구소에 대한 운영인력(전임행정요원 등) 지원

2. **시설 확충** : 연구공간, 사무실, 실험실 등 전용 공간 지원

- 중점연구소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중점연구소 사무실, 전임연구인력 연구실, 연구참여자 연구 공간 등 연구소 전용 공간 지원

3. **재정투자** : 대학 자체 대응자금 지원 및 산업체, 지자체 등을 통한 대응자금 확보 지원

- 대학, 산업체 및 지자체 등을 통한 대응자금 확보 가능 (각 기관별 의무비율은 없음)

※ 신청 시, 대응자금 약속서 등 관련 서류 제출은 필수사항이 아니며, 주관기관 내부에서 관리함

* 단, 추후 재단에서 대응자금 집행/관리 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상기 내용은) 소속대학 지원사항으로써 가능한 사항에 관한 예시로서, 의무사항이 아님

- 따라서, 최소/최대 기준 등 정해진 조건은 없으며, 아래의 예시 이외의 지원 사항에 대해서도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설정 가능함.

- 단, (선정평가를 위하여) 신청용 연구계획서에 제시하는 ‘소속대학 지원 사항’ 은 협약용계획서 제출 시에 변경이 불가능하며, 연구 개시 후 과제 수행 시에 반드시 제시한 지원 사항을 이행해야 하므로, 연구소 및 대학 간의 충분한 협의 하에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확하게 작성 바람

3 중복성 검토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www.ntis.go.kr) 및 전문가 의뢰를 통해 신청과제에 대한 중복성 검토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3항 제3호 및 제7조 제11항

IV 연구비 지급 · 관리

1 연구비 지급

□ 연구비 구성 항목: 직접비(인건비 포함) + 간접비 + 특별지원기자재비*

* 특별지원기자재비는 계속과제만 지원

- 직접비: (중점연구소) 7억원 이내/연 (자율운영중점연구소) 11억원 이내/연

* '19년 이전 선정된 계속과제는 당초 협약예산 5억원 이내/연

- 간접비: (특별지원기자재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10% 적용 지급

※ 직접비(인건비 포함)와 별도로 선정과제의 주관연구기관에 지급

※ 간접비 중 연구실 안전관리비는 인건비 총액의 1~2% 의무 반영

※ 주관연구기관은 연구과제별로 간접비를 관리하고, 전문기관이 요청 시 간접비 내역을 제출해야 함

- 특별지원기자재비: 2~3단계 1차년도 진입 계속과제 중 당초 연구계획서 제출 시 신청과제에 한하여 1억원 이내의 예산 범위에서 지원(3단계 진입 연구소의 경우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상위 15% 내외 중 신청 연구소에 한해 지원)

※ 특별지원기자재비는 전용이나 차년도 이월이 불가능하며, 선정 이후 기자재 변경 시에는 재단 승인 필요

□ 사업 기간의 회계연도 일치

- 2019년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 신규과제의 경우, 회계연도와 예산집행 일치를 위하여 1차년도는 9개월분을 지원함

□ 지급방법

-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과 주관연구기관(소속기관)간 협약에 의거 재단이 주관연구기관에 연구비를 지급

□ 지급시기

- 지원과제 최종 확정 시 수정된 연구계획서(협약용) 제출 및 협약체결 후 지급

※ 수정 연구계획서(협약용) 제출 : 신규 선정과제 통보 및 계속과제 지원 결정 통보 이후 결정 총연구비(직접비+간접비+특별지원기자재비)에 대해 당해연도 연구비 조정내역 등을 반영한 협약용 수정 연구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2 연구비 사용 및 관리

- 연구비는 연구비카드를 발급 받아 협약용 연구계획서(평가 후 수정된 연구계획서)에 의거 주관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해 사용해야 함
 - ※ '16년 협약과제부터 기존의 연구비카드관리시스템(Rndcard)이 이지바로시스템(Ezbaro)으로 대체됨
- 사용된 연구비에 대해서는 주관연구기관(소속기관)의 장이 회계관리 사항을 증빙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함
- 연구비 사용과 관리 시 주관연구책임자와 주관연구기관(소속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등 제반 관련 규정에 의한 연구비 비목별 계상기준과 협약용 연구계획서 사항 등을 준수해야 함
- 연구비 유용 등 주관연구책임자가 연구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황 발생 시 주관연구기관(소속기관)의 장은 즉시 재단에 보고해야 함
 -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주관연구책임자 포함)의 부적절한 연구비의 관리·사용으로 인해 외부기관으로부터 조사, 감사, 자료요구 등의 사안이 발생한 경우 재단에 즉시 보고해야 함
-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 매년 당해연도 연구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제출
-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은 2014년부터 「학생인건비 실지금액 하한선 적용 대상」 사업에 해당되지 않음

V 향후 관리사항

1 계속과제 관리

□ 보고서 제출 및 연차점검/단계평가

구분	연차점검		단계평가
보고서 제출	시기	(각 연차별) 당해연도 종료 2개월 전	(각 단계별) 단계 종료 2개월 전
	서류	연차실적계획서 온라인 제출/접수	단계보고서 온라인 제출/접수
내용	- 당해연도 목표 대비 실적 - 차년도 연구계획, 연구비 집행 및 편성의 적절성 등 검토		현 단계에 대한 연구계획 대비 수행실적 및 다음 단계 연구 계획 평가
절차	① 연차점검 : 온라인 연차점검 - (중점연구소) 온라인 연차점검 - (자율운영중점연구소) 현장점검을 통한 연차점검 실시 ② PM협의체 • 차년도 지원여부 및 연구비 확정		① 단계평가 : 「발표평가」로 진행 • 연구실적 및 계획에 대해 연구책임자의 발표를 통한 패널평가 ② PM협의체 및 예비결과 발표 • 차년도 지원여부 및 연구비 조정(안) 마련 ③ 종합평가 및 최종결과 발표 • 평가결과 검토 및 다음 단계 지원여부 최종 결정
결과 활용	점검 결과에 따라 계속지원 여부 및 차년도 연구계획 및 연구비 조정		평가결과에 따라 다음 단계 지원여부 확정 및 연구비 차등 지급 ※ 단계평가 결과 탈락된 연구소가 소속된 대학은 향후 2년간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에 대한 신규과제 신청을 제한함
비 고	단계보고서 제출 시에는 단계보고서로 대체함		* (3단계 진입 단계평가 시에만 해당) 정부 지원 종료 후에도 대학의 연구거점으로 지속적인 성장·발전이 가능하도록 자립 가능성(대학의 지원 규모, 약속이행 정도, 산학연 협력 실적 등) 역량 평가 등 중점 실시

※ 지표 및 방법 등은 별도의 점검/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대학중점연구소 운영실태 현장점검

- 신규선정 및 단계 지원 후 6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을 점검
 - 대응자금, 전임연구인력(교수), 연구공간, 운영인력 확보 현황
 - 신청 당시 대학의 지원계획에 대한 이행 현황
- 중점연구소의 연구소 운영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고 미 이행시 시정 요구 및 중단조치 할 수 있음

2 지원 중단 과제 관리 강화

□ 연구 수행 포기

- 이직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한 연구 수행포기 시, 주관연구기관(연수기관)의 장은 즉시 한국연구재단에 승인을 요청해야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정부연구과제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연구자의 책무성 제고를 위해 기지급된 연구비 일부를 환수

※ 연구과제 중도 포기에 대해서는 연구비 환수를 협약에 명시

※ 불성실 중단과제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함

3 종료과제 결과 보고 및 성과 관리

□ 결과보고서 제출 및 연구 결과 보고

구분	최종평가	
보고서 제출	시기	연구 종료 후 45일 이내 최종보고서(초안) 제출 ※ 평가 후 내용을 보완하여 연구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 제출
	서류	최종보고서(초안)(요약서, 성과소개서 포함) 온라인 제출
내용	- 최초 계획 대비 대학의 지원실적, 성과목표 달성도, 연구과제 수행 결과, 정부지원 종료 후의 연구소 운영계획 등	
절차	① 최종평가 : (연구실적에 대한) 연구책임자의 발표를 통한 패널평가 ② PM협의체 : 최종평가 결과 심의	
결과 활용	- 평가 결과가 60점 미만(100점 기준)인 연구책임자는 향후 3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신청 제한	
	- 연구개발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최종(단계)보고서 또는 그 전자문서를 제출 ※ 해당 내용을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국가기록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 관련 기관에 배포하거나 공개	
비고	-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이후에 기 제출된 결과보고서가 연구 부정행위 사례(예: 허위 및 표절 등)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연구자 및 연구기관에 대해 교육부 및 전문기관은 소정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그 제재조치 결과 및 명단을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음	

※ 세부 지표 및 방법 등은 별도의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연구성과 등록 의무

- 간략한 성과 개요 및 논문 실적 등 주요 성과를 온라인으로 등록
 - ※ 연구성과 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연구성과소개서는 의무적으로 제출함
 - 연구 종료 후 5년까지 논문 게재, 특허 등록 등의 성과내용을 한국연구재단 성과관리시스템에 수시로 입력
- (공개제한 요청) 연구결과정보의 비공개가 필요한 경우 연구종료 후 2개월 내에 공개제한 요청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에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최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 연장 가능

□ 결과보고서 및 연구성과 미등록 시 제재 조치 사항

- 연구수행 기간 및 연구종료 후 5년 이내 연구성과 미등록 연구책임자의 경우 2년 이내 참여제한 조치
 - ※ 관련근거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1항 제8호
 - ※ '15년부터 협약 시 5년 이내 성과등록 의무화 조항 포함(신규 및 계속과제)

VI 기타 사항

1 유의사항

□ 신청 시 KRI 연구자등록번호 사용

- 신규과제 신청자는 하나의 KRI 연구자등록번호만 사용하여야 함.
 - 여러 개의 KRI 연구자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다중 신청할 경우, 신청과제 전체를 무효처리할 예정임.

□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조치에 대한 안내

- 신규과제 신청 및 선정/협약이 완료된 이후라도 다음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 조치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관련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협약의 해약)

- 신청 시 부정확한 내용이나 허위 사실을 입력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신청자 (또는 선정자)가 연수 개시 전 전임 임용 또는 박사학위 취득 미완료 등으로 인해 지원 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타 사업 연구과제의 참여제한이 확정(연구비 용도와 사용)되어 기초연구사업 연구과제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
- 타 연구과제와의 표절, 중복 지원 여부 등이 확인되는 경우
- 기타 과제를 수행할 수 없는 제한 조건 또는 적용 법령에 따른 협약 해약 사유 등이 확인될 경우

□ 사이버연구윤리교육 이수 의무화

- 연구책임자는 협약서 상 연구 개시 3개월 이내에 사이버연구윤리교육을 의무 이수해야 함.
 - 미 이수 시, 보고서 제출이 불가하며 이는 협약 위반사항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재 조치 가능
 - ※ 이수 교육: “연구책임자를 위한 연구윤리”
 - ※ 문의처: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KIRD, www.kird.re.kr, 1588-5834)
- 집단과제는 공동연구원 포함하여 이수

□ 국내·외 파견연구 및 해외 체류 시 사전 승인

- 연구책임자가 6개월 이상 국내·외 파견연구 및 해외 체류를 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최소 1개월 전 주관연구기관을 통한 별도의 협약변경 신청 필요

2 확인사항

□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의무화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 수행 연구자는 연구 수행 이전까지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받아야 함.

* 인간대상연구란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정보로써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연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조)

- 각 소속기관(대학 등)에서 IRB에 관련 사항 확인하고, IRB 심의결과 제출·관리 등은 연구자와 주관연구기관(IRB 포함)에서 담당

※ 전문기관은 필요 시 주관연구기관을 통해 IRB 심의여부 결과(심의결과서 및 심의면제확인서 등) 관리 현황 등을 제출 받아 확인

- 소속기관 IRB 이용이 곤란할 경우,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의 공용 IRB에 확인

※ 문의처: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http://irb.or.kr>)

□ 질병관리본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인체유래물 이용 안내

- 질병관리본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으로부터 인체유래물*을 분양받아 연구에 이용하려는 연구자는 반드시 담당 부서(질병관리본부 생물자원은행과(분양대표전화 1661-9070))에 사전 확인 후 자원 활용이 가능한 과제에 한해 신청하기 바람

* 인체유래물 : 혈청, 혈장, 소변, 혈액유래 DNA, LCL, LCL유래 DNA 등

□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연구시설 및 수입 신고

- 유전자변형생물체(LMO)를 이용하는 연구자는 「유전자 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시설 설치·운영 신고 확인서 및 시험·연구용 LMO 수입신고 확인서를 갖추어야 함

※ 미신고 시설 운영 및 수입의 경우 벌칙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시험·연구용 LMO정보시스템(<https://www.lmosafety.or.kr/mps>) 확인

□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된 화합물 기탁 안내

- 연구개발과제로부터 도출된 논문, 특허, 연구시설·장비 등 연구성과 분야별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유통하기 위하여 장관이 별도로 지정한 기관에 등록하거나 기탁하여야 함

※ 화합물의 경우,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지정 고시에 따라 한국화학연구원(한국화학연구원 부설 화합물은행, 042-860-7190)에 기탁하여야 함.

3 논문 사사표기 안내

- 연구성과의 학술지 논문 게재 시, 해당 논문에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음과 과제번호를 다음과 같이 명시

<Acknowledgement 표기방법 :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 참고>

- 국문 : “이 논문은 0000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임(No. 한국연구재단에서 부여한 과제번호 : 연구사업통합시스템에서 확인)”
- 영문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Basic Science Research Program through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 fund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grant number)”

4 적용 법령

- 동 사업은 『학술진흥법』,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 규정』 등을 적용함.

□ 사업목적

- 대학의 순수 기초과학 연구역량 강화 및 연구거점 구축을 위해 기초과학분야 연구소(대학부설연구소)*를 자율운영 대학중점연구소로 지정·운영
 - * 한국연구재단 KCI홈페이지(www.kci.go.kr)에 자연과학으로 분류 및 수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지구과학 등 기초과학 분야, 해당분야를 기반으로 한 융합연구분야 가능
- (연구역량) 대학 중심의 기초과학분야 연구지원을 통하여 대학의 기초과학 연구역량 및 연구기획력 강화
- (인력양성) 기초과학분야 학문후속세대 및 젊은 과학자 양성

□ (자율운영중점연구소사업 트랙 시범) 추진방향

- 연구사업 운영 가능한 연구소 선정 연구소장의 책임 하에 소규모 씨앗형 연구과제를 연구소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 * 4개 연구소, 연 11억 내외, 3+3+3년간
- 원활한 운영을 위해 연구전담인력 인건비, 평가관리비 등 지원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비목별 계상기준 적용

□ 선정 및 운영

- (평가기준) 기초과학분야 연구소의 자율운영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평가기준 등을 마련하여 선정
 - ※ 기초과학분야 대학부설연구소의 연구기반구축, 연구소장의 사업관리 및 연구행정 능력, 대학내 세부과제 선정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연구인력 구성) 기존 대학중점연구소(연구소의 구성원들만 과제에 참여)와 달리 기초과학분야를 연구하는 교내 연구자는 모두 참여 가능
 - ※ 세부과제 및 연구원 구성은 연구책임자(연구소장)이 자율적으로 구성 가능
- (과제 운영) 자율운영 대학중점연구소가 선정되면, 연구소장은 세부과제* 연구 책임자를 선정**
 - * 연구과제 당 5천만원 이내로 최소 5개 과제 이상 구성해야 함
 - ** 세부과제 선정을 위해서는 연구소 내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세부과제 선정 시 연구재단에 RB 및 평가의원 풀 등 요청할 시 협조

별첨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 선정 현황

● 종료연구소 (※다음의 종료연구소는 신규 신청이 불가함)

최초선정	주관기관	연구소명	최초선정	주관기관	연구소명
1999	가톨릭대학교	조혈모세포이식센터	2002	조선대학교	에너지자원신기술연구소
	강원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		포항공과대학교	고분자연구소
	건국대학교	동물자원공동연구소		한국해양대학교	바이오토텍연구소
	경상대학교	한국건강영양연구소		한양대학교	해양과학기술연구소
	경희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			자원과학연구소
	공주대학교	산학협력기술연구원	2004	건국대학교	생명/분자정보학센터
	부산대학교	과학교육연구소			인공근육연구소
	부산대학교	유전공학연구소		경상대학교	건강과학연구원
	서울대학교	반도체공동연구소		고려대학교	나노과학연구소
	성균관대학교	고분자기술연구소		동아대학교	의과학연구원
		생명공학연구소		부산대학교	유전체물성연구소
	순천향대학교	현암신장연구소		서울대학교	농업생물신소재연구소
	아주대학교	의과학연구소			수의과학연구소
	연세대학교	자연과학연구소		성균관대학교	고분자기술연구소
	영남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		송실대학교	정보미디어기술연구소
		생명공학연구소		연세대학교	생명과학기술연구원
	인하대학교	기계기술공동연구소		원광대학교	의약자원연구소
		소재연구소		이화여자대학교	나노바이오연구소
	전남대학교	생물공학연구소		전남대학교	호르몬연구소
		의과학연구소		전북대학교	생리활성물질연구소
	전북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		창원대학교	산업기술연구원
		반도체물성연구소		한양대학교	디스플레이공학연구소
	중앙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2005	경상대학교	항공기부품기술연구소
	창원대학교	유전공학연구소		덕성여자대학교	식물자원연구소
	충북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		서울대학교	유전공학연구소
		약품자원개발연구소		성균관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
	홍익대학교	과학기술연구소		연세대학교	구강종양연구소
2000	경북대학교	농업과학기술연구소		전북대학교	반도체물성연구소
		유전공학연구소		충북대학교	동물의학연구소
	경상대학교	공학연구원		포항공과대학교	정보신소재연구소
	경희대학교	동서의학연구소		한국과학기술원	응용과학연구소
	부산대학교	유전체물성연구소	2007	서울대학교	정밀기계설계공동연구소
	세종대학교	우주항공연구소		아주대학교	나노정보융합기술연구소
	전남대학교	공업기술연구소		울산대학교	생의과학연구소
	전북대학교	심혈관연구소		전남대학교	축매연구소
	창원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		제주대학교	아열대유행산업연구소
	충남대학교	생물공학연구소		창원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
	경희대학교	자연과학종합연구원		포항공과대학교	포항수학연구소
	송실대학교	분자설계연구소		한림대학교	천연의약연구소
2001	연세대학교	신에너지/환경시스템연구소	2009	건국대학교	생명/분자정보학센터
	이화여자대학교	약학연구소		경북대학교	차세대에너지기술연구소
	충남대학교	공과대신소재연구소		국민대학교	신소재성형기술연구소
	한국해양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		단국대학교(천안)	조직재생공학연구소
2002	가톨릭대학교	의과학연구원		명지대학교	에너지환경 융합기술 연구소
	경북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		서강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
	계명대학교	신장연구소		서울대학교	암연구소
	부경대학교	사료영양연구소		아주대학교	분자과학기술연구소
	서강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		연세대학교	나노과학기술연구소
		산업기술연구소		울산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
	서울대학교	해양시스템공학연구소		이화여자대학교	수리과학연구소
	숙명여자대학교	자연과학연구소		중앙대학교	신기능이미징연구소
	영남대학교	약품개발연구소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양돈과학기술센터
	울산대학교	신경생화학연구소		차의과학대학교	기초의학연구소
	인하대학교	생물산업기술연구소		충남대학교	의약품개발연구소
	전북대학교	광전자정보기술연구소		한림대학교	생명공학연구소

● 중단연구소 (※다음의 중단연구소는 신규 신청이 불가함)

최초선정	소속대학	연구소명	분야(6T)	비고
2009	공주대학교	그린홈에너지기술연구소	에너지소재(ET)	
2009	목포대학교	정보산업연구소	정보통신(IT)	

● 진행연구소 (2018.12.기준)

연번	최초선정	소속대학	연구소명	비고
1	2010	경북대학교	기계연구소	
2	2010	고려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	
3	2010	성균관대학교	컨버전스연구소	
4	2010	세종대학교	그래핀연구소	
5	2010	인제대학교	심혈관 및 대사질환센터	
6	2010	인하대학교	정보전자공동연구소	
7	2010	전남대학교	바이오에너지연구소	
8	2010	제주대학교	원자력과학기술연구소	
9	2012	부경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	
10	2012	한양대학교	나노과학기술연구소	
11	2014	고려대학교	광전자신소재연구소	
12	2014	순천대학교	차세대IT-융합소재 연구소	
13	2014	영남대학교	청정기술연구소	
14	2014	울산대학교	메타염증연구센터	
15	2014	충남대학교	의학연구소	
16	2015	원광대학교	인수공통감염병연구센터	
17	2015	순천향대학교(천안)	조직재생연구소	
18	2015	홍익대학교	메타물질전자소재연구센터	
19	2015	경상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	
20	2016	동국대학교	양자기능 반도체 연구센터	
21	2016	한양대학교	산업과학연구소	
22	2016	제주대학교	아열대열대생물유전자은행센터	
23	2016	전주대학교	탄소연구소	
24	2016	덕성여자대학교	덕성 혁신신약센터	
25	2016	전남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	
26	2016	경북대학교	울릉도·독도연구소	
27	2016	계명대학교	약학연구소	
28	2016	동아대학교	건설기술연구소	
29	2016	군산대학교	풍력기술연구센터	
30	2016	가톨릭대학교(성의교정)	시과학연구소	
31	2016	서강대학교	바이오융합기술연구소	
32	2017	성균관대학교(자연과학캠퍼스)	생체분자제어연구소	
33	2017	전북대학교	유전공학연구소	
34	2017	건양대학교	명곡의과학연구소	
35	2017	한국산업기술대학교	3D 바이오-프린팅 연구소	
36	2017	조선대학교	IT연구소	
37	2017	인천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	
38	2017	연세대학교	지구시스템과학연구소	

연번	최초선정	소속대학	연구소명	비고
39	2018	연세대학교	기후변화 적응형 사회기반시설 연구센터	
40	2018	이화여자대학교	기후/환경변화예측연구센터	
41	2018	울산과학기술원	세포간 신호교신에 의한 암제어 연구센터	
42	2018	경희대학교	경희대학교 의과학 연구소	
43	2018	금오공과대학교	ICT융합특성화연구센터	
44	2018	전남대학교	광전자융합기술연구소	
45	2018	금오공과대학교	신소재연구소	
46	2018	강원대학교	강원대학교 산림과학연구소	
47	2018	건양대학교	공공안전연구소	
48	2018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첨단기술연구소	
49	2018	인하대학교	의과학연구소	
50	2018	대전대학교	대전대학교 동서생명과학연구원	
51	2018	중앙대학교	생명환경연구원	
52	2018	한밭대학교	인쇄전자3D프린팅공학연구소	
53	2018	경희대학교(국제캠퍼스)	웨어러블융합전자연구소	
54	2018	연세대학교	생명시스템연구원	
55	2018	이화여자대학교	신재생에너지연구센터	
56	2018	광운대학교	나노 소자 응용 연구소	
57	2018	경북대학교	경북대학교 자율군집소프트웨어연구센터	
58	2018	가톨릭대학교	종합약학연구소	
59	2018	경북대학교	환경과학기술연구소	
60	2018	전남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	
61	2018	한양대학교(ERICA캠퍼스)	나노센서 연구소	
62	2018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종합약학연구소	
63	2018	서강대학교	바이오계면연구소	
64	2018	안동대학교	농업과학기술연구소	
65	2018	강릉원주대학교	동해안생명과학연구소	
66	2018	창원대학교	신소재 연구센터	
67	2018	한국교통대학교	화학산업연구소	
68	2018	단국대학교	단국대학교 부설 리모델링연구소	
69	2018	경북대학교	경북대학교 고에너지물리연구소	
70	2018	서울시립대학교	자연과학연구소	

3-1. 학문후속세대지원

- 박사과정생연구장려금 -

2019 이공분야 학문후속세대지원사업

[박사과정생연구장려금] 신규과제 신청요강

2018. 12.

교육부 학술진흥과
한국연구재단 이공학술지원팀

문의절차 및 문의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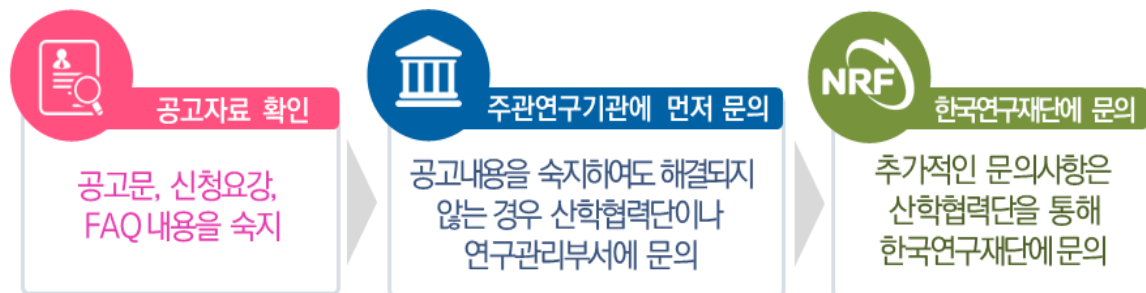
□ 문의 절차

“문의전화 폭주로 전화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공고자료(공고문* · 신청요강 · FAQ) 확인 후**
주관연구기관을 통하여 질의 요망”

* 재단 홈페이지 참조(사업안내>이공분야 기초연구사업>학문후속세대>공지사항 No296)

문의 전 확인 공고문, 신청요강, FAQ를 반드시 읽어보세요.

문의순서 (1차) 연구자 ➡ 주관연구기관에 문의
(2차) 주관연구기관 ➡ 한국연구재단에 문의



□ 한국연구재단 문의처

- 사업 관련 : 사업내용 · 지원조건 등
 - 한국연구재단 이공학술지원팀 ☎ (042) 869-6388, 6066, 6069, 6063
-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ernd) 업로드 및 오류 관련: 한국연구재단 연구상담센터 ☎ 1544-6118
- 평가 관련 : 선정평가 절차 · 방법 등
 -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본부 학문단 ☎ (042) 869-내선번호 4자리

자연과학단	생명과학단	의약학단	공학단	ICT·융합연구단
6522	6531	6053	6542	6565

신규과제 신청 시 필수 확인 사항

- ① 2019년 학문후속세대지원사업(박사과정생연구장려금) 신규과제 신청 기간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한 내에 신청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내 용
연구자 신청 기간	2019. 6. 10.(월) 09:00 ~ 2019. 6. 17.(월) 18:00:00
주관연구기관 승인	2019. 6. 10.(월) 09:00 ~ 2019. 6. 19.(수) 18:00:00
신청 절차	연구자 접수 ▷ 주관연구기관 승인 ▷ 신청 완료

※ 신청마감일에는 온라인 접속이 폭주하므로 마감일 1~2일간 전까지 온라인신청 완료 권장

- ② ‘온라인신청매뉴얼’은 신청 1주일 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될 예정 이므로,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③ 신규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은 반드시 연구계획서 작성 전에 한국연구자정보시스템(KRI)에 필수입력사항을 모두 기입하여 주시고, 기 입력된 정보는 최신정보로 수정(업데이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비 시 연구계획서 신청이 완료되지 않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한국연구자정보(KRI, <http://www.kri.go.kr>) 필수항목 입력 안내

※ 세부 내용은 추후 ‘온라인 신청 매뉴얼’ 참조 (KRI 정보등록 관련 문의처 ☎ 1544-6118)

○ 온라인신청 전 KRI에 필수항목 입력여부 확인 및 본인의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함

○ 신청자 소속대학이 연구재단과 정보공유 협정체결을 맺은 기관인 경우, KRI에서 본인의 업적 직접수정이 불가함. 이 경우 소속대학의 관련 부서로 연락

☞ 협정체결기관보기 : KRI 홈 > 사업소개 > 협정체결기관



CONTENTS

I. 사업 개요

- 1. 사업목적 91
- 2. 신규 선정과제 개요 91
- 3. 추진일정 91

II. 신규과제 신청

- 1. 신청 및 참여 자격 92
- 2. 신청 및 참여 제한사항 92
- 3. 신청기간 93
-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94

III. 선정절차 및 평가

- 1. 선정절차 95
- 2. 평가항목 95
- 3. 중복성 검토 95
- 4. 가점 제도 운영 95

IV. 연구비 지급 · 관리

- 1. 연구비 지급 96
- 2. 연구비 사용 및 관리 96
- 3. 연구비 정산 97

V. 향후 관리사항

- 1. 계속과제 · 종료과제 의무사항 98
- 2. 지원 중단과제 관리 강화 98
- 3. 종료과제 및 성과관리 99

VI. 기타사항 100

【별첨 1】 FAQ (자주 묻는 질문) 103

I 사업 개요

1 사업목적

□ 사업목적

- 박사과정생(수료생 포함)의 논문 주제와 관련된 창의적·도전적 아이디어를 학생이 주도적·독립적으로 연구하도록 지원
- 글로벌박사양성, 학문후속세대지원 등 사업수혜의 사각지대에 있는 박사과정 수료생까지 지원하여 촘촘한 연구지원 체계 확립

2 신규 선정과제 개요

구 분	박사과정생연구장려금지원
사업 유형	개인연구(연구장려금지원)
선정 방식	자유공모
지원 분야	이공계 과학기술 쏠분야
지원 대상	국내 대학원 박사과정에 전업(Full-time) 학생으로 재학 중인 자(수료생 포함)
연구기관	대학원이 설치되어 있는 국내 대학교
지원기간	2년(1+1)
연구개시일	9.1.
지원연구비	1인당 20백만원/연 ※ 간접비 없음
지원예산 및 선정과제수	30억, 150과제 내외 ※ 지역대학(DGIST, GIST, KAIST, POSTECH, UNIST 제외)에 전체 과제수의 30%이상 배분

3 추진일정

일 정	추진내용
'18. 12월 말	■ 2019년 신규과제 신청 공고
'19. 6월	■ 신규과제 접수
'19. 6월~8월	■ 신규과제 선정평가
'19. 8월 말	■ 최종선정, 협약체결 및 연구비 지급
'19. 9월	■ 연구 개시('19.9.1)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향후 변동될 수 있음

Ⅱ 신규과제 신청

1 신청 및 참여 자격

※ 신청자는 신청 자격 및 실적 요건 등 모든 자격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함.
그렇지 않은 경우, 요건 심사 탈락 조치 및 평가 대상 과제에서 제외함.

□ 지원자격

박사과정생	1) (신청마감일 기준) 국내 대학원 박사과정에 전업(Full-time) 학생으로서 재학 중인 자* ※ (신청마감일 기준) 휴학생도 신청은 가능하나, 연수개시일부터 복학하여야 함. 2) (연수개시일 기준) 입학일로부터 최소 1년(2학기) 이상 경과한 자 3) 연수 개시 이후부터 최소 1년(2학기) 이상 재학 예정인 자
석·박사 통합과정생	1) (신청마감일 기준) 국내 대학원 석·박사통합과정에 전업(Full-time) 학생으로서 재학 중인 자* 2) (연수개시일 기준) 입학일로부터 최소 2년(4학기) 이상 경과한 자 3) 연수 개시 이후부터 최소 1년(2학기) 이상 재학 예정인 자
박사과정 (석·박사통합) 수료생	1) 박사과정수료 후 수료후연구생 또는 박사수료생으로 연구등록되어 있는 자 (단, 수료후 4년 이내인자) 2) 개시일 기준 박사수료생 등록 예정인자

* (신청 마감일 기준) 수료생 또는 휴학생 신청 가능(단, 휴학생의 경우 연수개시일부터 복학하여야 함)

2 신청 및 참여 제한사항

※ 신청자는 신청 자격 및 실적 요건 등 모든 자격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함.
그렇지 않은 경우, 요건 심사 탈락 조치 및 평가 대상 과제에서 제외함.

□ 신청 제한

- (연수개시일 기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연구장학금*을 지급받는 경우 신청 제한
 - * 글로벌박사양성사업, BK21사업 포함 국내/외 연구·학술활동비 또는 생활비 등을 지원하는 장학금(단, 등록금(학비)만을 지원하는 장학금은 예외)
 -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참여에 따른 인건비 수혜는 해당사항 없음
- 4대 보험에 가입된 상태(휴직자 포함)인 자는 신청 제한

- 연수기간과 전문연구요원(병역특례자) 기간이 중복되는 자는 신청 제한
- 외국인 및 외국 국적 소지자(이중국적자 포함) 신청 제한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의해 제재 조치를 받고 있는 자는 신청 제한

- ※ 참여제한 조치가 연구자 신청마감일 전날까지 종료되는 경우 신청 및 참여 가능
- ※ 참여제한 사유가 있으나 아직 참여제한 조치를 실제로 받지 않은 연구자는 신청은 가능하나, 과제 선정 및 연구 개시 후 참여제한 조치가 발생하는 경우 과제 선정 당면 취소

□ 교육부·과기정통부 기초연구사업 1인1과제 수행 제한

- 교육부·과기정통부 이공분야 개인연구 과제를 수행 중인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은 신청 및 수행 불가

☞ 교육부·과기정통부 이공분야 개인연구사업

- 리더연구, 중견연구, 신진연구(신진/생애첫연구), 전략과제, 기본연구(이상 과기부), 학문후속세대지원(박사과정생연구장려금지원금, 박사후국내외연수/대통령Post-Doc./리서치펠로우), 학문균형발전지원(창의도전연구지원/보호연구/지역대학우수과학자), 개인기초연구(기본연구, 한국형SGER)

☞ 1인1과제 수행제한 예외조건

- 수행중인 과제가 신청하는 신규과제 연구개시일('19.6.1)로부터 10개월 이내 종료하는 경우(~'20.3.31) 신청 가능
 - ※ 단, 신진연구(생애첫연구 포함), 중견연구 선정과제는 과제 평가대상에서 제외
- '15년까지 선정된 공동연구원인 경우 신청 가능
- X-프로젝트는 추가로 신청 및 수행 가능

3 신청기간 : 2019. 6. 10.(월) 09:00 ~ 2019. 6. 17.(월) 18:00:00

<신청 관련 주의사항>

- ▶ 연구책임자는 ① 연구자 신청 마감시각 전까지 반드시 “신청 완료”처리 하여야 함.
- ▶ ② 주관기관 승인 기간 내에 “주관기관 승인”까지 모두 완료되어야 최종 접수과제로 인정함.
 - 따라서, 신청자는 주관기관 승인 여부를 최종 확인 바람. (주관기관 문의)
- ▶ 신청자와 주관연구기관은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예상되는 신청 폭주를 감안하여 사전에 신청 및 승인절차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람.
 - 해당 기간 내에 신청 및 승인 완료되지 않을 경우, 별도 구제절차는 진행되지 않을 예정임.

□ 연구자 신청 : 2019. 6. 10.(월) 09:00 ~ 2019. 6. 17.(월) 18:00:00

□ 주관연구기관 검토·승인 : 2019. 6. 10.(월) 09:00 ~ 2019. 6. 19.(수) 18:00:00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e-R&D, <http://ernd.nrf.re.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별도 오프라인 제출 서류 없음)

□ 신청절차 : KRI 갱신 ➡ 연구자 신청 ➡ 주관연구기관 승인 ➡ 신청완료

사전절차	한국연구자정보(KRI) 정보 업데이트
신청	온라인 신청정보 입력, 제출서류 업로드(e-R&D)
승인	주관연구기관 검토 · 승인(e-R&D) ➡ 연구과제 신청 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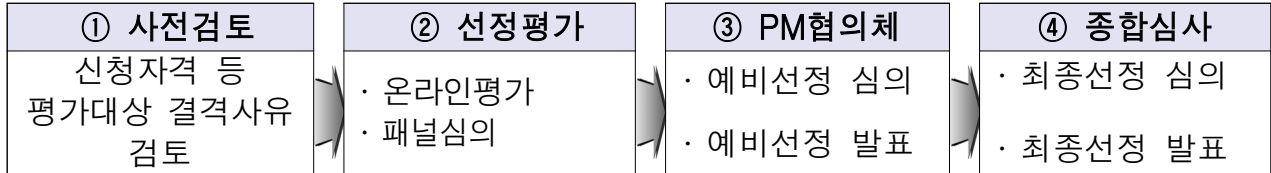
※ 신청 완료 후에는 수정이 불가하므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준수 요망

□ 제출서류

항목	비고
① 연구계획서	- 분량 5페이지 이내 ※ 제시된 작성분량을 위반할 경우 연구계획서 평가 시 초과분량에 대한 평가 미 실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② 대표연구실적 요약문 및 사본	- 본인의 대표연구실적에 대해 최대 5편 이내에서 작성 ※ 실적에 대한 별도 조건 없음
③ 연구자 및 연구지도교수 확약서	- 최소 1년(2학기) 이상 재학 여부에 대한 연구자 및 연구지도교수의 확약서 작성 ※ 박사과정 대학의 지도교수를 통하여 작성
④ 재학증명서 (수료생등록확인서)	- 최초 입학일자가 기재되어 있는 재학증명서 제출 - 수료생의 경우, 수료후연구생 또는 박사수료생으로 등록 확인서 제출
⑤ 4대보험가입확인서	- 취업 여부 확인
⑥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서	- 작성 후 스캔하여 온라인 제출(원본 제출 불필요)

Ⅲ 선정절차 및 평가

1 선정절차



2 평가항목

평가 항목	평가 지표	평가 내용
신청자 역량	주도적·독립적 연구수행 능력	○ 신청자의 연구경력, 연구실적 및 학술활동 참여 실적은 우수한가? ○ 제안한 연구를 주도적·독립적으로 수행할 충분한 열정과 동기를 소유하고 있는가?
	연구목표 수행 능력	○ 신청자의 전공, 경력이 연구계획을 수행하는 데 적합한가? ○ 연구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갖고 있는가?
학업·연구목표의 창의성·도전성	학업·연구목표의 창의성	○ 연구주제가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인가? ○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가?
	학업·연구목표의 도전성	○ 연구방법에 새로운 자료수집 방법, 분석기법 등을 도입하여 도전적인가?
학업·연구계획의 적합성	학업·연구계획의 적절성 및 타당성	○ 학업·연구계획의 내용과 연구목적이 적절한가? ○ 학업·연구계획의 추진방법, 추진체계 등이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 당초 계획한 학업·연구계획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때를 대비한 계획 등은 수립되어 있는가?
기대효과	신청자의 발전 가능성	○ 연구수행을 통해 신청자가 향후 우수 연구자로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가?

※ 세부 평가항목/배점 및 세부 절차 등은 별도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3 중복성 검토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www.ntis.go.kr) 및 전문가 의뢰를 통해 신청과제에 대한 중복성 검토

※ 관련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3항 제3호 및 제7조 제11항

4 가점 제도 운영

- 교육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선정(한국연구재단 포함)한 대표 우수연구 성과자가 과제신청시 선정평가 점수의 3%를 가점으로 부여

※ 우수성과 선정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며, 해당 성과로 인한 가점신청은 1회만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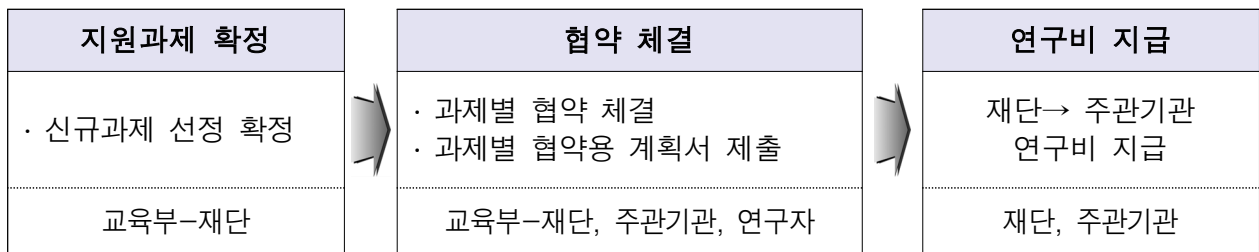
IV 연구비 지급 · 관리

1 연구비 지급

□ 지원 내역

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	1인당 연 2천만원 (연구장려금* 2천만원) * 인건비성 경비로써 연수자에 대한 소속기관 보험 부담금 및 퇴직금 포함 * 연구·학술활동비 형태로 집행가능 ※ 간접비 없음
----------------	--

□ 지급절차 및 방법



-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하 재단), 재단과 주관연구기관(소속기관)간 협약에 의거 재단이 **주관연구기관에 연구비를 지급**

- 수정 연구계획서(협약용) 접수 및 협약체결 후 지급

※ 수정 연구계획서(협약용) 제출: 신규 선정과제 통보 및 계속과제 지원 결정 통보 이후 결정 총연구비(직접비+간접비)에 대해 당해연도 연구비 조정내역 등을 반영한 협약용 수정 연구 계획서 제출

2 연구비 사용 및 관리

- 연구비 집행과 관리 시 연구책임자와 주관연구기관(소속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등 제반 관련 규정에 의한 연구비 비목별 계상 기준과 협약용 연구계획서 사항 등을 준수해야 함.
- 주관연구기관(소속기관)의 장은 연구비 집행 및 회계관리(증빙 등)를 철저히 하여야 함.

- 연구비 유용 등 연구책임자가 연구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황 발생 시 주관연구기관(소속기관)의 장은 즉시 재단에 보고하여야 함.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주관연구책임자 포함)의 부적절한 연구비 관리·사용으로 인해 외부기관으로부터 조사, 감사, 자료요구 등의 사안이 발생한 경우 한국연구재단에 즉시 보고 요망(관련: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4조 제5항)

3 연구비 정산

□ 정산 시기 및 방법

- 연구 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주관연구기관 연구비 중앙관리 부서에서 연수비 집행정산내역을 온라인으로 입력 및 제출
-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 활용
 - ※ 박사과정생연구장려금지원은 연구비카드를 발급하지 않으며, 이지바로(Ezbaro)시스템 적용 대상 사업이 아님.
 - 연구비카드가 발급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전문기관과 사전 협의

1 계속과제 · 종료과제 의무사항

□ 연차실적계획서 제출

- 제출 시기 및 방법: 당해연도 종료 2개월 전까지 온라인 제출
 - 제출 내용: 2차년도 연구기간에 대한 협약체결 및 협약용계획서 제출
 - 당해연도 연수과제의 수행실적 및 차년도 연수과제의 수행 계획
- ※ 연구 · 학술활동비 형태로 집행내역 포함하여 제출

□ 연수 수행 중 의무사항

- 취업상태¹⁾ 금지 및 전업(Full-time) 학생²⁾ 자격 유지
 - 1) 4대 보험에 가입된 상태(휴직자 포함)
 - 2) 선정 후 취업 활동(4대 보험 지원을 받는 취업) 금지
- 선정 후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연구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
- 연수 수행 중 전문연구요원(병역특례자)으로 복무 불가

□ 연수 수행 중 타 과제 추가 참여

- 연수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정에 따라 제한없이 참여 가능

□ 연수계획 변경

- 선정 후에는 연수기간(연수개시일 및 종료일 포함)의 변경을 불허함
 - 연수기관은 전공분야 및 지도교수가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재단 검토 후 변경 가능
- 6개월 이상의 국내/외 파견 및 해외 체류를 불허함

2 지원 중단과제 관리 강화

□ 연구 수행 포기

- 정당한 사유로 인한 연구 수행포기 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즉시 한국연구재단에 승인을 요청해야 함

- 연수 중단에 따른 지원금 잔액은 반납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정부연구과제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연구자의 책무성 제고를 위해 기지급된 연구비 일부를 환수

※ 연구과제 중도 포기에 대해서는 연구비 환수를 협약에 명시

※ 불성실 중단과제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함

- **연구윤리를 저해하였다고 판단되거나 기타 연구윤리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해당 연구책임자에 대하여 연구비 조정·집행중지, 협약 해약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3 종료과제 및 성과관리

□ 결과보고서 제출

- 연구 종료 후 결과평가는 실시하지 않고,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간략한 결과보고서(5쪽 이내) 제출

※ 결과보고서 제출 시 연구성과 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연구성과 소개서(간략한 성과개요 및 논문실적 등의 주요 성과) 의무 제출

※ 박사과정생연구장려금지원의 경우 박사학위 논문 제출 불필요

□ 연구성과 등록 의무

- 간략한 성과 개요 및 논문 실적 등 주요 성과를 온라인으로 등록

※ 연구성과 활용 촉진을 위해 연구성과소개서 의무 제출

- 연수 종료 후 5년까지 논문 게재, 특허 등록 등의 성과내용을 한국연구재단 성과관리시스템에 수시로 입력

□ 결과보고서 및 연구성과 미등록 시 제재 조치 사항

- 연구수행 기간 및 연구종료 후 5년 이내 연구성과 미등록 연구책임자의 경우 2년 이내 참여제한 조치

※ 관련근거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1항 제8호

※ '15년부터 협약 시 5년 이내 성과등록 의무화 조항 포함(신규 및 계속과제)

1 유의사항

□ 신청 시 KRI 연구자등록번호 사용

- 신규과제 신청자는 하나의 KRI 연구자등록번호만 사용하여야 함.
 - 여러 개의 KRI 연구자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다중 신청할 경우, 신청과제 전체를 무효처리할 예정임.

□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조치에 대한 안내

- 신규과제 신청 및 선정/협약이 완료된 이후라도 다음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 조치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관련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협약의 해약)

- 신청 시 부정확한 내용이나 허위 사실을 입력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신청자 (또는 선정자)가 연수 개시 전 전임 임용 또는 박사학위 취득 미완료 등으로 인해 지원 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타 사업 연구과제의 참여제한이 확정(연구비 용도와 사용)되어 기초연구사업 연구과제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
- 타 연구과제와의 표절, 중복 지원 여부 등이 확인되는 경우
- 기타 과제를 수행할 수 없는 제한 조건 또는 적용 법령에 따른 협약 해약 사유 등이 확인될 경우

□ 사이버연구윤리교육 이수 의무화

- 연구책임자는 협약서 상 연구 개시 3개월 이내에 사이버연구윤리교육을 의무 이수해야 함.
 - 미 이수 시, 보고서 제출이 불가하며 이는 협약 위반사항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재 조치 가능

※ 이수 교육: “연구책임자를 위한 연구윤리”

※ 문의처: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KIRD, www.kird.re.kr, 1588-5834)

2 확인사항

□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의무화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 수행 연구자는 연구계획서 제출 후 협약 체결 이전까지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받아야 함.

* 인간대상연구란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정보로써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연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조)

- 각 소속기관(대학 등)에서 IRB에 관련 사항 확인하고, IRB 심의결과 제출·관리 등은 연구자와 주관연구기관(IRB 포함)에서 담당
 - ※ 전문기관은 필요 시 주관연구기관을 통해 IRB 심의여부 결과(심의결과서 및 심의면제확인서 등) 관리 현황 등을 제출 받아 확인
- 소속기관 IRB 이용이 곤란할 경우,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의 공용 IRB에 확인
 - ※ 문의처: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https://www.nibp.kr>)

□ 질병관리본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인체유래물 이용 안내

- 질병관리본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으로부터 인체유래물*을 분양받아 연구에 이용하려는 연구자는 반드시 담당 부서(질병관리본부 생물자원은행과(분양대표전화 1661-9070))에 사전 확인 후 자원 활용이 가능한 과제에 한해 신청하기 바람

* 인체유래물 : 혈청, 혈장, 소변, 혈액유래 DNA, LCL, LCL유래 DNA 등

□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연구시설 및 수입 신고

- 유전자변형생물체(LMO)를 이용하는 연구자는 「유전자 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시설 설치·운영 신고 확인서 및 시험·연구용 LMO 수입신고 확인서를 갖추어야 함
 - ※ 미신고 시설 운영 및 수입의 경우 벌칙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 시험·연구용 LMO정보시스템(<https://www.lmosafety.or.kr/mps>) 확인

□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된 화합물 기탁 안내

- 연구개발과제로부터 도출된 논문, 특허, 연구시설·장비 등 연구성과 분야별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유통하기 위하여 장관이 별도로 지정한 기관에 등록하거나 기탁하여야 함

※ 화합물의 경우,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지정 고시에 따라 한국화학연구원(한국화학연구원 부설 화합물은행, 042-860-7190)에 기탁하여야 함.

3 논문 사사표기 안내

- 연구성과의 학술지 논문 게재 시, 해당 논문에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음과 과제번호를 다음과 같이 명시

<Acknowledgement 표기방법 :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 참고>

- 국문 : “이 논문은 0000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임(No. 한국연구재단에서 부여한 과제번호 : 연구사업통합시스템에서 확인)”
- 영문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Basic Science Research Program through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 fund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grant number)”

4 적용 법령

- 동 사업은 『학술진흥법』,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 규정』 등을 적용함.

▶ 신청 자격사항

〈신청 자격〉

1. 이공학분야(이공계 과학기술 전 분야)에는 어떤 학문분야가 해당되나요?

- ▶ 연구자는 신규과제 신청 시 ‘학술연구분야분류’ 및 ‘전문위원(RB)분야분류’를 기준으로 평가 학문분야를 선택하게 됩니다.
- ▶ 따라서, 연구자는 신규과제 신청 전 재단 홈페이지에서 ‘기초연구본부 학문단별 전문위원(Review Board) 분야 분류표’ *를 확인하여 본인의 신청 과제와 가장 적합한 학문분야를 표에서 확인하고, 과제 신청 시 해당 학문분야를 정확하게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분야분류표 확인 방법: 재단 홈페이지(<http://www.nrf.re.kr>) → 사업 안내 → 사업자료실 → 연구분야분류표 → 전문위원(RB)분야분류

2. 박사과정을 수료한 연구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 ▶ 박사과정수료 후 수료후연구생 또는 박사수료생으로 (박사과정 수료한 대학에) 연구등록되어 있으며, 수료후 4년 이내인 연구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에 앞서 대학 연구관리 부서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또한, 개시일 기준으로 박사수료생으로 등록 예정인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3. 박사학위 취득예정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 ▶ 본 사업은 박사과정생(석박사과정생) 및 수료생을 위한 지원제도로 신청이 불가능하며, 박사학위 취득예정자는 학문후속세대지원(박사후국내외연수), 학문균형발전지원(창의도전) 과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4. 외국인 연구자의 신청이 가능한가요?

- ▶ 외국인 및 외국 국적 소지자(이중국적자 포함) 신청을 제한하고 있어 신청을 불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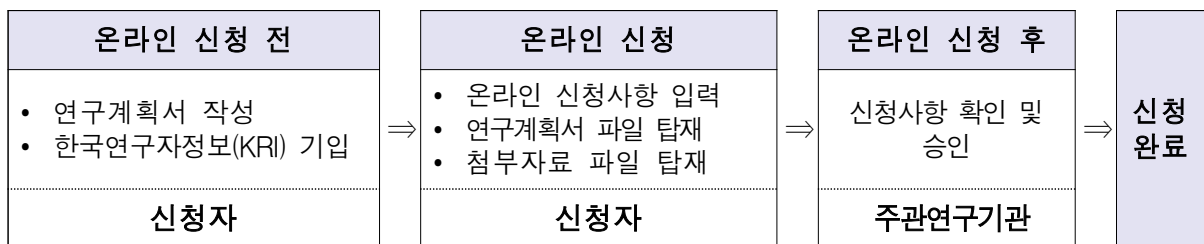
5. 학문후속세대지원(박사과정생연구장려금)은 3책5공의 적용을 받습니까?

- ▶ 3책5공이란,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 · 연구 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3책 5공)임을 뜻합니다. 이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8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전념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 단, 5천만원 이하 소액연구과제는 3책5공 예외가 적용되며, 본 과제의 연구비는 2천만원으로 **3책5공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신청 전 확인사항

6. 온라인 신청 시의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 ▶ 온라인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으므로 필히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연수계획서 작성 전에 반드시 한국연구자정보(KRI)에 개인정보를 갱신 또는 추가하여 개인인적정보를 모두 기입하여야 계획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7. 기존에 수행한 과제와 새로 신청하는 과제가 유사해도 되는지요?

지도교수가 수행하는 연구과제와 연수과제는 어떻게 달라야 합니까?

- ▶ 동 사업은 타 국가연구개발사업과 동일하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신청과제의 중복성을 판단하고 있으니 과제 신청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윤리에 관한 내용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중복 판단과 함께 연구 윤리 위배가 인정되는 과제에 있어서는 향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i)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와 연구목표, 연구방법 및 연구내용의 동일 또는 거의 유사한 경우, 중복 과제로 판단됩니다.
- ii) 지도교수의 수행 및 신청과제와 연수 신청 과제가 유사할 수는 있으나, 연수자가 독립된 주체로서 연구목표, 방법, 내용을 기술하여야 합니다. (특히, 지도교수 연구계획서의 내용을 그대로 복사하는 것은 표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iii) 학문후속세대양성사업의 기 수혜자가 동 사업 내 다른 세부사업으로 신청하는 경우, 기존 과제와 연구목표, 방법, 내용 등에서 차별성이 있어야 별도의 과제로 인정됩니다. (동일한 연수계획서로 재신청하는 경우는 자기 표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 신청 과제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antis.go.kr)를 통하여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와의 중복성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중복성이 있다고 판단된 과제는 선정과제에서 제외되므로 신청자께서는 위의 사항을 유의하시어 연구계획서 작성 시 선행 연구를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교육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선정한 대표 우수연구 성과는 어떤 성과를 말하나요?

- ▶ 가점으로 인정하는 대표 우수성과는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실시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우수성과 100선」과 (2)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교육부 학술연구지원사업 우수성과 50선」이 해당됩니다.
- ▶ 해당 우수성과에 대해서는 과제 신청 시 선정평가 점수의 3%를 가점으로 부여합니다. 또한, 가점 부여는 우수성과 선정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며, 해당 성과로 인한 가점 신청은 1회만 가능합니다.
- ▶ 따라서, 가점을 신청하는 연구자는 신규과제 신청 시 온라인 화면 상에 우수성과 과제 정보를 기입하여야 합니다.

3 신청 접수

9. 접수기간(연구자 신청 · 주관연구기관 승인)을 놓쳤을 경우 구제방법은 없습니까?

- ▶ 신청기간과 신청절차는 모든 연구자와 주관연구기관에게 공통적인 사항인 만큼, 해당 기한 내에 완료되지 않는 경우 구제방법은 없습니다. 주관연구기관 미승인과제의 경우, 승인기간 이후에 공문으로 추가 승인을 요청해도 접수될 수 없음을 유의하십시오.
- ▶ 또한, 접수시간은 18:00:00이므로 기한내에 접수가 완료 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3-2. 학문후속세대지원

- 박사후국내연수, 박사후국외연수 -

2019 이공분야 학문후속세대지원사업

[박사후국내연수, 박사후국외연수] 신규과제 신청요강

2018.12.

교육부 학술진흥과
한국연구재단 이공학술지원팀

문의절차 및 문의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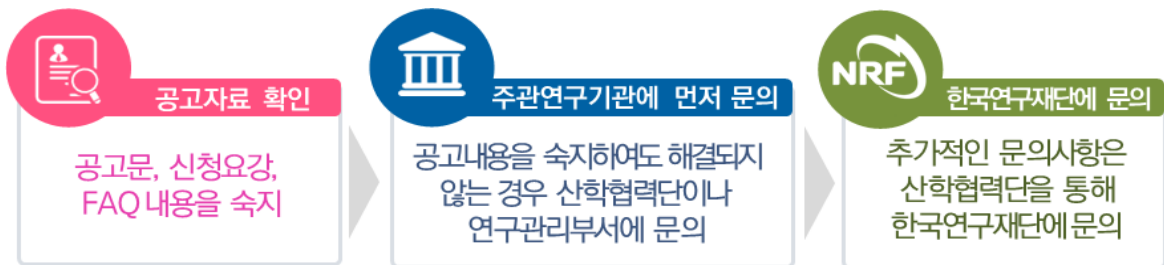
□ 문의 절차

“문의전화 폭주로 전화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공고자료(공고문* · 신청요강 · FAQ) 확인 후**
주관연구기관을 통하여 질의 요망”

*재단 홈페이지 참조 (사업 안내 > 이공분야 기초연구사업 > 학문 후속세대양성 > 공지사항)

문의 전 확인 공고문, 신청요강, FAQ를 반드시 읽어보세요.

문의순서 (1차) 연구자 ➡ 주관연구기관에 문의
(2차) 주관연구기관 ➡ 한국연구재단에 문의



□ 한국연구재단 문의처

- 사업 관련: 사업 내용, 지원 조건 등
 - 한국연구재단 이공학술지원팀 ☎ (042) 869-6388,6066,6069,6063
- 평가 관련: 선정평가 절차 · 방법 등
 -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본부 학문단 ☎ (042) 869-내선번호 4자리

자연과학단	생명과학단	의약학단	공학단	ICT · 융합연구단
6552	6535	6055	6542	6565

신규과제 신청 시 필수 확인 사항

- ① 2019년 이공분야 학문후속세대지원사업(박사후국내연수, 박사후국외연수) 신규과제 신청 기간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한 내에 신청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용
박사후 국외연수	연구자 신청 기간	2019. 2. 11.(월) 09:00 ~ 2019. 2. 18.(월) 18:00
	주관연구 기관 확인	2019. 2. 11.(월) 09:00 ~ 2019. 2. 20.(수) 18:00
박사후 국내연수	연구자 신청 기간	2019. 6. 10.(월) 09:00 ~ 2019. 6. 17.(월) 18:00
	주관연구 기관 확인	2019. 6. 10.(월) 09:00 ~ 2019. 6. 19.(수) 18:00
신청 절차		연구자 접수 ⇨ 주관연구기관 승인 ⇨ 신청 완료

※ 신청마감일에는 온라인 접속이 폭주하므로 마감일 1~2일간 전까지 온라인신청 완료 권장

- ② ‘온라인신청매뉴얼’은 신청 1주일 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될 예정이므로,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③ 신청자께서는 반드시 연구계획서 작성 전에 한국연구자정보시스템(KRI)에 필수입력사항을 모두 기입하여 주시고, 기입력된 정보는 최신 정보로 수정(업데이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비 시 신청이 완료되지 않음

<참고> 한국연구자정보(KRI, <http://www.kri.go.kr>) 필수항목 입력 안내

※ 세부 내용은 추후 ‘온라인 신청 매뉴얼’ 참조 (KRI 정보등록 관련 문의처 ☎ 1544-6118)

○ 온라인신청 전 KRI에 필수항목 입력여부 확인 및 본인의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함

○ 신청자 소속대학이 연구재단과 정보공유 협정체결을 맺은 기관인 경우, KRI에서 본인의 업적 직접 수정이 불가함. 이 경우 소속대학의 관련 부서로 연락

☞ 협정체결기관보기 : KRI 홈 > 사업소개 > 협정체결기관



2018년 대비 2019년 주요 변경사항

구 분	2018	2019
1. 지원예산 및 과제수	○국내연수: 17,507백만원(신규 344개, 계속 76개) ○국외연수: 4,400백만원(신규 110개)	○국내연수: 20,565백만원(신규 357개, 계속 100개) ○국외연수: 6,435백만원(신규 143개*) ※ 자유공모 106개, 지정공모(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 37개
2. 지원규모	○국내연수: 1인당 45백만원 (연수활동비 44백만원, 간접비 1백만원)) ○국외연수: 1인당 40백만원 (연수활동비 39백만원, 간접비 1백만원)	○국내연수: 좌동 ○국외연수: 1인당 45백만원 (연수활동비 44백만원, 간접비 1백만원)
3. 지원기간	○국내연수: 1년 / 2년(1+1) ○국외연수: 1년	○국내연수: 1년 / 2년(1+1) / 3년(1+1+1) ○국외연수: 좌동
4. 연수기관	○국내연수: 대학원이 설치되어 있는 국내 대학교, 국공립 연구기관 또는 민간연구소 ○국외연수: 해당 학문분야의 선진 지식이나 기술이 축적 되어 있는 세계적 수준의 연구기관	○국내연수: 좌동 ○국외연수: 좌동
5. 지원대상	○국내연수: 국내/외 대학에서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인 자 (2011.1.1.이후 취득) ○국외연수: 국내 대학에서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인 자 (2011.1.1.이후 취득)	○국내연수: 국내/외 대학에서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인 자 (2012.9.1.이후 취득) ○국외연수: 국내 대학에서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인 자 (2012.9.1.이후 취득)
6. 신청 실적 요건	○국내연수: 연구실적 1편 이상 ○국외연수: 연구실적 1편 이상	○국내연수: 제한 없음 ○국외연수: 제한 없음
7. 추진일정	○국내연수, 국외연수 - '17.12월 공고/'18.1월 신청/1~3월 평가,선정,협약 - 9월 1일 연수개시	○국내연수 - '18.12월 공고/'19.6월 신청/7~8월 평가,선정,협약 - 9월 1일 연수개시 ○국외연수 - '18.12월 공고/'19.2월 신청/3~4월 평가,선정/8월 협약 - 9월 1일 연수개시

CONTENTS

I. 사업 개요

1. 사업 목적	114
2. 지원 내용	114
3. 추진 일정	115

II. 신규과제 신청

1. 신청 및 참여 자격	116
2. 신청 및 참여 제한 사항	117
3. 신청 기간	119
4. 제출 서류	119
5. 신청 방법 및 절차	120

III. 신규과제 선정평가

1. 평가 절차 및 방법	121
2. 평가 항목	121
3. 중복성 검토	121
4. 가점 제도 운영	121

IV. 연수비 지급 · 관리

1. 연수비 지급	122
2. 연수비 사용 및 관리	122
3. 연수비 정산	123

V. 향후 관리사항

1. 계속과제 관리	124
2. 지원 중단과제 관리 강화	125
3. 종료과제 결과 보고 및 성과 관리	126

VI. 기타 사항

127

붙임 박사후국외연수 과제관리 사항 안내	130
-----------------------------	-----

FAQ 자주 묻는 질문	133
--------------------	-----

I 사업 개요

1 사업 목적

- 박사학위 취득 연구자에게 연구기관에서 연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연구 활동의 지속성 유지 및 연구의 질적 향상 유도

2 지원 내용

구분	박사후 국내연수	박사후 국외연수
사업 유형	개인(연수지원)	개인(연수지원)
선정 방식	자유공모	자유+지정공모
지원 분야	이공계 과학기술 쏠분야	(자유) 이공계 과학기술 쏠분야 (지정)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
지원 대상	국내·외 대학에서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인 자(2012.9.1.이후 취득)	국내 대학에서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인 자(2012.9.1.이후 취득)
연수기관	대학원이 설치되어 있는 국내 대학교, 국/공립 연구기관 또는 민간 연구소	해당 학문분야의 선진 지식이나 기술이 축적되어 있는 세계적 수준의 연구기관
지원기간	1년 / 2년(1+1) / 3년(1+1+1)	1년
연수개시일	9.1.	9.1.
지원연구비	1인당 45백만원/연 - 연수활동비* 44백만원, 간접비 1백만원 * 연수자에 대한 소속기관 보험부담금 및 퇴직금 포함	1인당 45백만원/연 - 연수활동비* 44백만원, 간접비 1백만원 * 연수에 소요되는 항공료, 국외체재비 등의 관련 경비 포함
'19년 신규 지원 규모	160억 6천5백만원, 357과제 내외* * 1년형: 179개 과제 내외, 2년(1+1)형: 107개 과제 내외, 3년(1+1+1)형: 71개 과제 내외 - 지역대학(DGIST, GIST, KAIST, POSTECH, UNIST 제외)에 전체 과제수의 50%이상 배분	64억 3천5백만원, 143과제 내외* * 자유: 106개 과제 내외, 지정: 37개 과제 내외 - 특정 연수국가에 전체 과제수의 50% 이상을 배분하지 않음. 단 지정공모의 경우 적용하지 않음

※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를 자유롭게 제시하되, 제시 분야와 제안한 연구와의 연관성 등을 연구계획서에 기재

(분야 예시) AI, Big Data, IoT, Cloud, Mobile, CPS, 로봇틱스, V2X, 지능형센서, 블록체인, AR/VR, 유전자 가위, 웨어러블, 신소재, 신재생 에너지, 3D 프린팅, 시뮬레이션, 의료기기, 제조공정, Smart factory, 인공생명체 등

※ 지원 최대기간으로 신청할 경우 연구비 및 연구기간

구분	지원 기간	연구비(백만원)			연구기간		
		'19년	'20년	'21년	'19년	'20년	'21년
박사후 국내연수	3년	45	45	45	'19.9.1~'20.8.31 (12개월)	'20.9.1~'21.8.31 (12개월)	'21.9.1~'22.8.31 (12개월)
박사후 국외연수	1년	45	-	-	'19.9.1~'20.8.31 (12개월)	-	-

3 추진 일정

구분	박사후국내연수	박사후국외연수
'18. 12월	2019년 신규과제 공고	2019년 신규과제 공고
'19. 2월	-	국외연수 신규과제 신청/접수
3월	-	국외연수 선정평가
4월	-	국외연수 예비선정
6월	국내연수 신규과제 신청/접수	-
7월	국내연수 선정평가	-
8월	예비/최종선정, 협약 체결 및 연수비 지급	최종선정, 협약 체결 및 연수비 지급
9월	연수 개시(9.1.)	연수 개시(9.1.)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향후 변동될 수 있음

Ⅱ 신규과제 신청

1 신청 및 참여 자격

※ 신청자는 신청 자격 및 실적 요건 등 모든 자격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함
그렇지 않은 경우, 요건 심사 탈락 조치 및 평가 대상 과제에서 제외함

□ 신청 자격

- (국내연수) 국내·외 대학에서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인 자 (2012.9.1. 이후 취득)
(국외연수) 국내 대학에서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인 자 (2012.9.1. 이후 취득)
 - 박사학위 취득 후 3년 이내인 자는 우대 (2016.9.1. 이후 취득)
 - 연수개시일(2019.9.1.) 이전 박사학위 취득 예정자 신청 가능
 - ※ 연수개시일 이전에 박사학위 취득 미완료 시 선정 제외
- 취업자와 미취업자 모두 신청이 가능하나,
 - 취업자는 연수 개시 전에 퇴직을 하는 등 연수 개시에 문제가 없어야 함 (휴직은 불가)
 - 대학 전임교수·국공립 연구기관 및 민간연구소 전임연구원은 신청 불가

□ 연수기관 및 주관기관

구분	박사후 국내연수	박사후 국외연수
연수 기관	대학원이 설치되어 있는 국내 대학교, 국·공립 연구기관 또는 민간연구소 ※ 박사학위 취득기관과 동일하여도 무방함	해당 학문분야의 선진 지식이나 기술이 축적되어 있는 세계적 수준의 연구기관
주관 기관	연수기관과 동일하며, 연구비 중앙 관리가 가능한 국내기관	연수자의 국내 박사학위 취득기관으로, 연구비 중앙관리가 가능한 국내기관

※ 연수자는 반드시 과제 신청 전 (각 기관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연수 종료일 까지) 과제 수행 가능 여부 및 연구비 중앙관리 가능 여부 등을 확정하여, 이후 과제 수행 및 연수비 수혜 전반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함 (연수 개시 후 3분의 2 이전까지 주관기관 변경 불가)

□ 연수 지도교수

- 신청자의 연수지도교수는 연수기간동안 지도교수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함(연구소의 경우 선임연구원, 연구소장 등)
 - ※ 박사학위 지도교수와 동일하여도 무방함
 - ※ 전임/비전임 여부와 관계없으나 연수 종료 시까지 소속과 신분이 보장된 자이어야 함

2 신청 및 참여 제한 사항

※ 신청자가 신청 및 참여 제한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요건 심사 탈락 조치함
또한, 선정 이후라도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 조치함

□ 신청 제한

- (연수개시일 기준) 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책임자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자는 신청 제한

※ 신청 마감일 기준 타 사업의 연구책임자로 연구를 수행 중이더라도 신청은 가능하나 연수개시일 전날(2019.8.31.)까지 과제가 최종 종료되어야 함

- 연수기간과 전문연구요원(병역특례자) 기간이 중복되는 자는 신청 제한
- 외국인 및 외국 국적 소지자(이중국적자 포함) 신청 제한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의해 제재 조치를 받고 있는 자는 신청 제한

※ 참여제한 조치가 연구자 신청마감일 전날까지 종료되는 경우 신청 및 참여 가능

※ 참여제한 사유가 있으나 아직 참여제한 조치를 실제로 받지 않은 연구자는 신청은 가능하나, 과제 선정 및 연구 개시 후 참여제한 조치가 발생하는 경우 과제 선정 취소

<2019년 기초연구사업 공통기준 적용 사항>

- 개인연구 중 상반기 1·3차 학문후속세대지원(박사과정생장려금, 박사후국내·외연수) 중 1과제 신청가능하며, 상반기 2차 학문균형발전지원(창의도전, 보호연구, 지역대학우수과학자) 및 과기부(기본연구) 사업 중 1개 신청 가능하되, 1개 과제만 선정

※ 단, 상반기 1차 신청과제에서 선정 시 2차 신청 불가(상반기 2차 접수마감 이후 1차 선정 시 2차 평가에서 자동 제외)

□ 유의사항

- 각 세부사업별 기 수혜자는 동일 세부사업 신청 불가

(예시) 2015년 박사후국내연수 수혜자는 2019년 국내연수 신규과제 신청 불가,
2019년 국외연수 신규과제 신청 가능

- 2019년도 박사후국내연수, 박사후국외연수(자유, 지정) 신규과제 내에서는 1과제만 신청 가능

(예시) 2019년 박사후국외연수 신규과제 신청자가 국내연수 신규과제 신청 불가,
2019년 박사후국외연수 자유공모 신청자가 지정공모 신청 불가

3 신청 기간

<신청 관련 주의사항>

- ▶ 연구책임자는 ① 연구자 신청 마감시각 전까지 반드시 “신청 완료”처리 하여야 함
- ▶ ② 주관기관 승인 기간 내에 “주관기관 승인”까지 모두 완료되어야 최종 접수과제로 인정함
 - 따라서, 신청자는 주관기관 승인 여부를 최종 확인 바람 (주관기관 문의)
- ▶ 신청자와 주관연구기관은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예상되는 신청 폭주를 감안하여 사전에 신청 및 승인절차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람
 - 해당 기간 내에 신청 및 승인 완료되지 않을 경우, 별도 구제절차는 진행되지 않음

□ 신청 기간

구분		내용
박사후 국외연수	연구자 신청 기간	2019. 2. 11.(월) 09:00 ~ 2019. 2. 18.(월) 18:00
	주관연구 기관 확인	2019. 2. 11.(월) 09:00 ~ 2019. 2. 20.(수) 18:00
박사후 국내연수	연구자 신청 기간	2019. 6. 10.(월) 09:00 ~ 2019. 6. 17.(월) 18:00
	주관연구 기관 확인	2019. 6. 10.(월) 09:00 ~ 2019. 6. 19.(수) 18:00
신청 절차		연구자 접수 ⇨ 주관연구기관 승인 ⇨ 신청 완료

4 제출 서류

<제출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

- ▶ 반드시 제공된 양식을 활용하여 작성하며, 각 제출서류별 제시된 조건을 준수하여 작성함
- ▶ 등록 완료된 연구계획서는 수정이 불가하므로, 작성 제출 시 작성 요령 및 유의사항 준수 요망
- ▶ 온라인 신청 시 탑재하며 별도 오프라인 서류 제출 없음

□ 제출 서류 목록

항목(총 5개)	비고
① 연수계획서	- 분량 5페이지 이내 ※ 제시된 작성분량을 위반할 경우 연구계획서 평가 시 초과분량에 대한 평가 미 실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② 대표연구실적 요약문 및 사본	- 본인의 대표연구실적에 대해 최대 5편 이내에서 작성 ※ 실적에 대한 별도 조건 없음
③ 연수지도교수 추천서	- 연수(예정)기관 지도교수를 통하여 작성(국외연수는 해외교수가 작성)
④ 박사학위취득(예정)증명서	- 최종 취득일자가 기재되어 있는 취득증명서 제출 ※ 수료증명서 등 인정 불가 - 취득예정자*의 경우, 양식에 따라 취득예정확인서 작성/제출
⑤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의 제공 활용동의서	- 작성 후 스캔하여 온라인 제출(원본 제출 불필요)

* 신청 당시 박사학위취득예정자의 경우 연수 개시 전 박사학위취득증명서 별도 제출 필요
- 협약 체결 시 별도 안내할 예정이며, 연수 개시 전까지 최종 취득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자격 미달로 선정 취소함

5 신청 방법 및 절차

- 재단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방문, 우편, 이메일, Fax 등으로 신청 불가

사전 절차(연수자 및 주관연구기관)	
기관과의 사전협의 및 확정	연수기관(주관기관)을 통해 연수종료일까지의 연수수행(과제관리) 가능 여부 등 신청조건 사전 협의 및 확정
KRI 등록정보 갱신	<u>한국연구자정보(KRI, http://www.kri.go.kr)에 개인정보 입력 또는 최신정보로 갱신</u> - 기본정보 : 인적정보(연락처 등), 소속기관, 직급, 학과 등 - 학위정보 : 학위수여 대학, 세부전공, 지도교수 등 - 연구실적 : 논문, 특허 등
제출서류 작성	제공된 양식에 따라 제출서류 사전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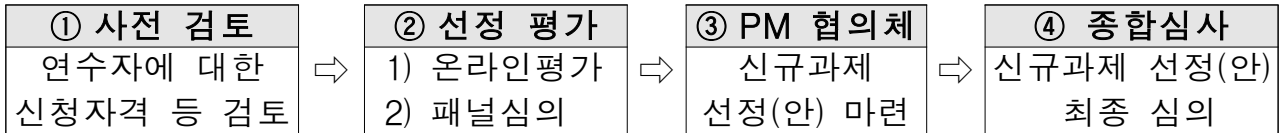
신청(연수자)	
온라인 신청정보 입력 (eRND)	- 과제 기본정보 입력 : 과제명, 총연구비, 평가분야, 과학기술분야 코드 분류 등 ※ 국외연수(지정공모) 신청자의 경우 4차 산업혁명 관련분야 입력 - 과제 연구요약문 입력 : 연구목표(국/영문), 연구내용, 기대효과, 중심어(국/영문) - 대표 연구 실적 선택 : 연구자의 대표 연구 실적 선택(5개 이내) ※ 논문, 특허의 수정은 KRI에서만 가능 (KRI 입력정보 연동) - 기타 주요확인사항 등
제출서류 업로드 (eRND)	- 연구계획서 : 양식에 따라 작성 - 대표연구실적 요약문 및 사본 : 온라인에 선택한 대표연구실적과 동일한 것으로 작성 - 연수지도교수 추천서 : 연수(예정)기관의 지도교수가 작성(국외연수는 해외교수가 작성) - 박사학위취득(예정)증명서 : 박사학위취득 여부 증명을 위한 서류 작성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의 제공 활용동의서 : 작성 후 스캔하여 제출
※ 접수완료 시 수정이 불가하므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준수 요망 ※	

승인(주관연구기관)	
검토 · 승인 (eRND)	- 연구책임자 신청자격 확인 - 박사학위 취득(예정) 여부, 비전임 여부, 타 사업 참여, 참여제한, 기타 연구윤리 위반 등 - 온라인 신청정보 입력사항 · 연구비 확인 - 업로드 파일 확인 : 신청양식 준수 여부, 파일 이상여부 등 확인 - 주관기관 승인 처리

연구과제 신청 완료
※ 온라인 신청방법에 대한 신청매뉴얼은 접수 시작 전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www.nrf.re.kr)에 별도 안내하며, 입력사항은 변동 가능

Ⅲ 신규과제 선정평가

1 평가 절차 및 방법



2 평가 항목

평가 항목	평가 지표	평가 내용
연구자의 우수성	연구경력 및 실적의 우수성	○ 연구자의 연구 경력 및 연구실적은 우수한가?
	연구과제와의 부합성	○ 연구자의 전공, 경력이 해당 연구과제를 수행하는데 적합한가?
	연구목표의 달성 가능성	○ 연구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연구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연구내용의 우수성 및 타당성	연구과제의 우수성	○ 연구주제가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인가? ○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가? ○ 새로운 자료수집 방법 및 분석기법으로 연구방법이 독창적인가?
	연구과제의 적절성 및 타당성	○ 연구과제의 내용과 연구목적이 적절한가? ○ 연구과제 내용 및 범위가 구체적인가? ○ 전반적으로 연구수행 계획이 타당한가?
향후 기대 효과	상호협력 및 발전가능성	○ 연구완료 후 지속적인 협력 및 발전 가능성이 있는가?
연구기관 및 지원의 적정성	연구기관의 적합성	○ 연구기관이 연구를 수행하기에 적합하고 관련 분야 연구수준이 우수한 기관인가? ○ 연구기관의 지원의지 및 연구원 활용·처우 계획은 합리적인가?

※ 세부 평가항목/배점 및 세부 절차 등은 별도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3 중복성 검토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www.ntis.go.kr) 및 전문가
의뢰를 통해 신청과제에 대한 중복성 검토

※ 관련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3항 제3호 및 제7조 제11항

4 가점 제도 운영

- 교육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선정한 대표 우수연구
성과자가 과제신청 시 선정평가 점수의 3%를 가점으로 부여

※ 우수성과 선정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며 해당 성과로 인한 가점 신청은
우수연구 성과자가 연구책임자와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1회만 가능

IV 연수비(연구비) 지급 · 관리

1 연수비(연구비) 지급

□ 지원 내역

박사후 국내연수	1인당 연 4천 5백만원(연수활동비* 4천4백만원, 간접비 1백만원) * 연수활동비: 연수자에 대한 소속기관 보험 부담금 및 퇴직금 포함
박사후 국외연수	1인당 연 4천 5백만원(연수활동비* 4천4백만원, 간접비 1백만원) * 연수활동비: 연수에 소요되는 체재비, 항공료 등의 관련 경비 포함

※ 간접비는 직접비와 별도로 주관연구기관에 지급함

□ 사업 기간의 회계연도 일치

- 정부 정책(회계연도 일치)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에 실제 소요되는 연구 기간 및 협약시기 등을 고려하여 예산 편성 및 집행

※ 참고: 세부 사업 및 유형별 회계연도 적용 방식

박사후국내연수(1년형), 박사후국외연수	단년과제로써 회계연도 미적용
박사후국내연수 (2년(1+1), 3년(1+1+1)형)	최초 1년(12개월 분) 지급 후 2년차(12개월 분), 3년차 (12개월 분) 추가 지급

□ 지급 방법

-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과 주관연구기관(소속기관) 간 협약에 의거 재단이 주관연구기관에 연수비를 지급

□ 지급 시기

- 지원과제 최종 확정 시 수정된 연구계획서(협약용) 제출 및 협약 체결 후 지급

※ 수정 연구계획서(협약용) 제출: 신규 선정과제 통보 이후 확정 총연구비(직접비+간접비)에 대해 당해연도 연구비 조정내역 등을 반영한 협약용 수정 연구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2 연수비(연구비) 사용 및 관리

- 연구비 집행과 관리 시 연구책임자와 주관연구기관(소속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등 제반 관련 규정에 의한 연구비 비목별 계상기준과 협약용 연구계획서 사항 등을 준수해야 함

□ 주관연구기관(소속기관)의 장은 연구비 집행 및 회계관리(증빙 등)를 철저히 하여야 함

□ 연구비 유용 등 연구책임자가 연구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황 발생 시 주관연구기관(소속기관)의 장은 즉시 재단에 보고 하여야 함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주관연구책임자 포함)의 부적절한 연구비 관리·사용으로 인해 외부기관으로부터 조사, 감사, 자료요구 등의 사안이 발생한 경우 한국연구재단에 즉시 보고하여야 함.

〈박사후국외연수〉

□ 박사후국외연수자의 연수비 지급을 위한 개인계좌는 반드시 국내 은행 계좌여야 하며, 원 단위로 지급되어야 함.

※ 박사후국외연수 과제 관리 관련 세부 내용 붙임 참조

3 연수비(연구비) 정산

□ 정산 시기 및 방법

○ 연수 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주관연구기관 연구비 중앙관리 부서에서 연수비 집행정산내역을 온라인으로 입력 및 제출

-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 활용

※ 박사후국내·외연수는 연구비카드를 발급하지 않으며, 이지바로(Ezbaro) 시스템 적용 대상 사업이 아님

□ (박사후국외연수) 귀국허용일수에 대한 사항

○ 연수자가 국외연수 수행 중 일시귀국을 할 수 있는 허용일수로, 귀국사유에 관계없이 출국과 입국일을 포함하여 1년(365일) 동안 최대 15일까지 허용

- 연간 15일을 초과한 국내체류일수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하여 연수 활동비 반납

※ 박사후국외연수 과제 관리 관련 세부 내용 붙임 참조

V 향후 관리사항

1 계속과제 관리

□ 연수 수행 중 타 과제 추가참여

- 동 사업 외에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1과제에 한해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으로 참여 가능

□ 연수계획 변경

- 선정 후에는 연수과제, 연수기관(박사후국외연수의 경우, 연수국가 포함), 연수기간(연수개시일 및 종료일 포함)의 변경을 불허

※ 변경 허용 예외사항

연수 기관	- 최초 연수 개시 후 3분의 2 이전까지는 원칙적으로 연수기관 변경 불허 * 1년형: 최초 연수개시일부터 8개월까지(2019.9.1.~2020.4.30.), 2년(1+1)형 과제: 최초 연수개시일부터 1년 4개월까지(2019.9.1.~2020.12.31.) 3년(1+1+1)형 과제: 최초 연수개시일부터 2년까지(2019.9.1.~2021.8.31.) - 이후에 연수비 중앙관리가 가능한 국내기관으로 취업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단 검토 후 잔여기간 지원
연수 기간	- 임신 및 육아 휴직에 의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과제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연구기간 연장 허용(최대 2년) ※ 기간 연장 가능 여부에 대해 사전에 연수기관(주관기관)과 반드시 협의 요망

- 연수기간 중 6개월 이상 국내·외 파견 연구 불허

〈박사후국내연수〉 (※ 2년(1+1), 3년(1+1+1)형만 해당)

□ 연차실적계획서 제출

- 제출 시기 및 방법: 당해연도 종료 2개월 전까지 온라인 제출
- 제출 내용: 차년도 연구기간에 대한 협약체결 및 협약용계획서 제출
 - 당해연도 연수과제의 수행실적 및 차년도 연수과제의 수행 계획

〈박사후국외연수〉

□ 사전준비사항 확정

- 연수기관, 지도교수, 연수기간 및 출국일, 학위취득, 퇴직, 병역 등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포함하여 사전 확인
- 연수자는 반드시 연수개시일(9.1.) 이전에 출국 완료하여야 함
 - 연수개시일 이전에 출국이 불가능한 연수자의 경우, 주관연구기관 및 재단 사업 담당자에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함.

※ 결과보고서 제출 시 출입국확인서를 통해 최초 출국날짜 확인 후, 연수 개시일 이후에 출국한 연수자에 대해서는 연수비 환수 또는 의무 미수행에 대한 제재조치 가능

□ 출국VISA

- 연수국가에 관계없이 출국VISA는 해당국가 연수기관에서 요구·인정하고, 출국 및 장기체류에 따른 해당국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VISA를 취득하여야 함. (※ 연수목적과 무관한 VISA는 불인정함.)

2 지원 중단과제 관리 강화

□ 지원자격 상실 시 잔여기간 지원

- 지원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도 정부연구과제 수행이 가능한 연구자에게는 잔여기간을 지원하고, 사업비의 잔액은 이직(임용)된 기관으로 이관하여 사용
 - 연구비 중앙관리가 가능한 국내기관으로 취업되어, 연수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 경우
- ※ 전체 연수 수행 3분의 2 이후 및 지도교수 동의 시에 한함

[참고] 신분 변동 및 주관기관 변경에 따른 과제수행 기준

구분	신분 및 주관기관 변경		조치 내용	비고(연수비 집행 기준)
전체 연수 수행 3분의 2 이전			협약 해약	- 반납 기준에 따라 반납
전체 연수 수행 3분의 2 이후	비정규직	연구비 중앙관리가 가능한 기관	(주관기관 변경 후) 계속 수행	- 지도교수 동의 시에 한함 - 잔여 연수활동비, 간접비 모두 집행 가능
		연구비 중앙관리가 불가능한 기관	협약 해약	- 반납 기준에 따라 반납
	정규직	연구기관 동일 (신분만 변경된 경우)	(신분변동 보고 후) 계속 수행	- 지도교수 동의 시에 한함 - 잔여 연수활동비 집행 불가, 잔여 간접비 집행 가능 ※ 과제 종료 후 정산 시 미집행 연수활동비 포함 잔액 반납
		연구비 중앙관리가 가능한 기관	(주관기관 변경 후) 계속 수행	
		연구비 중앙관리가 불가능한 기관	협약 해약	- 반납 기준에 따라 반납

□ 연구 수행 포기

- 정당한 사유로 인한 연수 수행포기 시, 주관연구기관(연수기관)의 장은 즉시 한국연구재단에 승인을 요청해야 함
 - 연수 중단에 따른 지원금 잔액은 반납함

[참고] 연수비 반납 기준표

구분	박사후국내연수	박사후국외연수
직접비 (연수활동비)	연수기간(개월)동안 연수활동비를 제외한 잔액 반납	연수활동비(실지급금액) / 365일 × [연수잔여일+귀국허용초과일]
간접비	협약해약일(퇴직일)을 기준으로 월할계산하여 반납금 산정 ※ 직접비 미 사용시 간접비 전액 반납. 정상종료 시, 반납금액 없음	

- 정당한 사유 없이 정부연구과제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연구자의 책무성 제고를 위해 기지급된 연구비 일부를 환수
- ※ 연구과제 중도 포기에 대해서는 연구비 환수를 협약에 명시
- ※ 불성실 중단과제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함

3 종료과제 결과 보고 및 성과 관리

□ 결과보고서 제출

- 연수 종료 후 결과평가는 실시하지 않고,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간략한 결과보고서(5쪽 이내) 제출
- ※ 박사후국외연수의 경우, 지도교수의견서, 출입국현황 및 진로현황 추가 제출

□ 연구성과 등록 의무

- 간략한 성과 개요 및 논문 실적 등 주요 성과를 온라인으로 등록
- ※ 연구성과 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연구성과소개서 의무 제출
- 연수 종료 후 5년까지 논문 게재, 특허 등록 등의 성과내용을 한국연구재단 성과관리시스템에 수시로 입력

□ 결과보고서 및 연구성과 미등록 시 제재 조치 사항

- 연구수행 기간 및 연구종료 후 5년 이내 연구성과 미등록 연구책임자의 경우 2년 이내 참여제한 조치
- ※ 관련근거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1항 제8호
- ※ '15년부터 협약 시 5년 이내 성과등록 의무화 조항 포함(신규 및 계속과제)

VI 기타 사항

1 유의사항

□ 신청 시 KRI 연구자등록번호 사용

- 신규과제 신청자는 하나의 KRI 연구자등록번호만 사용하여야 함
 - 여러 개의 KRI 연구자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다중 신청할 경우 신청과제 전체 무효 처리

□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조치에 대한 안내

- 신규과제 신청 및 선정/협약이 완료된 이후라도 다음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 조치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관련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협약의 해약)

- 신청 시 부정확한 내용이나 허위 사실을 입력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신청자 (또는 선정자)가 연수 개시 전 전임 임용 또는 박사학위 취득 미완료 등으로 인해 지원 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타 사업 연구과제의 참여제한이 확정(연구비 용도외 사용 등)되어 기초 연구사업 연구과제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
- 타 연구과제와의 표절, 중복 지원 여부 등이 확인되는 경우
- 기타 과제를 수행할 수 없는 제한 조건 또는 적용 법령에 따른 협약 해약 사유 등이 확인될 경우

□ 사이버연구윤리교육 이수 의무화

- 연구책임자는 협약서 상 연구 개시 3개월 이내에 사이버연구윤리 교육을 의무 이수해야 함
 - 미 이수 시, 최종보고서 제출이 불가하며 이는 협약 위반사항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재 조치 가능

※ 이수 교육: “연구책임자를 위한 연구윤리”

※ 문의처: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KIRD, www.kird.re.kr, 1588-5834)

2 확인사항

□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의무화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 유래물연구 수행 연구자는 연구계획서 제출 후 협약 체결 이전까지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받아야 함

* 인간대상연구란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정보로써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연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조)

- 각 소속기관(대학 등)에서 IRB에 관련 사항 확인하고, IRB 심의 결과 제출·관리 등은 연구자와 주관연구기관(IRB 포함)에서 담당
 - ※ 전문기관은 필요 시 주관연구기관을 통해 IRB 심의여부 결과(심의결과서 및 심의면제확인서 등) 관리 현황 등을 제출 받아 확인
- 소속기관 IRB 이용이 곤란할 경우,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의 공용 IRB에 확인

※ 문의처: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https://www.nibp.kr>)

□ 질병관리본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인체유래물 이용 안내

- 질병관리본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으로부터 인체유래물*을 분양받아 연구에 이용하려는 연구자는 반드시 담당 부서(질병관리본부 생물자원은행과(분양대표전화 1661-9070))에 사전 확인 후 자원 활용이 가능한 과제에 한해 신청하기 바람

* 인체유래물 : 혈청, 혈장, 소변, 혈액유래 DNA, LCL, LCL유래 DNA 등

□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연구시설 및 수입 신고

- 유전자변형생물체(LMO)를 이용하는 연구자는 「유전자 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시설 설치·운영 신고 확인서 및 시험·연구용 LMO 수입신고 확인서를 갖추어야 함

※ 미신고 시설 운영 및 수입의 경우 벌칙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시험·연구용 LMO정보시스템(<http://biosafety.msip.go.kr>) 확인

□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된 화합물 기탁 안내

- 연구개발과제로부터 도출된 논문, 특허, 연구시설·장비 등 연구성과 분야별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유통하기 위하여 장관이 별도로 지정한 기관에 등록하거나 기탁하여야 함

※ 화합물의 경우,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지정 고시에 따라 한국화학연구원(한국화학연구원 부설 화합물은행, 042-860-7190)에 기탁하여야 함

3 논문 사사표기 안내

- 연구성과의 학술지 논문 게재 시, 해당 논문에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음과 과제번호를 다음과 같이 명시

<Acknowledgement 표기방법 :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 참고>

- 국문 : “이 논문은 0000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임(No. 한국연구재단에서 부여한 과제번호 : 연구사업통합시스템에서 확인)”
- 영문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Basic Science Research Program through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 fund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grant number)”

4 적용 법령

- 동 사업은 『학술진흥법』,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 규정』 등을 적용함

1 과제관리 체계

	연구재단	주관기관	연수자
① 신청/접수	사전 검토 → 재단승인	주관기관승인	연구계획서접수
② 평가	전공평가 → PM협의체 → 종합심사	-	-
③ 선정	예비선정 및 최종선정	-	-
④ 협약	협약 승인 협약용계획서 검토/승인	전자협약 체결 협약용계획서 제출 승인	협약 동의 협약용계획서 제출
⑤ 연수비 지급	주관기관에 연수비 지급	연수자에게 연수비 지급	출국VISA, 계좌정보 등 제출 연수비 수령
⑥ 과제관리	보고서 제출	소속 연수자에게 결과 보고서 제출 안내 및 승인	결과보고서 제출
	연수비 정산	각 연수자에 대해 출입국 사실 확인 등 환수기준에 따라 정산	연수비 반납
	협약변경 관련	주관기관 변경 접수 과제중단 서류 접수	주관기관 변경 접수 과제중단 요청

2 연수 전 확인사항

□ 사전준비사항 확정

- 연수기관, 지도교수, 연수기간 및 출국일, 학위취득, 퇴직, 병역 등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포함하여 사전 확인
 - 과제 신청 전에 연수종료일까지 해외기관에서의 연수 가능 여부가 사전 확정되어 있어야 함
- 연수자는 반드시 연수개시일(9.1.) 이전에 출국 완료하여야 함
 - 연수개시일 이전에 출국이 불가능한 연수자의 경우, 주관연구기관 및 재단 사업 담당자에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함
 - ※ 결과보고서 제출 시 출입국확인서를 통해 최초 출국날짜 확인 후, 연수개시일 이후에 출국한 연수자에 대해서는 연수비 환수 또는 의무 미수행에 대한 제재 조치 가능

□ 출국VISA

- 연수국가에 관계없이 출국VISA는 해당국가 연수기관에서 요구·인정하고, 출국 및 장기체류에 따른 해당국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VISA를 취득하여야 함
 - ※ 연수목적과 무관한 VISA는 인정하지 않음

3 연수비 사용 및 관리

□ 연수비 지급

- 지급 내역: 1인당 연 4천 5백만원(연수활동비* 4천4백만원, 간접비 1백만원)
 - * 연수활동비: 인건비성 경비로써 연수에 소요되는 체재비, 항공료 등의 관련 경비 포함
- 지급 방식
 - 연수비 지급을 위한 연수자의 개인계좌는 반드시 국내은행 계좌로 하며, 원 단위로 지급함
 - * 지급 기준, 시기, 방법 등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주관기관 내부 기준에 따라서 지급
(예 : 연수비 지급 시기는 일시별/분기별/반기별 지급 등이 가능함)

□ 연수비 정산

- 정산 시기 및 방법
 - 연수 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주관연구기관 연구비 중앙관리 부서에서 연수비 집행정산내역을 온라인*으로 입력 및 제출
 - *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 활용
 - ※ 연구비카드를 발급하지 않으며, 이지바로(Ezbaro)시스템 적용 대상 사업이 아님
- 정산 절차
 - (연수자) 최종보고서 제출 시 출입국현황보고서(출입국사실증명서 포함) 제출
 - (주관기관) 환수 대상 일수 검토 결과에 따라 일할 계산 후 정산
- 귀국허용일수에 대한 사항
 - 연수자가 국외연수 수행 중 일시귀국을 할 수 있는 허용일수로, 귀국 사유에 관계없이 출국과 입국일을 포함하여 1년(365일) 동안 최대 15일까지 허용
 - 연간 15일을 초과한 국내체류일수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하여 연수 활동비 반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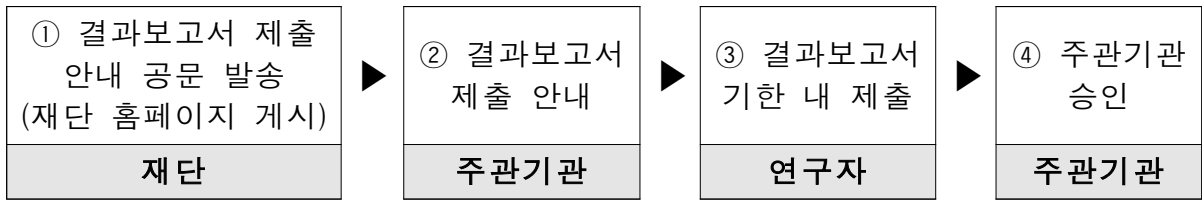
4 기타 과제관리 세부사항

□ 연수 수행 중 타 과제 추가참여

- 동 사업 외에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1과제에 한해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으로 참여 가능

□ 보고서 제출

- (결과보고서) 연수 종료 후 1개월 내 제출



□ 연수계획 변경

- 선정 후에는 연수과제, 연수기관(연수국가 포함), 연수기간(연수개시일 및 종료일 포함)의 변경 불허
 - ※ 변경 허용 예외사항 관련 세부 내용 신청요강 참조

□ 연구 수행 포기

- 정당한 사유로 인한 연수 수행포기 시 주관연구기관(연수기관)의 장은 즉시 한국연구재단에 승인을 요청해야 함
 - 연수 중단에 따른 지원금 잔액은 반납함
 - ※ 직접비(연수활동비): 연수활동비(실지급금액) / 365일 x [연수잔여일+귀국허용초과일]
 - 간접비: 협약해약일(퇴직일)을 기준으로 월할계산하여 반납금 산정
 - * 직접비 미 사용시 간접비 전액 반납
- 정당한 사유 없이 정부연구과제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연구자의 책무성 제고를 위해 기지급된 연구비 일부를 환수
 - ※ 연구과제 중도 포기에 대해서는 연구비 환수를 협약에 명시
 - ※ 불성실 중단과제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함

1 신청 자격사항

<신청 자격>

1. 이공학분야(이공계 과학기술 전 분야)에는 어떤 학문분야가 해당되나요?

- ▶ 연구자는 신규과제 신청 시 ‘학술연구분야분류’ 및 ‘전문위원(RB)분야분류’를 기준으로 평가 학문분야를 선택하게 됩니다.
- ▶ 따라서, 연구자는 신규과제 신청 전 재단 홈페이지에서 ‘기초연구본부 학문단별 전문위원(Review Board) 분야 분류표’ *를 확인하여 본인의 신청 과제와 가장 적합한 학문분야를 표에서 확인하고, 과제 신청 시 해당 학문분야를 정확하게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분야분류표 확인 방법: 재단 홈페이지(<http://www.nrf.re.kr>) → 사업 안내 → 사업자료실 → 연구분야분류표 → 전문위원(RB)분야분류

2. 인문학(사회학, 체육학 등)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연구자도 이공분야 학문 후속세대양성사업(박사후국내/외연수) 신규과제 신청이 가능한가요?

- ▶ 박사학위 취득 분야(전공분야)와 관계없이 (연구계획서 상의) 연구 내용 및 주제가 이공학분야에 해당되면 과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박사후국외연수를 신청할 수 있나요?

- ▶ 외국박사학위를 받으신 분들은 박사후국외연수에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4. 박사학위 취득예정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 ▶ 신청 마감일 기준 박사학위 취득 예정인 자도 신청이 가능하나, 연수(연구) 개시일 전에 박사학위 취득이 최종 완료되어야 합니다.
- 이 경우, 해당자는 연수개시일 전에 박사학위 취득이 최종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박사학위증명서’를 별도 제출해야 하며, 취득이 완료되지 않은 자는 선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과제를 지원합니다.

- ▶ 박사학위 취득 예정자가 신규과제 신청 시 한국연구자정보(KRI) 상의 학위 정보를 박사학위 취득상태로 기재 후 취득기관은 취득예정기관으로, 졸업연월은 예정연월로 하면 됩니다.

5. 취업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 ▶ 취업자이더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나 연수 개시와 동시에 원 소속기관에서의 퇴직 등을 통해 고용관계를 정리하여 연수기관에서의 연수 개시에 제반 문제가 없어야 하는 조건입니다. (휴직은 불가함)
- ▶ 단, 대학 전임교수·국공립 연구기관 및 민간연구소 전임연구원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5-1. 현재 국내 A대학교의 박사후연구원입니다. A대학교로 박사후국내연수 신규과제 신청이 가능한가요?

- ▶ 신규과제 신청이 가능하나, 연수종료일까지의 소속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 따라서, 주관연구기관(A대학교) 연구비 중앙관리 부서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연수종료일까지의 연수 가능 여부 및 연수비 수혜 가능 여부 등에 대해 사전 확인 바랍니다.

5-2. 현재 사기업체의 회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신규과제 신청이 가능한가요?

- ▶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 연수 개시 전까지 근무 중인 회사를 퇴사하여 고용관계를 정리하고, 연수 개시 후부터는 연수기관에서의 연수 개시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이 경우, 휴직은 불가능합니다.

6. 현재 소속이 없거나 미취업 상태이더라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 ▶ 현재 소속기관이 없거나 미취업 상태이더라도 자격 조건이 만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단, 연수예정기관과 연수 가능 여부에 대한 사전 협의가 모두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연수기관 및 주관기관〉

7. 민간 연구소란 어떤 기관을 말하나요?

- ▶ 민간연구소는 법률에 의해 설립된 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포함)로써 연구비 중앙관리가 가능한 기관이어야 합니다.
- ▶ 따라서, 민간연구소를 주관기관으로 하여 신규과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반드시 신청 전에 기관의 연구비 중앙관리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신규 기관의 경우, 재단 연구상담센터 Help Desk(1544-6118)을 통해 주관연구기관 등록(사업자 등록증 제출) 및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의 담당자 ID 등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8. 박사학위를 취득한 기관(대학)에서의 박사후국내연수 신청이 가능한가요?

- ▶ 박사학위를 취득한 기관(대학)에서의 박사후국내연수도 가능합니다.

9. 학문후속세대양성사업 신청 전에 연수(연구)기관이 정해져 있어야 하나요?

- ▶ 신청 시 본인이 연수할 기관이 사전에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또한 연수를 수행할 기관의 연구비 중앙관리부서(산학협력단 등)와 연구비 중앙관리 및 4대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신청 전에 확인하고 연수지도교수와 과제 수행에 대해 상의하셔야 합니다.
- ▶ 특히, 박사후국외연수의 경우, (1)주관기관(국내 박사학위 취득기관)의 연구비 중앙관리 가능 여부 및 (2) 해외 연수기관에서의 연수 수행 가능 여부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 및 확정하여야 합니다.

〈연수 지도교수〉 (※ 연수지도교수 추천서 작성 및 과제 신청 시 참고)

10. 연수기관이 연구소인 경우, 연수지도교수를 누구로 하여야 하나요?

- ▶ 국·공립 연구소 또는 민간 연구소를 연수기관으로 하는 경우, 선임연구원 또는 연구소장 등 연수자의 연수 기간동안 지도교수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를 연수지도교수로 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 이 때, 전임/비전임 여부와 관계 없으나 연수종료일까지의 소속과 신분이 보장된 자이어야 합니다.

11. 박사학위를 취득한 대학교에서 박사후국내연수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박사학위 지도교수님을 연수지도교수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 ▶ 박사학위 취득기관에서의 박사후국내연수를 신청하는 경우 박사학위 지도교수님과 연수지도교수를 동일하게 하여 신규과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12. 박사후국외연수 신청 시 외국대학교에 소속된 한국인 교수님을 지도교수로 하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 ▶ 박사후국외연수 신규과제 신청 시에는 (연수자가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해외연수기관에 소속된 자를 지도교수로 하여야 합니다.
- ▶ 이 때, 한국인 교수님이더라도 해외기관에 소속되어 있으므로 지도교수로 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추천서 작성 시에도 국문/영문으로 모두 작성이 가능하나 지도교수의 소속과 정보에 대하여 정확히 명시하여야 합니다.

2 신청 및 참여 제한 사항

13. 현재 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책임자로 연구를 수행 중인 경우 신청이 가능한가요? 또는 현재 학문후속세대양성을 수행 중인 경우 신청이 가능한가요?

- ▶ 현재 연구책임자로서 수행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 또는 학문후속세대 양성사업 연수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이더라도 신규과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단, 현재 수행 중인 사업이 신규과제 연수개시일 전날(2019.8.31.)까지 최종 종료되어야 합니다.

14. 전문연구요원(병역특례)의 경우 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 ▶ 전문연구요원의 복무 기간을 종료하고 연수개시일(2019.9.1.)에 연수를 시작할 수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전문연구요원 기간과 연수기간이 중복되는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15. 2019년 박사후국내연수 또는 박사후국외연수 신규과제 신청자가 타 개인연구사업에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로 신청할 수 있습니까?

- ▶ 신규과제 신청자는 2019년에 신규 공고된 타 개인연구사업에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으로 동시 신청은 가능하지만, 중복 선정되지는 않습니다.

16. 타 개인연구사업에 별도 신청은 가능한데, 중복 선정은 불가하다고 하면, 참여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 ▶ 학문후속세대지원사업과 타 개인연구사업에 중복 신청한 연구자의 경우, 타 개인연구사업에 중복 선정되면 학문후속세대지원사업에는 자동 탈락되어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으로 중복 선정될 경우, 상위사업을 우선 선정함

17. 현재 교육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기초연구사업에 대하여 2016년에 선정된 개인연구과제의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9년 신규과제 신청이 가능한가요?

- ▶ 교육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기초연구사업에 대하여 2016년부터 선정된 개인연구과제*의 공동연구원으로서 과제를 수행 중인 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교육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기초연구사업 중 개인연구과제

- 리더연구, 중견연구, 신진연구, 이공학개인기초연구, 전략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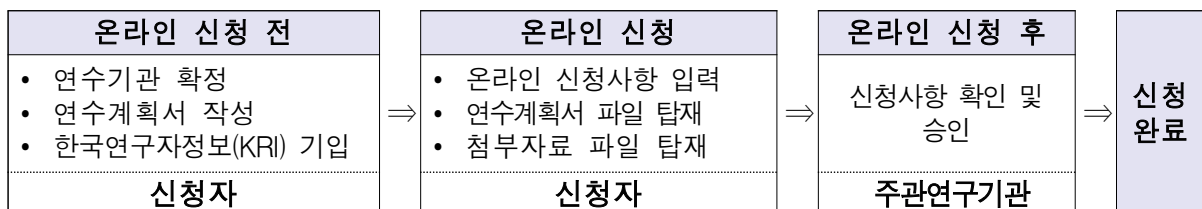
※ 예외: 수행 중인 과제가 신규과제 개시일로부터 10개월 이내 종료하는 경우, X-프로젝트

- ▶ 단, 예외조건에 따라 공동연구원으로 수행 중인 과제가 신규과제 개시일로부터 10개월 이내 종료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3 신청 전 확인사항

18. 온라인 신청 시의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 ▶ 온라인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으므로 필히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연수계획서 작성 전에 반드시 한국연구자정보(KRI)에 개인정보를 갱신 또는 추가하여 개인인적정보를 모두 기입하여야 계획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19. 기존에 수행한 과제와 새로 신청하는 과제가 유사해도 되는지요?

지도교수가 수행하는 연구과제와 연수과제는 어떻게 달라야 합니까?

- ▶ 동 사업은 타 국가연구개발사업과 동일하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신청과제의 중복성을 판단하고 있으니 과제 신청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윤리에 관한 내용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중복 판단과 함께 연구 윤리 위배가 인정되는 과제에 있어서는 향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i)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와 연구목표, 연구방법 및 연구내용의 동일 또는 거의 유사한 경우, 중복 과제로 판단됩니다.
- ii) 지도교수의 수행 및 신청과제와 연수 신청 과제가 유사할 수는 있으나, 연수자가 독립된 주체로서 연구목표, 방법, 내용을 기술하여야 합니다. (특히, 지도교수 연구계획서의 내용을 그대로 복사하는 것은 표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iii) 학문후속세대지원사업의 기 수혜자가 동 사업 내 다른 세부사업으로 신청하는 경우, 기존 과제와 연구목표, 방법, 내용 등에서 차별성이 있어야 별도의 과제로 인정됩니다. (동일한 연수계획서로 재신청하는 경우는 자기 표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 신청 과제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를 통하여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와의 중복성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중복성이 있다고 판단된 과제는 선정과제에서 제외되므로 신청자께서는 위의 사항을 유의하시어 연구계획서 작성 시 선행 연구를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교육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선정한 대표 우수연구 성과는 어떤 성과를 말하나요?

- ▶ 가점으로 인정하는 대표 우수성과는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실시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우수성과 100선」과 (2)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교육부 학술연구지원사업 우수성과 50선」이 해당됩니다.
- ▶ 해당 우수성과에 대해서는 과제 신청 시 선정평가 점수의 3%를 가점으로 부여합니다. 또한, 가점 부여는 우수성과 선정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며, 해당 성과로 인한 가점 신청은 1회만 가능합니다.
- ▶ 따라서, 가점을 신청하는 연구자는 신규과제 신청 시 온라인 화면 상에 우수성과 과제 정보를 기입하여야 합니다.

4 연수비 지급

21. 신규과제 선정 시 연수비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 ▶ 박사후국내연수 신규과제 선정자는 연 4천 5백만원의 연수비를 지급받게 됩니다. 이 중, 연수활동비는 4천 4백만원으로 인건비성 경비에 해당하며, 연수자에 대한 소속기관 보험 부담금 및 퇴직금을 포함합니다. 또한, 간접비 1백만원은 직접비(연수활동비)와 별도로 주관기관에 지급됩니다.

박사후국외연수 신규과제 선정자는 연 4천 5백만원의 연수비를 지급받게 됩니다. 이 중 연수활동비는 4천 4백만원으로 인건비성 경비에 해당되며, 국외연수자의 연수에 소요되는 체재비, 항공료 등의 관련 경비를 포함합니다. 또한, 간접비 1백만원은 직접비(연수활동비)와 별도로 주관기관에 지급됩니다.

- ▶ 신규과제 협약이 완료되면 재단은 주관연구기관에 연수비를 지급합니다. 이후 주관기관은 내부 기준에 따라 연수자에게 연수활동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 연수비 수혜 가능 여부 및 지급 기준, 시기, 방식 등은 주관기관과 사전 협의 바랍니다.
 - 박사후국외연수의 경우, 연수비 지급을 위한 연수자의 개인계좌는 반드시 국내은행 계좌여야 하며, 원 단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22. 박사후국외연수사업 수행 중 개인적인 사유로 25일동안 한국에 귀국하여 체류하였습니다. 이 경우, 연수비를 반납하여야 하나요?

- ▶ 귀국허용일수란 박사후국외연수 수행 중 일시귀국을 할 수 있는 허용일수로써 전체 연수기간 1년(365일) 중 출국과 입국일을 포함하여 연간 15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 귀국 사유에 관계없이 1년 중 최대 15일까지만 입국을 허용하기 때문에,
 - 개인적인 사유로 귀국하더라도 15일의 귀국일수는 연수비 반납하지 않습니다.
 - 초과 10일분에 대해서는 사유를 불문하고 불인정하며 일할계산하여 (과제 종료 후) 정산 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5 과제 수행 시 확인사항

23. 본 사업에 선정된 후에 박사후국내·외연수를 수행하면서 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연구책임자(공동연구원) 또는 참여연구원으로 참여할 수 있나요?

- ▶ 박사후국내/외연수자는 동 사업 외에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1과제에 한해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으로 추가 참여가 가능합니다.

※ 기초연구사업 세부사업별 참여율 및 사업별 제한사항은 세부사업별 안내문을 확인

24. 박사후국내연수사업 수행 중 국내 대학교의 전임 교수로 임용되었습니다. 주관기관을 변경하여 과제를 계속 수행할 수 있나요?

- ▶ 전체 연수 수행 3분의 2 이전*에 연수기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과제를 중단하여야 합니다.

* 1년 과제: 연수 개시 후 8개월(2020.4.30.)까지, 2년(1+1) 과제: 연수 개시 후 16개월(2020.12.31.)까지, 3년(1+1+1) 과제: 연수 개시 후 24개월(2021.8.31.)까지

- ▶ 그러나, 3분의 2 이후에는 주관기관을 변경하여 계속하여 과제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정규직으로 변경된 자는 이후부터 잔여 연수활동비의 집행이 불가능하며, 반납 처리하여야 합니다.

25. 주관기관 변경 (또는 전임 임용 등)으로 과제를 중단하게 되는 경우, 연수비를 반납하여야 하나요?

- ▶ 정당한 사유로 인한 과제 중단 시 연수비 반납 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구 분	박사후국내연수	박사후국외연수
직접비 (연수활동비)	연수기간(개월)동안 연수활동비를 제외한 잔액 반납	연수활동비(실지급금액)/365일 x [연수잔여일+귀국허용초과일]
간접비	협약해약일(퇴직일)을 기준으로 월할계산하여 반납금 산정 ※ 직접비 미 사용시 간접비 전액 반납. 정상종료 시, 반납금액 없음	

- ▶ 단, 정당한 사유 없이 정부연구과제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연구과제 중도 포기, 불성실 중단과제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참여제한 및 연구비 환수 등 참여제한 조치가 가능합니다.

26. 연수 중 또는 종료 후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는 무엇입니까?

구분	제출 내용 및 시기	비 고
연수 중	<박사후국내연수 2년(1+1)형, 3년(1+1+1)만 해당> (1) 연차실적계획서: 당해연도 연수 종료 2개월 전	온라인 제출
종료 후	<전 세부사업 공통사항> (1) 연수결과보고서: 연수 종료 후 1개월 이내 ※ 박사후국외연수의 경우, 연수지도교수 의견서, 출입국사실 보고서(출입국현황증명서 포함) 추가 제출 (2) 연구성과 등록: 연수 종료 후 1개월 이내(1차) - 향후 5년간 매년 연1회 필수 협조	온라인 제출

6 박사후국외연수 확인사항

27. 현재 해외 체류 중인 기 출국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 ▶ 현재 해외 체류 중인 기 출국자도 현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일 현재 해외기관에서 연구를 진행 중인 연수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 단, 연수기간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연수종료일까지의 연수 가능 여부에 대해 해외기관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과제 신청 전 확정하여야 합니다.

28. 박사후국외연수 신청 시 국외연수기관의 등록 여부 검색은 어떻게 하나요?

- ▶ KRI(한국연구자정보/www.kri.go.kr) → 내정보 → ‘기관’ 메뉴에서 국외 기관 조회가 가능합니다.

29. 정해진 출국기간 내에 출국하지 못한 경우, 연수개시일의 변경이 가능한가요?

- ▶ 박사후국외연수의 경우, 반드시 연수 개시일 전에 출국을 완료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연수개시일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30. 해외기관에서 추가지원금을 일부 받기로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박사후국의 연수비와 동시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 ▶ 해외기관의 추가지원금 수혜여부와 관계없이 지원금액 전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